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

2019. 11. 28.

조달청 한남대학교

목 차

1. 서론 ····· 1
가. 연구배경 ····· 1
나. 연구 진행방향 ····· 2

2. 현황분석 ····· 3
가. 종심제 관계 법령 검토 ····· 3
나. 공공기관 종심제 시범사업 세부기준 비교 분석 ····· 9

3. 조달청 종심제 세부기준(안) 도출 ····· 26
가. 종심제 세부기준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 26
나. 세부절차 규정 및 조달청 평가방법 마련 ····· 43
다.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 산식 ····· 80
라. 입·낙찰 관련 업무절차 ····· 97
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제안 ·····100

별첨 1.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국토교통부 예규 제 265호) ·····104

1. 서론

가. 연구배경

○ 2019년 3월 5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역에도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적용하도록 함. 종심제는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하되, 기술자 능력과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위원의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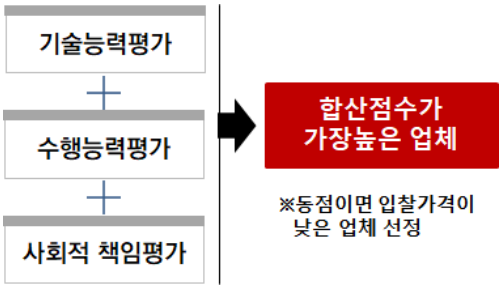


그림 1-1.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선정기준

○ 상위규정(법령, 예규 등)에 세부항목 및 절차가 미포함되어 있거나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조달청 자체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함.
(예, 종합심사점수 산정 가중치, 표1-1)

표 1-1. 종심제 종합심사 점수 산정(국토부 예규) 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가중치
계			100(%)
기술능력 평가	● 2단계 평가방식: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 통합 평가방식: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100	80~95(%) 또는 100(%)
입찰가격 평가	●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적용 : 아래 2호	100	5~20(%) 또는 0(%)

○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기본 취지와 목표를 기반으로 조달청 내 종심제 제도 운영에 있어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절차와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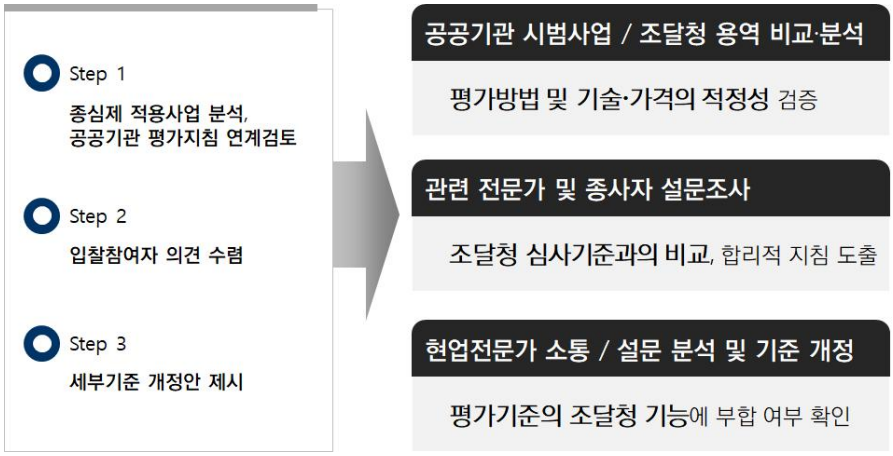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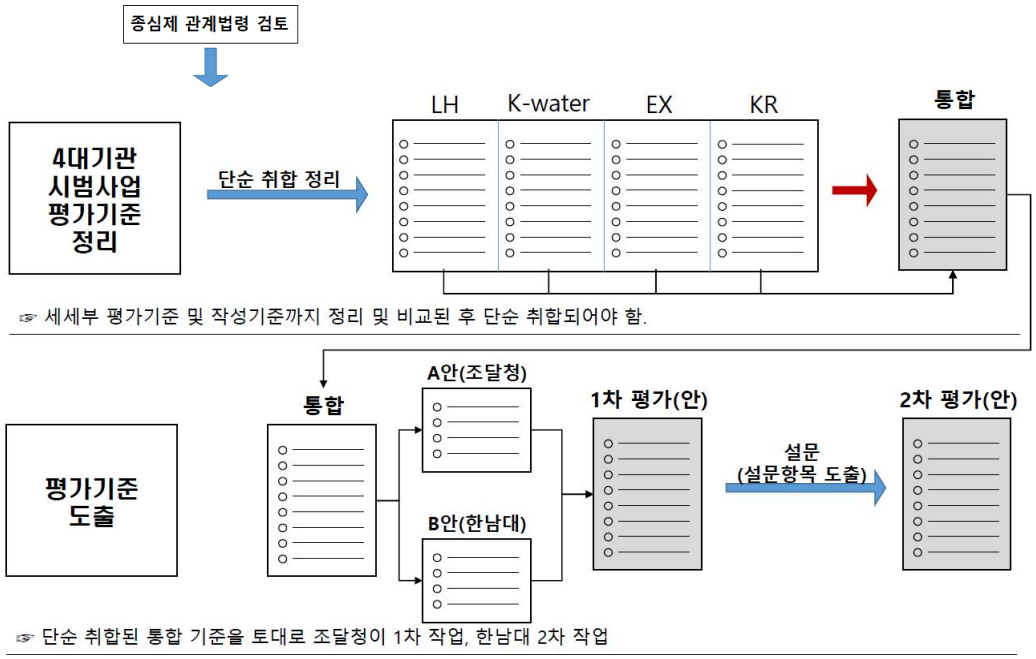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용역 수행계획

나. 연구 진행방향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토교통부 예규 및 발주자 운영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달청의 재량범위 분석함. 또한 기존 공공기관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시범사업을 분석하여 조달청 기준 마련 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함.

○ 관계법령 검토 및 시범사업 분석 등을 통해 종합심사낙찰제의 세부절차 및 단계별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종심제 평가의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추가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함.



2. 현황분석

가. 종심제 관계 법령 검토

1) 종심제 목적

○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용역분야)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 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심사절차와 세부평가기준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음.

2) 종심제 목표와 기본원칙

○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과 운영은 입•낙찰 과정에서 기술과 가격을 함께 고려하되 기술중심의 경쟁을 유도하여 용역업체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발주청에게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함.

○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 수립에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세부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내용, 세부 평가배점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는 조달청 건설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반영함에 있어 신설된 항목 및 배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또한, 정성적 평가항목은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음.

3) 종심제 추진 배경

○ 2018년 정부는 국내 건설기술용역분야 기술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15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25억 원 이상 실시설계 및 20억 원 이상 건설 사업관리용역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함.

○ 2018년 12월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기술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예규 용역계약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심사방법·항목·배점한도 등 심사기준을 제시함.

○ 2019년 1월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 시 필요한 심사절차와 기준을 담은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같은 해 3월 종합심사낙찰제를 발주하는 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종합 심사낙찰제를 발주자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음.

○ 2019년 3월 5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역에도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적용하도록 함. 종심제는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하되, 기술자 능력과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위원의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임.

○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르면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규모의 용역은 2020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시행하여야 하며, 2019년 공고건에 한하여 기존 적격심사의 기술자평가서 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를 허용함.

4) 주요내용

○ 발주청은 종심제 대상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2단계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발주청은 종심제 대상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입찰공고하거나 집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함.

○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따르되 발주청이 세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세부 평가배점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종합심사점수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산정하고 종합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발주청은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안을 작성하거나, 평가기준·배점 조정,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함.

5) 용어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예규「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국토부 예규”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① ‘건설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규정을 따른다.
②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 규정을 따른다.
③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합심사낙찰제’ 또는 ‘종심제’)란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수준을 포함한 업체의 역량과 당해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 및 투입핵심인력의 수준 등, 종합적인 기술제안과 입찰가격제안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④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용역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자가 1차 심사를 위해 업체의 역량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⑤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1차 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⑥ ‘종합기술제안서’라 함은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과 투입 핵심기술인의 자격 및 역량,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⑦ ‘2단계 평가방식’이라 함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를 통해 업체의 역량을 1차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뒤,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⑧ ‘통합 평가방식’이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6) 관련법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 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용역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용역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5억원 이상인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예규 제265호)

평가항목			구분	평가내용/세부항목
대분류		중분류		
기술능력평가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정성평가]	목표정의	▪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란 회사가 수행하는 용역업무의 품질확보를 위해 상시 보유•운영하고 있는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QA) 체계와 품질관리(Quality Control: QC) 체계를 말하며, 본 세부항목은 회사가 신뢰할만한 QA/QC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가, 당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이 원하는 품질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 및 운영할 것인가 등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내용	**용역 결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회사의 표준적인 방침·절차와 운영 체계 등의 적정성** ▪ 용역 결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표준적인 품질관리 및 보증체계는 무엇이며, 이를 기반으로 어떠한 시스템과 매뉴얼, 지침, 등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는가? (ISO 포함)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사 간의 품질관리 및 보증체계를 어떻게 통합 관리 및 운영할 것인가? ▪ 품질관리 및 보증체계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용역 결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실무적 운영체계·방법의 차별성** ▪ 당해 용역과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사의 품질관리 및 보증체계 중 실무적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며 과업수행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당사의 표준적인 품질관리 및 보증체계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타 회사와 차별화되는 장점은 무엇인가? ▪ 세부과업별 용역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자와 관련 기술자의 역할, 협력체계 등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품질관련 문제의 발생 또는 발주청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해결 방법의 적정성** ▪ 과업 성과품의 품질이나 담당 핵심기술자 역량 등에 대해 발주청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어떤 방침과 절차에 따라 어떻게 조치 또는 해결하는가?

평가항목		구분	평가내용/세부항목
대분류	중분류		
			▪ 민원·설계변경·기타 용역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침과 절차에 따라 어떻게 조치 또는 해결하는가? ▪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 또는 발견하기 위해 어떤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가? **공동도급사 또는 투입 기술자의 변경에 대한 방침·절차·방법(업무의 연속성 확보)의 적정성** ▪ 용역과업에 참여하는 공동도급사 또는 투입 핵심기술자의 교체 또는 업무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품질 수준의 유지를 위해 어떠한 방침, 절차, 방법 등을 운영하고 있는가? ▪ 핵심기술자의 교체 또는 변경을 대비한 기술자 확보 수준은 어떠한가? (공동도급사 포함)
		비고	▪ 발주청은 이와 같은 세부 평가기준과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업의 특성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세부 평가기준을 배제하거나 필요한 기준을 추가하는 등,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예시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사업관리 운영체계 **[정성평가]**	목표 정의	'사업관리 운영체계' 란 용역사업을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완수하기까지 조직, 일정, 비용, 계약, 리스크, 발주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대상과 분야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망라하며, 발주청이 원하는 수준의 성과달성을 위해 회사가 상시 보유하고 있는 관련 시스템은 무엇이며, 당해 용역과업에 어떻게 적용 및 운영할 것인가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 내용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회사 조직체계와 전문부서(분야) 운영방법의 적정성** (공동도급 시, 각 참여업체의 업무내용을 중심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체계와 참여업체 간 업무운영방법) ▪ 당사 또는 각 참여업체의 내부 조직구성은 어떠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해 의사결정, 업무협조 및 지원 등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공동도급 시, 참여업체 간, 참여업체 핵심부서 간 의사결정, 업무협조 및 지원 등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필요시 협력업체, 외주업체 등과의 관계 포함) ▪ 발주청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결정, 업무협조

평가항목		구분	평가내용/세부항목
대분류	중분류		
			및 지원 등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용역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 내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비용, 일정, 계약, 리스크 등)** ▪ 당해 용역과업의 성공을 위한 당사의 사업관리 운영체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있는가? ▪ 당해 용역과업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업관리 운영체계는 무엇이며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 및 운영될 것인가? ▪ 당사 사업관리 운영체계의 구성 및 실무적용 등과 관련해 차별성과 장점은 무엇인가? **용역과업 수행과 관련된 대응 또는 지원 시스템의 적정성** ▪ 용역과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와 문제해결을 위해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기술적, 행정적 대응 또는 지원 체계는 무엇인가? ▪ 당해 용역과업에는 어떠한 기술적, 행정적 대응 또는 지원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 예상되며 그에 대한 차별성과 장점은 무엇인가?
	신용도(영업,벌점,재정건실도) **[정량평가]**	목표 정의	'신용도' 는 정량평가 대상으로 입찰자가 수주에 성공할 경우, 재정적, 실무적으로 당해 용역업무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
		평가 내용	▪ 신용평가등급 ▪ 관련 제도 또는 발주청이 정한 벌점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정성+정량평가]**	목표 정의	'과업에 대한 전문성' 이란 회사가 용역과업 수행을 위해 상시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다양성과 각 분야별 인력규모, 보유 기술 및 기술개발 노력 등의 수준을 의미하며, 본 평가항목은 이를 바탕으로 당해 용역과업 수행에 관련 인력과 기술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활용 및 운영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 내용	**당해 용역과 관련한 회사의 핵심기술자(관련분야 특급기술자, 기술사 또는 박사 등, 발주청이 요구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자들과 필요에 따라 법적, 제도적 자격조건 외에 특수 세부 전문분야의 전문가 포함) 보유 현황 및 보유기술자의 강점** ▪ 전문분야별 핵심기술자의 보유현황을 발주청이 규정한 양식에 따라 제시 ▪ 당해 용역과업과 직결되는 세부 전문분야 또는 경력 보유 핵심기술자의 보유 현황과 강점은 무엇인가?

평가항목		구분	평가내용/세부항목
대분류	중분류		
			▪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및 전문조직의 보유 현황(Pool)은 어떠하며 그에 대한 활용은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운영하는가?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보유기술(특허, 실용신안, 신기술, S/W 등)의 개발 및 활용실적** ▪ '○년 이내', '총 ○건 이내' 등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간과 건수를 제시 ▪ 당사가 개발했거나 활용해온 (신)기술들 등은 당해 용역과업의 문제해결 방법으로 적합한가, 또 그 근거는 무엇인가? ▪ 당사가 개발했거나 활용해온 (신)기술들 등은 당해 용역과업의 품질향상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또 그 근거는 무엇인가?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정성+정량평가]**	목표 정의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이란 기술제안에 앞서 당해 용역과업의 특성과 '과업내용서(TOR)'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업 성공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 분석된 사안들에 대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험을 말하며, 해당 업체의 TOR 분석과 핵심 이슈 도출이 적합한지, 그와 관련된 경험과 문제해결 능력이 충분하며 유효한지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 내용	'당해 용역의 특성 '이나 '과업내용서 (TOR)'를 근거로 용역과업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들을 선정 대표 유사실적 수행과정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였던 사례, 또는 TOR 개선, 창의적 제안, 등으로 성과를 향상시켰던 사례를 선정 (유사실적의 유효 기간은 '최근 5년' 등의 방법으로 발주청이 규정) 유사실적 경험과 당해 용역의 수행성과 향상에 대한 연계성을 기술, 방법, 운영, 노하우 등의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
	용역평가결과 심사 **[정량평가]**	목표 정의	'용역평가결과'는 정량평가 대상으로 당해용역에서 요구되는 발주자와의 협력관계, 업무수행과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과거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반영•평가한다.
		평가 내용	용역평가결과에 대한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
대분류</th><th>중분류</th><th>구분</th><th>평가내용/세부항목</th></tr>
<tr><td rowspan="2"></td><td rowspan="2">유사용역수행실적</td><td rowspan="2">유사 실적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 공통)
[정성+정량]</td><td>목표정의</td><td>입찰참여 업체가 과거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유사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양적 평가), 해당 유사실적이 본 과업과 비교할 때 얼마나 유사성이 높은지(질적 평가)를 동시에 고려하여, 해당 업체의 역량과 당해 과업을 수행했을 때의 성공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td></tr>
<tr><td>평가내용</td><td>정량평가 : 기존 발주청별 평가방법 유지
유사실적별 발주청이 제시한 ‘유사성 판단기준’과의 부합 여부 평가
발주청이 입찰공고나 TOR에 제시한 유사성 판단기준에 대해 각 대표실적의 부합여부 확인
각 대표실적은 발주청이 제시한 유사성 판단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며, 종합적으로 해당 업체는 얼마나 유사한 사업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정성평가 :
예) 도로설계
유사실적 1. – □□□□ 사업 (20XX-XX-XX)
<table>
<tr><th>유사성 판단기준</th><th>교량 0개소 이상</th><th>1개 교량 최대 연장 00km 이상</th><th>터널 0개소 이상</th><th>1개 터널 최대 연장 00km 이상</th><th>○○○○ 터널 공법</th></tr>
<tr><td>확 인</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유사성 기준과 관련된 ‘대표적 성과’에 대한 평가
각 대표실적에 대해 발주청이 제시한 유사성 판단기준 중 가장 핵심적인 항목을 선택하여 그와 관련된 문제해결, 품질향상, 비용절감 등, 대표적 성과를 제시 (서술식)
대표실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과업과 유사한 특성 또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인 성과를 올렸는가?
유사실적에서의 성과는 당해 용역과업의 성공에 얼마나 유효한가?</td></tr>
</table>

나. 공공기관 종심제 시범사업 세부기준 비교 분석

○ 공공기관 종심제 시범사업에 적용 된 세부평가기준을 비교 분석하였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4가지 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2019년 이전에 공고된 용역으로 올해 2월에 배포된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과 세부평가기준, 용어의 정의 등에서 상이한 부분이 많았음

○ 또한, 주공종이 건축이 아닌 토목으로 평가기준을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토교통부 발주자 운영지침을 중심으로 조달청의 평가기준 및 운영 지침을 수립하며,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조달 참여업체의 업무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조달청 세부평가기준을 최대한 준용함

○ 조달청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있어, 조달 참여업체와 평가자의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지침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여야 함

○ 또한, 공공기관 종심제 시범사업 분석은 2019년 2월 배포된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가 반영 된 용역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종심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세부평가기준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함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LH (울산송정지구 접속도로 건설사업관리)	한국도로공사 (안산~북수원 실시설계)	수자원공사 (충주댐 용수도사업 건설사업관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발 KTX직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공통사항	공통사항	① 당해 평가의 적용기준일은 따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② 유사용역의 인정범위 및 용역단계별 적용계수는 아래와 같다. ※ 시공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① 당해용역 평가의 적용기준일은 따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발주 공고일로 한다. ②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도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로법 제9조에 의한 고속국도 －도로법 제10조에 의한 일반국도 중 왕복 4차로 이상인 일반국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포함)	① 당해 평가의 적용기준일은 따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② 유사용역의 인정범위 및 용역단계별 적용계수는 아래와 같다.	① 당해 평가의 적용기준일은 따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발주청에서 시행한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 조사는 제외), 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대안입찰, 일괄입찰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조사(자문), 설계감리, 설계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 colspan="4">세부평가기준 [소분류]</th></tr>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LH
(울산송정지구 접속도로 건설사업관리)</th><th>한국도로공사
(안산~북수원 실시설계)</th><th>수자원공사
(충주댐 용수도사업 건설사업관리)</th><th>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발 KTX직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th></tr>
<tr><td></td><td></td><td>
<table>
<tr><th>인정범위</th><th>적용계수</th></tr>
<tr><td>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용역으로 계약금액이 2.3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실적 (유사용역의 인정범위 : 발주청에서 발주한 단일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 : 100%인정)</td><td></td></tr>
<tr><td>-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td><td>1.0</td></tr>
<tr><td>- 설계 및 시공단계(동시수행)의 건설사업관리용역</td><td>0.7</td></tr>
</table>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

③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중)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건설공사(인허가 기관에서 실시계획 승인 된 민간투자사업 포함 등, 이 경우 인허가 기관 승인 등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포함하되 차수 준공실적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④ 국외 유사용역은 외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청(해외건설협회가 확인)인 용역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인정범위 및 용역단계별 적용계수는 ②의 표와 동일하다.

⑤ 평가항목별 작성내용은 구체적·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술형으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그림 및 표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td><td>-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특별시도, 광역시도, 동법 제12조에 의한 지방도 중 왕복 4차로 이상으로서, 동법에 의하여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 또는 설계속도 80㎞/hr 이상인 도로

③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용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계약기간 150일 이상인 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자문용역
- 계약기간 60일 이상인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 계약기간 90일 이상인 일괄입찰, 설계감리, 설계VE
(단,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은 유사용역 인정범위에서 제외한다.)

④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해당용역의 발주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 내 >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중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단, 새만금개발청
-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광역자치단체(특</td><td>
<table>
<tr><th>인정범위</th><th>적용계수</th></tr>
<tr><td>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수행한 용역으로 계약금액이 2.3억원 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실적 (유사용역의 인정범위 : <별표 1></td><td></td></tr>
<tr><td>-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td><td>1.0</td></tr>
<tr><td>- 설계 및 시공단계(동시수행)의 건설사업관리용역</td><td>0.7</td></tr>
</table>
※ 시공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

③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준공 또는 수행중)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건설공사(인허가 기관에서 실시계획 승인 된 민간투자사업 포함 등, 이 경우 인허가 기관 승인 등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포함하되 차수 준공실적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④ 국외 유사용역은 외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청(해외건설협회가 확인)인 용역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인정범위 및 용역단계별 적용계수는 ②의 표와 동일하다.</td><td>VE 등

③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용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노반분야〉
- 동일분야 : 일반철도·고속철도·도시철도·경전철의 철도노반
- 기타분야
· 발주청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공사로서 설계속도 80㎞/h이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토목분야
· 설계속도 70㎞/h이상 지방도의 토목분야
· 일반철도·고속철도·도시철도·경전철의 궤도분야

④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해당용역의 발주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내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의한다.
- 국외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외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

⑤ 당해용역 평가에 적용되는 유사용역의 종류별 적용계수는 다음과 같다.
〈노반분야〉
- 동일분야 : 1.0, - 기타분야 : 0.4

⑥ 당해용역 평가에 적용되는 유사용역의 단계별 적용계수는 다음과 같다.
- 실시설계(대</td></tr>
</table>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LH (울산송정지구 접속도로 건설사업관리)	한국도로공사 (안산~북수원 실시설계)	수자원공사 (충주댐 용수도사업 건설사업관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발 KTX직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보조자료로 최소화하여야 한다. ⑥ 감점사항 관련, 입찰참가의향서 작성위반 감점사항은 본 용역의 발주부서가 집계하여 감점하고, 비리·부실 감점사항은 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점한다. ⑦ 입찰참가의향서 평가점수에 따른 기술제안서 평가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단, 기술제안서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의향서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2인 이내에서 기술제안서 평가대상자를 추가 선정한다.	별시, 광역시, 도에 한함), 기초자치단체(시, 군) -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도로의 민자사업 시행자 < 국 외 > - 외국의 정부 및 외국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 * 해당 입찰참여업체가 인정가능한 발주청의 범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인정 ⑤ 당해용역 평가에 적용되는 유사용역 종류별 적용계수는 다음과 같다. - 고속도로(설계속도 80㎞/hr이상인 도로 또는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 1.0 - 일반도로(유사용역 인정범위 중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 0.8 ⑥ 당해용역 평가에 적용되는 유사용역 단계별 적용계수는 다음과 같다. - 실시설계(대안입찰,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 : 1.0 - 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 : 0.8 - 설계감리, 설계VE, 기술자문 : 0.6 ⑦ 당해용역 평가에 적용되는 핵심전문가 자격계수는 다음과 같다. - 당해용역	⑤ 당해용역 평가에 적용되는 핵심전문가 자격계수는 다음과 같다. - 당해용역 TOR(Terms of Reference,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한 최소자격조건 충족시 : 1.0 - 당해용역 TOR에서 요구한 최소자격조건미충족시 : 0.0 ⑥ 평가항목별 작성내용은 구체적·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술형으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그림 및 표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자료로 최소화하여야 한다. ⑦ 기재된 내용 중 잘못된 사항이나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평가서류가 불명확한 경우(미제출한 경우 제외)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감점사항 관련, 제안서 규격 및 작성지침 위반은 감점사항은 본 용역의 발주부서가 집계하여 감점하고, 비리·부실 감점사항은 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점한다.	안입찰, 일괄입찰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 : 1.0 -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 조사는 제외), 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대안입찰, 일괄입찰 포함), : 0.8 - 기술조사(자문), 설계감리, 설계VE : 0.6 ⑦ 당해용역 평가에 적용되는 핵심전문가 자격계수는 다음과 같다. - 당해용역 TOR(Terms of Reference,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한 최소자격조건 충족시 : 1.0 - 당해용역 TOR에서 요구한 최소자격조건미충족시 : 0.0 ⑧ 타절 준공된 유사용역 수행에 대하여는 타절 준공 공정률을 계수로 적용하여 처리한다. ⑨ 평가항목별 작성내용은 구체적·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술형으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그림 및 표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자료로 최소화하여야 한다. ⑩ 모든 평가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사실이 확인된 것에 한해 평가한다. ⑪ 평가위원회는 감점사항에 대하여 당해용역 평가에 참여한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LH (울산송정지구 접속도로 건설사업관리)	한국도로공사 (안산~북수원 실시설계)	수자원공사 (충주댐 용수도사업 건설사업관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발 KTX직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TOR(Terms of Reference,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한 최소자격조건 충족시 : 1.0 - 당해용역 TOR에서 요구한 최소자격조건 미충족시 : 0.0 ⑧ 타절 준공된 유사용역 수행에 대하여는 타절 준공 공정률을 계수로 적용하여 처리한다. ⑨ 평가항목별 제안내용은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구체적·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⑩ 모든 평가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사실이 확인된 것에 한해 평가한다. ⑪ 작성위반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주관부서 소속직원이 평가하고, 비리관련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주관부서에서 비리감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감점처리 한다. 비리감점 관련 업무처리 절차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른다.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감점할 수 있다.
수행능력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의 품질 (100점, 정성적 평가)** ○평가점수(점) = 상대평가 점수 ○평가내용 -당해용역 사업 특성 등 이해의 정도-당해용역 사업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추진 방안의 적정성 -기본 및 실시설계 검토 내용의 적정성 -당해용역의 특성을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의 품질 (180점, 정성적 평가)**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평가내용 - 당해용역 사업노선 특성 등 이해의 정도 - 당해용역 사업노선 특성을 고려한 전문분야별 설계추진방안 및 기대효과의 적정성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의 품질 (100점, 정성적 평가)** ○평가점수(점) = 상대평가 점수 ○평가내용 - 당해용역 사업 특성 등 이해의 정도 - 당해용역 사업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추진 방안의 적정성 - 기본 및 실시설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의 품질 (100점, 정성적 평가)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평가내용 -당해용역 사업노선 특성 등 이해의 정도 -당해용역 사업노선 특성을 고려한 전문분야별 설계추진방안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LH (울산송정지구 접속도로 건설사업관리)	한국도로공사 (안산~북수원 실시설계)	수자원공사 (충주댐 용수도사업 건설사업관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발 KTX직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고려한 기대효과 검토의 적정성 ○ 평가방법 – 기술제안 내용 및 분야별 핵심전문가(Key Expert) 발표,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 前단계사업 해결과제 및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내용 및 기대효과의 적정성 ○ 평가방법 – 기술제안 내용 및 분야별 핵심전문가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계 검토 내용의 적정성 –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대효과 검토의 적정성 ○ 평가방법 – 기술제안 내용 및 분야별 핵심전문가(Key Expert) 발표,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및 기대효과의 적정성 –前단계사업 해결과제 및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내용 및 기대효과의 적정성 ○ 평가방법 – 핵심전문가(Key Expert) 기술제안 내용 발표 및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용역수행조직의 운영방법	**용역수행조직의 운영방법** **(100점, 정성적 평가)** ○ 평가점수(점) = 상대평가 점수 ○ 평가내용 – 당해용역을 수행하는 조직 운영방안의 적정성 – 인허가, 시공관리, 대관/대민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방안의 적정성 – 시급한 공사수행사항(재해 등) 발생시 용역수행조직의 운영방안 ○ 평가방법 – 기술제안 내용 및 분야별 핵심전문가 발표,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용역수행조직의 운영방법** **(100점, 정성적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당해용역 수행조직 운영방안의 적정성 – 당해용역 수행조직 및 인력편성의 적정성 [조직구조, 핵심전문가 및 일반전문가(Non Key Expert) 명단] – 전문분야별 팀, 팀리더의 장점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 전문분야별 협업추진시 애로사항의 해결방안 적정성 ○ 평가방법 – 기술제안 내용 및 분야별 핵심전문가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용역수행조직의 운영방법** **(100점, 정성적 평가)** ○ 평가점수(점) = 상대평가 점수 ○ 평가내용 – 당해용역을 수행하는 조직 운영방안의 적정성 – 용역기간 변경(단축, 연장)시의 인력운영 방안의 적정성 ○ 평가방법 – 기술제안 내용 및 분야별 핵심전문가 발표,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용역수행조직의 운영방법** **(100점, 정성적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당해용역 수행조직 운영방안의 적정성 – 당해용역 수행조직 및 인력편성의 적정성 [조직구조, 핵심전문가 및 일반전문가(Non Key Expert) 명단] – 조직 구성원의 장점과 활용방안 적정성 – 전문분야별 협업추진시 애로사항의 해결방안의 적정성 ○ 평가방법 – 핵심전문가(Key Expert) 기술제안 내용 발표 및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과업내용서에 대한	**TOR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50점, 정성적 평가)** ○ 평가점수(점) = 상대평가 점수	**TOR에 대한 개선사항** **(50점, 정성적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TOR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50점, 정성적 평가)** ○ 평가점수(점) = 상대평가 점수	**TOR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50점, 정성적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LH (울산송정지구 접속도로 건설사업관리)	한국도로공사 (안산~북수원 실시설계)	수자원공사 (충주댐 용수도사업 건설사업관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발 KTX직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개선사항	○평가내용 – 본단지 입주시기('18.12월)를 감안한 진입도로 적기개설 등 당해용역의 현안사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TOR 개선사항의 적정성 ○평가방법 – 기술제안 내용 및 분야별 핵심전문가 발표,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최종 결과물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TOR 개선사항의 적정성 – 당해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TOR 개선사항의 적정성 ○평가방법 – 기술제안 내용 및 분야별 핵심전문가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평가내용 – 당해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TOR 개선사항의 적정성 ○평가방법 – 기술제안 내용 및 분야별 핵심전문가 발표,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최종 결과물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TOR 개선사항의 적정성 – 당해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TOR 개선사항의 적정성 ○평가방법 – 핵심전문가(Key Expert) 기술제안 내용 발표 및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작업및직원투입계획	작업계획	**작업계획** **(75점, 정성적 평가)** ○평가점수(점) = 상대평가 점수 ○평가내용 – 당해용역 수행을 위한 주요활동과 업무의 구성, 각 활동 및 업무의 내용과 기간의 적정성 – 용역기간 변경사유 발생으로 인한 작업계획 조정(직원투입계획) 방안의 적정성 ○평가방법 – 기술제안 내용 및 분야별 핵심전문가 발표,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작업계획** **(20점, 정성적 평가)**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당해용역 수행을 위한 주요활동과 업무의 구성, 각 활동 및 업무의 내용과 기간의 적정성 – 설계용역기간 단축 사유 발생으로 인한 작업계획 조정방안의 적정성 ○평가방법 – 기술제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인터뷰 제외)	**작업계획** **(75점, 정성적 평가)** ○평가점수(점) = 상대평가 점수 ○평가내용 – 당해용역 수행을 위한 주요활동과 업무의 구성, 각 활동 및 업무의 내용과 기간의 적정성 – 용역기간 변경사유 발생으로 인한 작업계획 조정(직원투입계획) 방안의 적정성 ○평가방법 – 기술제안 내용 및 분야별 핵심전문가 발표,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작업계획** **(100점, 정성적 평가)**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당해용역 수행을 위한 주요활동과 업무의 구성, 각 활동 및 업무의 내용과 기간의 적정성 – 설계용역기간 단축 사유 발생으로 인한 작업계획 조정방안의 적정성 – 시급한 인허가변경사항 등의 발생으로 인한 작업계획 조정방안의 적정성 ○평가방법 – 핵심전문가(Key Expert) 기술제안 내용 발표 및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직원투입	**직원투입계획** **(75점, 정성적평가)**		**직원투입계획** **(75점, 정성적 평가)**	**직원투입계획** **(100점, 정량적 평가)**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 colspan="4">세부평가기준 [소분류]</th></tr>
<tr><th colspan="2">대분류</th><th>중분류</th><th>LH
(울산송정지구 접속도로 건설사업관리)</th><th>한국도로공사
(안산~북수원 실시설계)</th><th>수자원공사
(충주댐 용수도사업 건설사업관리)</th><th>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발 KTX직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th></tr>
<tr><td colspan="2"></td><td>계획</td><td>○평가점수(점) = 상대평가 점수
○평가내용
– 당해용역 수행 인력편성의 적정성
* 조직구조, 핵심전문가(Key Expert) 및 추가인력 투입계획, 명단 등
– 조직 구성원의 장점과 활용방안 적정성
○평가방법
– 기술제안 내용 및 분야별 핵심전문가 발표,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td><td></td><td>○평가점수(점) = 상대평가 점수
○평가내용
–당해용역 수행 인력편성의 적정성
* 조직구조, 핵심전문가(Key Expert) 및 추가인력 투입계획, 명단 등
–조직 구성원의 장점과 활용방안 적정성
○평가방법
– 기술제안 내용 및 분야별 핵심전문가 발표,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td><td>○평가점수(점) = Σ(기술자별 배점 × 적용계수)
○ 평가내용
– 당해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가 타 유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업무중복도에 대한 평가
○ 적용계수 : 타 유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총 중복비율에 따른 적용계수
<table><tr><th>구분</th><th>120% 미만</th><th>120% 이상 155% 미만</th><th>155% 이상 190% 미만</th><th>190% 이상 225% 미만</th><th>225% 이상</th></tr><tr><td>적용계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5</td></tr></table>
– 중복비율=Σ[기술자별 각 유사용역건의 중복(잔여) 용역기간 × 유사용역 단계별 적용계수]/해당 유사용역 기간 × 100
– 단, 책임기술자가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우「국토교통부 고시 2014-270호」시행일(2014.5.23) 이후 발주된 유사용역에 한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 기술자변경으로 신규투입된 경우는 평가]
– 중복(잔여) 용역기간이 설계감리 또는 설계VE 용역의 경우 60일 미만, 기타용역의 경우 90일 미만인 경우에 총 중복기간에서 제외
–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은 중복기간 미산입
– 기술자문용역의 비상주부문과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사후환경용역은 중복대상에서 제외
– 자료 오류, 누락 확인시 해당기술자 0점 처리</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 colspan="4">세부평가기준 [소분류]</th></tr>
<tr><th colspan="2">대분류</th><th>중분류</th><th>LH
(울산송정지구 접속도로 건설사업관리)</th><th>한국도로공사
(안산~북수원 실시설계)</th><th>수자원공사
(충주댐 용수도사업 건설사업관리)</th><th>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발 KTX직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th></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집중참여도</td><td></td><td>
집중참여도 (100점, 정량적 평가)
○ 평가점수(점) = Σ(기술자별 배점 × 적용계수)
○ 평가내용
– 당해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가 타 유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업무중복도에 대한 평가
○ 적용계수 : 타 유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총 중복비율에 따른 적용계수
<table>
<tr><th>구분</th><th>120% 미만</th><th>120% 이상 155% 미만</th><th>155% 이상 190% 미만</th><th>190% 이상 225% 미만</th><th>225% 이상</th></tr>
<tr><td>적용계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5</td></tr>
</table>
– 중복비율=Σ[기술자별 각 유사용역 건의 중복(잔여) 용역기간 × 유사용역 단계별 적용계수]/해당 유사용역 기간 × 100
– 단, 책임기술자가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우「국토교통부 고시 2014-270호」시행일(2014.5.23) 이후 발주된 유사용역에 한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 기술자변경으로 신규투입된 경우는 평가]
– 참여기술자는 우리공사 발주 설계용역[PQ 또는 종심제 중복도(집중참여도) 평가대상 인원에 한함]에 대해 중복비율 평가
– 중복(잔여) 용역기간이 설계감리 또는 설계VE 용역의 경우 60일 미만, 기타용역의 경우 90일 미만인 경우에 총 중복기간에서</td><td></td><td></td></tr>
</table>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LH (울산송정지구 접속도로 건설사업관리)	한국도로공사 (안산~북수원 실시설계)	수자원공사 (충주댐 용수도사업 건설사업관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발 KTX직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외 – 3개월 이상 용역 중지 중인 사업은 중복기간 미산입 – 기술자문용역의 비상주부문과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사후환경용역은 중복대상에서 제외 – 자료 오류, 누락 확인시 해당기술자 0점 처리		
전문가역량	전문가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 역량	–	–	–	–
사회적책임	사회적책임	인력고용(가점)	–	–	–	–
		공정거래(감점)	**비리.부실감점** **(정량적 평가)** ○ 비리관련 감점은 입찰참가의향서 작성위반 감점조항과는 별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한 없이 추가로 감점	**비리관련 감점** **(–100점, 정량적 평가)** ○ 비리관련 감점은 제안서 작성위반 감점조항과는 별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추가로 감점하되 감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비리.부실감점** **(정량적평가)** ○ 비리관련 감점은 입찰참가의향서 작성위반 감점조항과는 별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한 없이 추가로 감점	**비리관련 감점** **(–100점, 정량적 평가)** ○ 비리관련 감점은 제안서 작성위반 감점조항과는 별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추가로 감점하되 감점한도는 100점으로 한다. –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 colspan="4">세부평가기준 [소분류]</th></tr>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LH
(울산송정지구 접속도로 건설사업관리)</th><th>한국도로공사
(안산~북수원 실시설계)</th><th>수자원공사
(충주댐 용수도사업 건설사업관리)</th><th>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발 KTX직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th></tr>
<tr><td colspan="2"></td><td>
<table>
<tr><th>구분</th><th>내 용</th><th>감점</th><th>감점기간</th></tr>
<tr><td>평가위원 사전접촉</td><td>평가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 있었던 경우</td><td>30점</td><td>당해 평가</td></tr>
<tr><td>평가위원 사전설명</td><td>평가위원에 대한 당해 평가 관련 사전설명이 있었던 경우</td><td>50점</td><td>최종 감점 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td></tr>
<tr><td>평가 관련 비리·부정행위</td><td>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td><td>150점</td><td>최종 감점 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td></tr>
<tr><td>불성실 작성</td><td>허위사실 기재, 인정가능 실적 누락 등의 부실 작성 등 평가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td><td>최대 100점</td><td>최종 감점 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td></tr>
</table>
○ 감점 부과 등 세부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용역 등 제안서평가 운영지침” 준용
</td><td>
최종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
– 공동입찰은 참여업체 감점행위시 대표사도 1/2 감점 적용
※ 평가관련 비리감점
<table>
<tr><th>감점사유</th><th>감점</th><th>감점기간</th></tr>
<tr><td>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td><td>10</td><td>당해 평가</td></tr>
<tr><td>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td><td>20</td><td>감점 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td></tr>
<tr><td>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td><td>100</td><td>감점 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td></tr>
</table>
</td><td>
<table>
<tr><th>구분</th><th>내 용</th><th>감점</th><th>감점기간</th></tr>
<tr><td>평가위원 사전접촉</td><td>평가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 있었던 경우</td><td>30점</td><td>당해 평가</td></tr>
<tr><td>평가위원 사전설명</td><td>평가위원에 대한 당해 평가 관련 사전설명이 있었던 경우</td><td>50점</td><td>최종 감점 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td></tr>
<tr><td>평가 관련 비리·부정행위</td><td>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td><td>150점</td><td>최종 감점 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td></tr>
<tr><td>불성실 작성</td><td>허위사실 기재, 인정가능 실적 누락 등의 부실 작성 등 평가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td><td>최대 100점</td><td>최종 감점 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td></tr>
</table>
○ 감점 부과 등 세부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기준” 준용
</td><td>
최종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
– 공동입찰은 참여업체 감점행위시 대표사도 1/2 감점 적용
※ 평가관련 비리감점
<table>
<tr><th>감점사유</th><th>감점</th><th>감점기간</th></tr>
<tr><td>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td><td>10</td><td>당해평가</td></tr>
<tr><td>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td><td>20</td><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td></tr>
<tr><td>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td><td>100</td><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td></tr>
</table>
</td></tr>
<tr><td>평가관련 신뢰도</td><td>평가관련 신뢰도</td><td>평가관련 신뢰도</td><td>
기술제안서 작성위반 감점
(–10점, 정량적 평가)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제시된 제한규격(Size) 위반 시 5점 감점
– 단, 해당 도서 규격의 가로, 세로 5% 이내의 오차를 허용한다.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제시된 아래사항 위반 시
</td><td>
제안서 작성위반 감점
(–30점, 정량적 평가)
○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시 최대 30점 범위 내에서 감점
※ 감점항목
–제안서 페이지 수 초과 : 1페이지당 1점
–제안서 규격 위반(페이지 수 관계없음)
</td><td>
기술제안서 작성위반 감점
(–10점, 정량적 평가)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제시된 제한규격(Size) 위반 시 5점 감점
– 단, 해당 도서 규격의 가로, 세로 5% 이내의 오차를 허용한다.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제시된 아래사항 위반 시
</td><td>
제안서 작성위반 감점
(–30점, 정량적 평가)
○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시 최대 30점 범위 내에서 감점
※ 감점항목
– 제안서 페이지 수 초과 : 1페이지당 1점
– 제안서 규격 위반(페이지 수 관계없음)
</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 colspan="4">세부평가기준 [소분류]</th></tr>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LH
(울산송정지구 접속도로 건설사업관리)</th><th>한국도로공사
(안산~북수원 실시설계)</th><th>수자원공사
(충주댐 용수도사업 건설사업관리)</th><th>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발 KTX직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th></tr>
<tr><td colspan="2"></td><td></td><td>
<table>
<tr><th>구 분</th><th>규격(A4) 위반시</th><th>양면인쇄 위반시</th><th>좌철 위반시</th></tr>
<tr><td>감 점</td><td>1점</td><td>1점</td><td>1점</td></tr>
</table>
</td><td></td><td>
<table>
<tr><th>구 분</th><th>규격(A4) 위반시</th><th>양면인쇄 위반시</th><th>좌철 위반시</th></tr>
<tr><td>감 점</td><td>1점</td><td>1점</td><td>1점</td></tr>
</table>
</td></tr>
<tr><td colspan="2"></td><td></td><td>최대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 제안서 기준쪽수 초과 : 쪽당 1점
- 색도(컬러) 사용 : 쪽당 1점
- 그림 등 이미지 사용 : 쪽당 1점
- 바탕면, 여백부 등의 치장 : 쪽당 1점
* 제출된 기술제안서 원본1부를 기준으로 적용
* 기준쪽수의 기준은 A4이며, A3는 A4 2매로 적용
* 컬러사용 및 그림 등 이미지 사용의 경우, 발표 보조자료 제외</td><td>- 칼라 사용 위반 : 1페이지당 1점</td><td>최대 5점 범위 내에서 감점
- 제안서 기준쪽수 초과 : 쪽당 1점
- 색도(컬러) 사용 : 쪽당 1점
- 바탕면, 여백부 등의 치장 : 쪽당 1점
* 제출된 기술제안서 원본1부를 기준으로 적용</td><td>- 칼라 사용 위반 : 1페이지당 1점</td></tr>
<tr><td>유사용역수행실적</td><td>유사용역수행실적</td><td>입찰참가의향서의 유사실적</td><td>입찰참가의향서의 “유사실적”
(50점, 정량적 평가)
○ 평가점수(점)=배점 × $\frac{EOI\ 유사실적평가점수}{EOI\ 유사실적평가배점(20점)}$
○ 입찰참가의향서(EOI) 평가시 산출한 유사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td><td>입찰참가의향서의 유사실적
(50점, 정량적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frac{EOI\ 유사실적평가점수}{EOI\ 유사실적평가배점}$
○ EOI 평가시 산출한 유사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td><td>입찰참가의향서의 유사실적
(50점, 정량적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frac{EOI\ 유사실적평가점수}{EOI\ 유사실적평가배점}$
○ EOI 평가시 산출한 유사실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td><td>입찰참가의향서 유사실적
(50점, 정량적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frac{EOI\ 유사실적평가점수}{EOI\ 유사실적평가배점(40점)}$</td></tr>
<tr><td>전문가평가</td><td>전문가평가</td><td>유사실적</td><td>핵심전문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200점, 정량적 평가)
○ 평가점수(점) = Σ(기술자별 배점×실적적용계수×경력적용계수)
○ 기술자별 배점
<table>
<tr><th>구분</th><th>책임기술자</th><th>분야별 기술자</th><th>기술지원 기술자</th></tr>
</table>
</td><td>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양적평가
(100점, 정량적 평가)
○ 평가점수(점) = Σ(기술자별 배점×적용계수)
○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의 양적 평가
○ 수행실적(건)=Σ(수행건수 × 유사용역 종류별 적용계수 ×</td><td>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양적평가
(200점, 정량적 평가)
○ 평가점수(점) = Σ(기술자별 배점×적용계수)
○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양적 평가
○ 수행실적(건)=Σ(수행건수×유사용역 단계별 적용계수)</td><td>핵심전문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100점, 정량적 평가)
○ 평가점수(점) = Σ(기술자별 배점×적용계수)
○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의 양적 평가
○ 수행실적(건)=Σ(수행건수 × 유사용역 종류별 적용계수 ×</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 colspan="4">세부평가기준 [소분류]</th></tr>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LH
(울산송정지구 접속도로 건설사업관리)</th><th>한국도로공사
(안산~북수원 실시설계)</th><th>수자원공사
(충주댐 용수도사업 건설사업관리)</th><th>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발 KTX직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th></tr>
<tr><td></td><td></td><td>
<table>
<tr><td>분야</td><td>토목</td><td>토목1</td><td>토목2</td><td>토목3</td><td>토목</td></tr>
<tr><td>등급</td><td>고급이상</td><td>중급이상</td><td>초급이상</td><td>초급이상</td><td>고급이상</td></tr>
<tr><td>배점</td><td>80</td><td>50</td><td>30</td><td>10</td><td>30</td></tr>
</table>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자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적용계수
<table>
<tr><th>책임</th><th>15년 이상</th><th>15년 미만~13년 이상</th><th>13년 미만~11년 이상</th><th>11년 미만~9년 이상</th><th>9년미만</th></tr>
<tr><td>고급</td><td>10년 이상</td><td>10년 미만~8년 이상</td><td>8년미만~6년 이상</td><td>-</td><td>-</td></tr>
<tr><td>중급 이하</td><td>8년 이상</td><td>8년미만~6년 이상</td><td>6년미만~4년 이상</td><td>4년미만~2년 이상</td><td>2년미만</td></tr>
<tr><td>실적적용계수</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
</table>
○ 해당분야 경력
– 발주청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 상주건설사업관리(감독) 경력 : 100%인정
* 당해용역 주요공종이 일반도로공사인 경우로 평가하되,
· 단독으로 시행된 교량, 터널 경력은 불인정
· 공사명이 교량, 터널로서 일부 접속도로가 포함된 경우라도 주된 공종이 도로가 아니면 불인정(단, 단독으로 시행된 지하차도 경력은 인정)
– 발주청에서 시행한 대지(단지)조성공사, 아파트·공동주택 단지토목공사 및 교량, 터널 단독으로 시행된 도로공사의 상주건설사업관리(감독) 경력 : 70% 인정
– 단, 하자보수, 보</td><td>유사용역 단계별 적용계수 × 핵심전문가 자격계수)
$수행건수(건) = \frac{참여기간(개월)}{총계약기간(개월)}$
–
– 수행건수는 해당 용역의 발주청이 인정하는 용역에 실제 참여한 기간에 한하여 수행건수로 인정
○ 사업책임 기술자
<table>
<tr><th>수행실적(건)</th><th>4.0건 이상</th><th>3.5건 이상 4.0건 미만</th><th>3.0건 이상 3.5건 미만</th><th>2.5건 이상 3.0건 미만</th><th>2.5건 미만</th></tr>
<tr><td>적용계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5</td></tr>
</table>
○ 분야책임(토목시공 제외) 기술자
<table>
<tr><th>수행실적(건)</th><th>3.0건 이상</th><th>2.75건 이상 3.0건 미만</th><th>2.50건 이상 2.75건 미만</th><th>2.25건 이상 2.50건 미만</th><th>2.25건 미만</th></tr>
<tr><td>적용계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5</td></tr>
</table>
○ 토목시공 책임 및 분야참여 기술자
<table>
<tr><th>수행실적(건)</th><th>1.5건 이상</th><th>1.35건 이상 1.50건 미만</th><th>1.20건 이상 1.35건 미만</th><th>1.05건 이상 1.20건 미만</th><th>1.05건 미만</th></tr>
<tr><td>적용계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5</td></tr>
</table>
– 포장, 수리/수문, 수량/견적은 도로분야 실적으로 평가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질적평가 (200점, 정성적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질적평가
○ 평가방법
– 기술제안 내용(책임 및 참여기술자) 및 분야별 핵심전문가(책임</td><td>$수행건수(건) = \frac{참여기간(일)}{총계약기간(일)}$
–
* 수행건수는 해당 용역의 발주청이 인정하는 용역에 실제 참여한 기간에 한하여 수행건수로 인정
※ 기술자별 배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사업책임기술자</th><th colspan="2">분야별기술자</th><th rowspan="2">기술자원기술자</th></tr>
<tr><th>취수,정수,관로 (기업장)</th><th>터널</th></tr>
<tr><td>기술자</td><td>특급</td><td>특급</td><td>중급</td><td>중급</td><td>고급</td><td>고급</td></tr>
<tr><td>배점</td><td>80</td><td>40</td><td>20</td><td>20</td><td>20</td><td>20</td></tr>
</table>
※ 수행실적별 적용계수
<table>
<tr><th>수행실적</th><th>적용계수</th></tr>
<tr><td>3건 이상</td><td>100%</td></tr>
<tr><td>2건 이상 3건 미만</td><td>80%</td></tr>
<tr><td>1건 이상 2건 미만</td><td>60%</td></tr>
<tr><td>1건 미만</td><td>40%</td></tr>
</table>
○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범위는 <별표 1> 참고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질적평가 (200점, 정성적 평가)
○ 평가점수(점) = 상대평가 점수
○ 평가내용
– 핵심전문가 이력서(CV)를 통한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양적 평가” 제출실적 등의 질적 평가
– 단,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양적평가”에서 실적으</td><td>$수행건수(건) = \frac{참여기간(개월)}{총계약기간(개월)}$
유사용역 단계별 적용계수 × 핵심전문가 자격계수)
–
– 수행건수는 해당 용역의 발주청이 인정하는 용역에 실제 참여한 기간에 한하여 수행건수로 인정
○ 사업책임 기술자
<table>
<tr><th>수행실적(건)</th><th>4.0건 이상</th><th>3.5건 이상 4.0건 미만</th><th>3.0건 이상 3.5건 미만</th><th>2.5건 이상 3.0건 미만</th><th>2.5건 미만</th></tr>
<tr><td>적용계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5</td></tr>
</table>
○ 분야책임 기술자
<table>
<tr><th>수행실적(건)</th><th>3.0건 이상</th><th>2.75건 이상 3.0건 미만</th><th>2.50건 이상 2.75건 미만</th><th>2.25건 이상 2.50건 미만</th><th>2.25건 미만</th></tr>
<tr><td>적용계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5</td></tr>
</table>
○ 분야참여 기술자
<table>
<tr><th>수행실적(건)</th><th>1.5건 이상</th><th>1.35건 이상 1.50건 미만</th><th>1.20건 이상 1.35건 미만</th><th>1.05건 이상 1.20건 미만</th><th>1.05건 미만</th></tr>
<tr><td>적용계수</td><td>1.0</td><td>0.9</td><td>0.8</td><td>0.7</td><td>0.5</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평가항목</th><th colspan="4">세부평가기준 [소분류]</th></tr>
<tr><th>대분류</th><th>중분류</th><th>LH
(울산송정지구 접속도로 건설사업관리)</th><th>한국도로공사
(안산~북수원 실시설계)</th><th>수자원공사
(충주댐 용수도사업 건설사업관리)</th><th>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발 KTX직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th></tr>
<tr><td></td><td></td><td>수, 유지관리, 수해복구 및 도로운영사업 등은 미인정
<table><tr><th>책임</th><td>84월 이상</td><td>84월 미만 ~ 60월 이상</td><td>60월 미만 ~ 36월 이상</td><td>36월 미만 ~ 24월 이상</td><td>24월 미만</td></tr><tr><th>특급</th><td>60(24)월 이상</td><td>60월 미만 ~ 48월 이상</td><td>48월 미만 ~ 36월 이상</td><td>36월 미만 ~ 24월 이상</td><td>24월 미만</td></tr><tr><th>고급</th><td>48월 이상</td><td>48월 미만 ~ 36월 이상</td><td>36월 미만 ~ 24월 이상</td><td>24월 미만</td><td>–</td></tr><tr><th>중급 이하</th><td>36월 이상</td><td>36월 미만</td><td>–</td><td>–</td><td>–</td></tr><tr><th>경력인정계수</th><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td><td>기술자)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td><td>로 인정되지 않은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방법
– 기술제안 내용 및 분야별 핵심전문가 발표,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 발표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 인터뷰는 총 3인(사업책임기술자 1인, 상하수도 분야(특급) 1인, 토질·지질 분야 1인)만 참여하고, 나머지 분야별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는 핵심전문가 이력서(CV)로 평가</td><td></td></tr>
<tr><td></td><td>업무수행의적합성</td><td>핵심전문가 업무수행의 적합성
(200점, 정성적 평가)
○ 평가점수(점) = 상대평가 점수
○ 평가내용
– 핵심전문가 이력서(CV)를 통한 “핵심전문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출실적 등의 당해 과업과의 수행경험의 적합성 평가
– 단, “핵심전문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에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존도로 확장구간 지하차도 설치경험, 본단지 최초 입주(‘18.12)를 위한 특별한 공정</td><td></td><td></td><td>핵심전문가 업무수행의 적합성
(200점, 정성적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최근 10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질적평가
– 핵심전문가 이력서(CV)를 통한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출실적 등의 질적평가
○ 평가방법
– 핵심전문가 기술제안 내용 발표 및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td></tr>
</table>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LH (울산송정지구 접속도로 건설사업관리)	한국도로공사 (안산~북수원 실시설계)	수자원공사 (충주댐 용수도사업 건설사업관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발 KTX직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관리경험 등 ○ 평가방법 - 기술제안 내용 및 분야별 핵심전문가 발표,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 발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인터뷰는 총 2인(책임, 토목1)만 참여하고, 나머지 상주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는 핵심전문가 이력서(CV)로 평가			
	업무수행의창의성	**핵심전문가 업무수행의 창의성** **(150점, 정성적 평가)** ○ 평가점수(점) = 상대평가 점수 ○ 평가내용 - 유사용역 수행시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하여 문제해결 사례 * 창의적 아이디어 및 특별제안(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위험요인 경감),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개선 사례 - 당해용역 수행시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 방안 및 효과	**핵심전문가 업무수행의 창의성** **(200점, 정성적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 전문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시 문제해결 사례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 사례 - 최신 설계기법, 절차 등 수행경험 및 당해용역 수행시 최신 설계기법 및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방안 * 한계상태설계법, BIM, 시방서 제·개정 등 ○ 평가방법 - 기술제안 내용 및 분야별 핵심전문가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핵심전문가 업무수행의 창의성** **(150점, 정성적 평가)** ○ 평가점수(점) = 상대평가 점수 ○ 평가내용 -유사용역 수행시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하여 문제 해결 사례 * 창의적 아이디어 및 특별제안(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위험요인 경감),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개선 사례 -유사용역 수행시 건설신기술 및 특허공법 수행 경험 -당해용역 수행시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 방안 및 효과 * 창의적 아이디어,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핵심전문가 업무수행의 창의성** **(200점, 정성적 평가)** ○ 평가점수(점) =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등급별 적용계수 ○ 평가내용 -전문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시 문제해결사례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 사례 -최신 설계기법, 절차 등 수행경험 및 당해용역 수행시 최신 설계기법 및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방안 * 한계상태설계법, BIM, 시방서 제·개정 등 ○ 평가방법 - 핵심전문가(Key Expert) 기술제안 내용 발표 및 인터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평가

3. 조달청 종심제 세부기준(안) 도출

가. 종심제 세부기준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1) 조달업체 설문조사

○ 종합심사낙찰제라는 제도적 큰 변화에 있어, 참여업체의 업무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제도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응답자 현황을 보면, 설계와 건설사업관리를 병행하는 회사와 300인 이상의 대형사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기준과 기술력중심의 종심제 개정에 있어 설문조사 대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또한, 설문조사 이후 응답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별하여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 선택한 이유를 인터뷰하였고, 종심제 기준 개정에 있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평가항목별 또는 위원별 적정 차등폭에 있어 15%의 차등폭은 특정 평가위원에 의해 과도하게 점수 차이가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5% 차등폭은 기술점수의 변별력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10%에 가장 많은 선택을 하였음

○ 업계는 평가항목별 차등 또는 평가위원별 차등보다는 총점차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임. 이는 총점차등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입찰가격을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저가 투찰의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음

○ 평가위원 질문 선정방식 항목에서는 공통과 개별질문의 혼합방식을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는 공통질문을 참여업체가 공유할 경우, 순서가 늦은 업체가 답변을 준비하기 유리한 상황의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음

○ 그러나 개별질문의 경우 평가위원 중 특정업체에 대한 선호도에 의해 질문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질문 선정방식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공통질의 항목을 3배수로 선정하고 항목 내에서 질문을 실시하면 앞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 제안서 페이지 작성에 있어 축소 조정이 높게 나왔으며 그 이유로는 제안서

디자인 편집을 위한 과도한 외주비용 발생과 제안서 작성을 위해 많은 인력투입, 시간투자에 대한 부담감이였음

○ 따라서, 조달참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 정성적 평가 항목 중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는 정량적 평가의 전환이 검토되어야 함.

○ 종심제를 통한 입찰평가 방식에 있어서는 통합 평가방식을 선호하였으며,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한 시범사업에서 공고 후 개찰까지의 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를 다른 용역에 가용할 수 없게 됨. 이러한 이유로 용역업체는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는 회사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2단계 평가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일정이 짧은 통합 평가방식을 선호하였음

○ 2단계 평가방식 적용 시, 용역을 집행하는 조달청은 평가를 위한 심사를 2차례 걸쳐야 하며 용역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주해야 하는 상황의 경우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 조달청의 업무부담 가중, 조달업체의 선호 방식을 고려하여, 통합 평가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특수성과 수요기관의 별도 요청 등을 고려하여 2단계 평가방식 적용을 검토해야 함

○ 관리/기술역량 평가 항목 중 사업관리 운영체계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는데, 이는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에 대한 상대평가 기준이 모호하며 용역수행에 있어 실질적인 업무계획인 사업관리 운영체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 따라서 관리/기술역량 평가 항목 배점 배분에 있어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신용도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기술자의 유사실적의 정성평가의 경우, 10년 이내 5건과 2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설사업관리 용역일을 2년으로 가정할 경우 10년 이내 최대 5건이 가능하나 대형용역은 3년이 넘는 경우도 많아 3건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자기소개서 작성 시 3건 이내 작성하도록 유의사항에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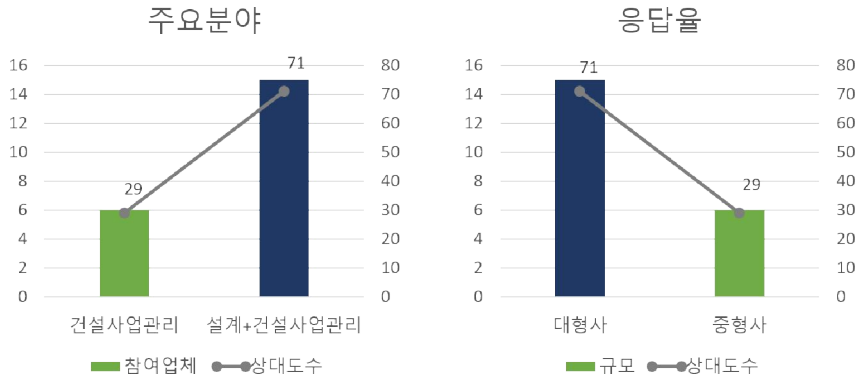
○ 기술역량평가에서는 과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은 유사실적의 정성평가 항목과 많이 유사하여 내용의 중복성이 우려되며, 용역업체도 유사한 평가항목에 대해 다른 내용을 작성함에 많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됨

○ 기술역량 평가 항목 중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에 대한 전문성이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실직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므로, 평가 항목의 배점이 높게 책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용역평가결과 심사의 경우 용역이 만료되는 시점에 평가하는 것으로 신규업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만점을 기준으로 중간값을 부여하여 평등한 평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설문응답자 현황**



– 설문에 참여한 조달업체 중 설계+건설사업관리를 병행하는 회사가 많았으며, 규모별 응답률은 대형사(300인 이상)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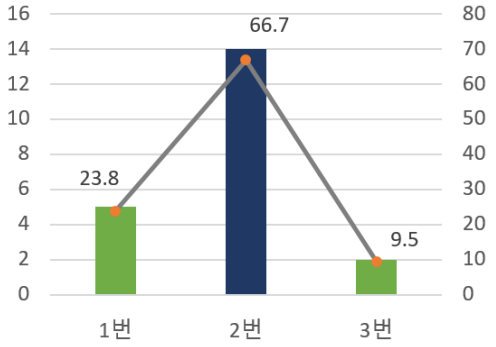
○ **평가항목별 적정차등폭**

[질문1] 종심제 평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시 적정폭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5%

② 10%

③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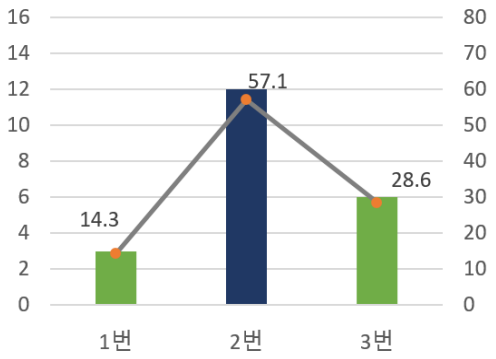


[질문2] 종심제 평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평가위원별 차등평가 시 적정폭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5%

② 10%

③ 15%



- 평가 변별력을 위한 차등폭은 항목별, 위원별 각각 66.7%, 57.1%가 10%를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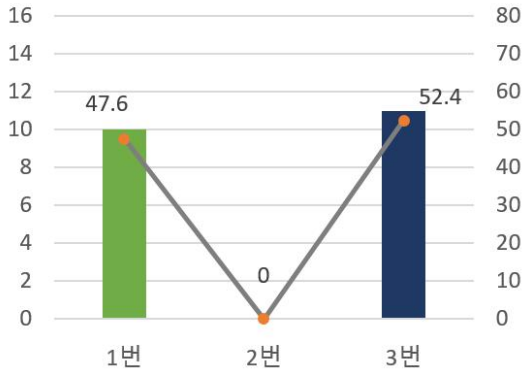
○ 질문 선정방식 및 발표/질의시간

[질문3] 용역사 평가 시 평가위원 질의응답에 있어 적정한 질문 선정 방식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공통질문

② 개별질문

③ 공통+개별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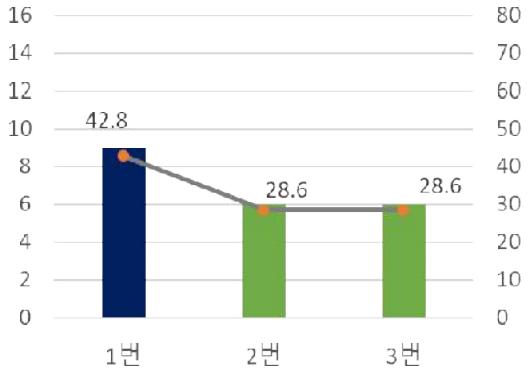


[질문4] 기술제안서 발표시간 중 발표시간과 질의응답의 시간 소요 비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발표시간 : 70%, 질의응답 : 30%

② 발표시간 : 50%, 질의응답 : 50%

③ 발표시간 : 30%, 질의응답 : 70%



- 적정 질문 선정 방식의 경우 공통+개별질문이 공통질문 보다 근소하게 많은 것을 보였으며, 적정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의 경우 발표시간이 질의시간 보다 높은 비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안서 페이지 및 종심제 입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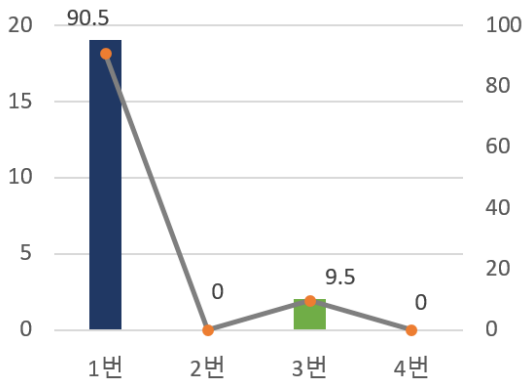
[질문5] 다음은 제안서 작성 페이지 분량입니다. 페이지 분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페이지 축소 조정

② 페이지 확대 조정

③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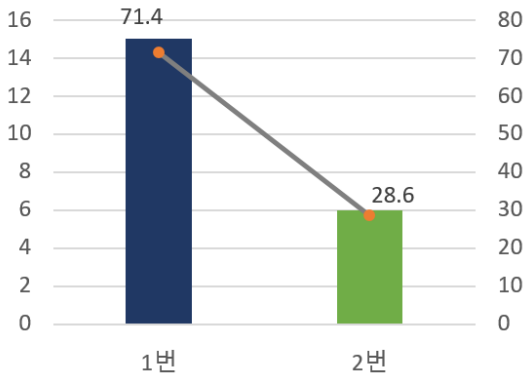
④ 잘 모르겠다



[질문6] 종심제를 통한 입찰평가 시 어떠한 평가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합니까?

① 통합 평가방식(기술이행능력 및 종합기술제안서 통합 평가)

② 2단계 평가방식(기술이행능력 및 종합기술제안서 구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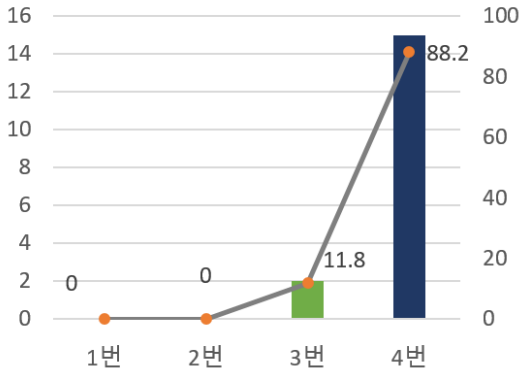
– 제안서 작성 페이지 분량의 경우 축소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종심제 입찰 평가방식은 통합평가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자 역량평가 중요도(설계)

[질문7] 참여기술인 평가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역량을 평가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학력 사항 ② 자격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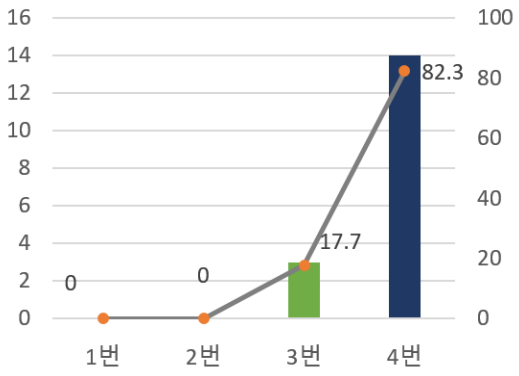
③ 근무 기간 ④ 다양한 업무 경험



[질문8] 참여기술인 평가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역량을 평가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학력 사항 ② 자격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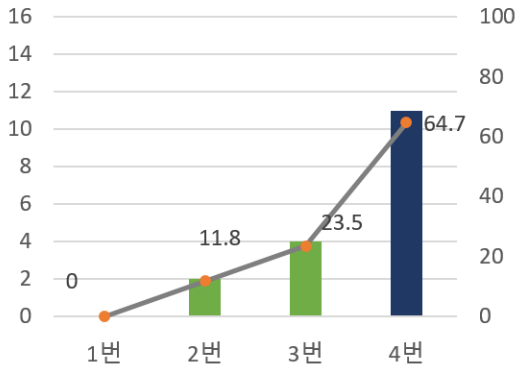
③ 근무 기간 ④ 다양한 업무 경험



[질문9] 참여기술인 평가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역량을 평가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학력 사항 ② 자격증

③ 근무 기간 ④ 다양한 업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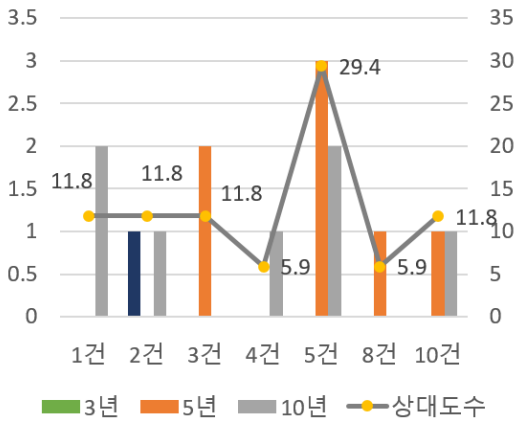
- 참여기술인의 역량 평가에 있어 다수의 답변으로 다양한 업무경험을 중시하는 것을 선호함

○ 참여업체 유사실적 적정 건수(설계)

[질문10] 참여업체의 유사실적을 정성평가하는 경우 기간 및 건수는 어느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까?

최근_____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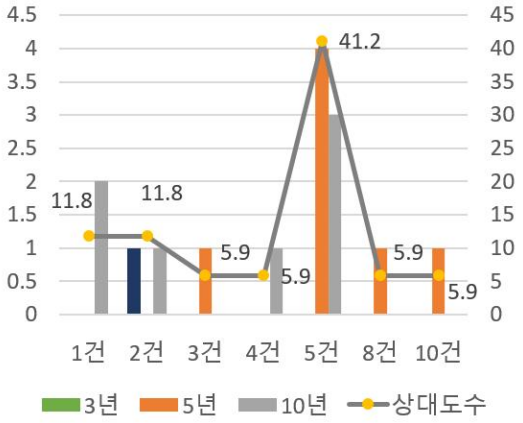
_____건



[질문11] 참여업체의 유사실적을 정량평가하는 경우 기간 및 건수는 어느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까?

최근_____년,

_____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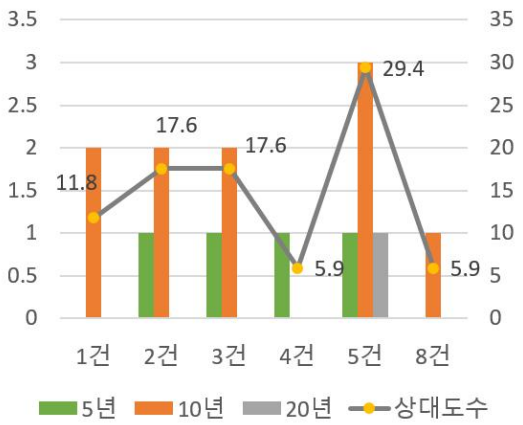


- 참여업체 유사실적의 경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모두 5년, 5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술인 적정 유사실적 건수(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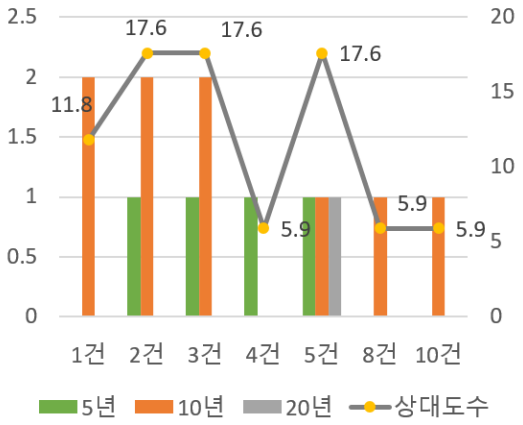
[질문12] 기술인의 참여실적을 정성평가하는 경우 기간 및 건수는 어느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까?

최근_____년,
_____건



[질문13] 기술인의 참여실적을 정량평가하는 경우 기간 및 건수는 어느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까?

최근_____년,
_____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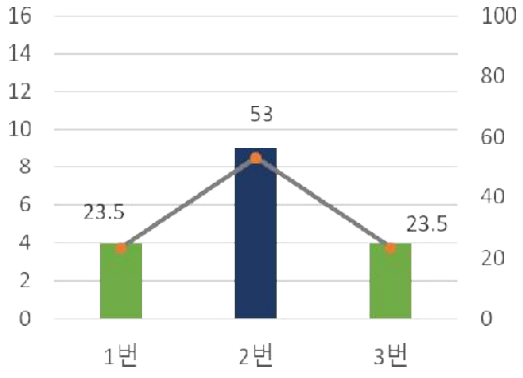


- 기술인 적정 유사실적의 경우 정성평가는 10년이내 5건이 가장 많았으며, 정량평가는 10년이내 1~3건이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남

○ 관리/기술역량 평가 항목 중 중요항목(설계)

[질문14] 관리역량 평가 중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② 사업관리 운영체계
③ 신용도(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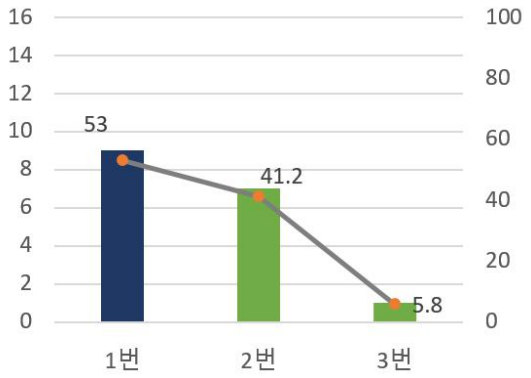


[질문15] 기술역량 평가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과업에 대한 전문성

②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③ 용역평가결과 심사



- 관리 및 기술역량 평가 항목의 경우 관리역량에서는 사업관리 운영체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역량에서는 과업에 대한 전문성이 강조 됨

○ 제안사의 품질보증체계 및 사업관리 체계 신뢰도(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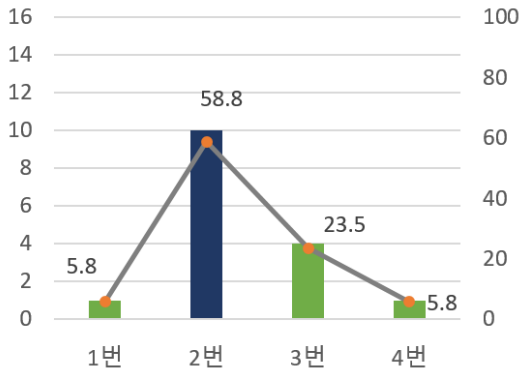
[질문16] 관리역량 평가 중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에 관한 제안서 작성 시 이에대한 신뢰도는 어느정도라 생각합니까?

① 아주 신뢰함

② 일부 신뢰함

③ 일부 불신함

④ 아주 불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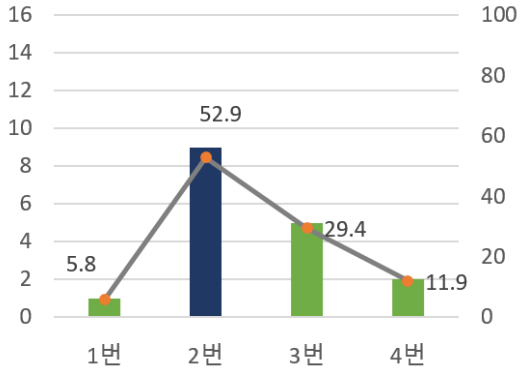
[질문17] 관리역량 평가 중 사업관리 운영체계에 관한 제안서 작성 시 이에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합니까?

① 아주 신뢰함

② 일부 신뢰함

③ 일부 불신함

④ 아주 불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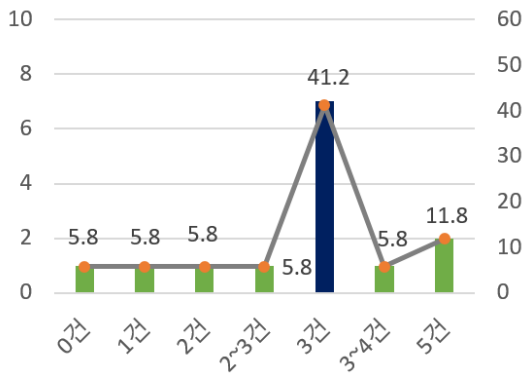


- 제안사의 품질보증체계 및 사업관리 운영체계 신뢰도 모두 일부 신뢰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동시 가능한 설계용역 수행 건수(설계)

[질문18] 종심제 적용 설계용역 수행 시 품질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시 가능한 건수는 몇 건이라고 생각합니까?

→_____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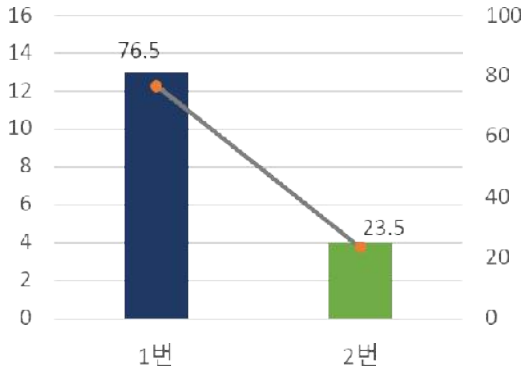
- 동시 가능한 설계용역 수행 건수에 대하여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건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조달청 평가기준 중 유사평가 항목의 채용(설계)

[질문19] 향후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심제의 정량평가항목 구성 시 조달청 설계 등(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유사평가 항목을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긍정적으로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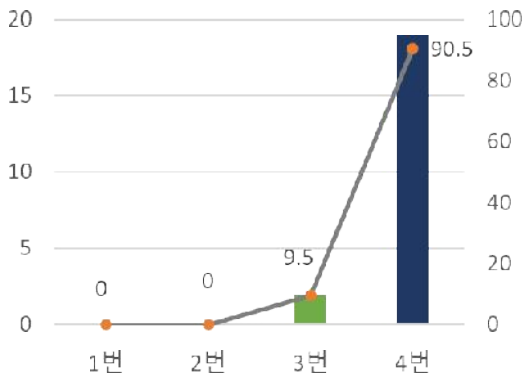
② 부정적으로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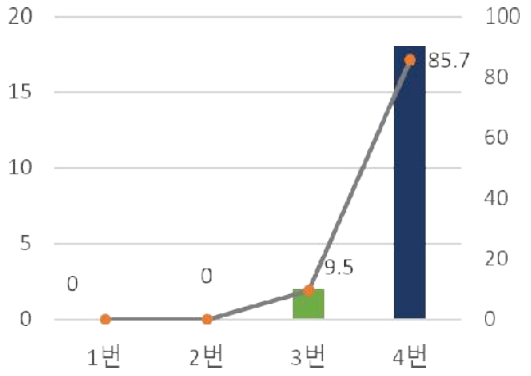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유사평가항목의 채용의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술자 역량평가 중요도(건설사업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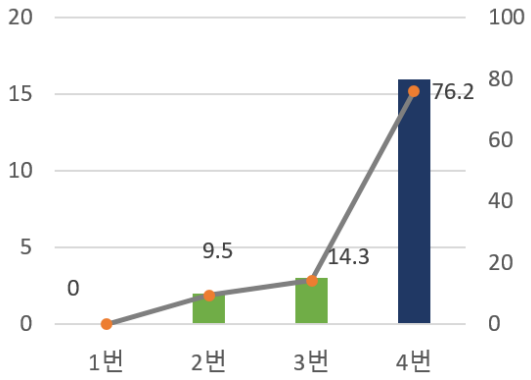
[질문20] 참여기술인 평가 중 책임건설사업관리인의 역량을 평가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학력 사항 ② 자격증
③ 근무 기간 ④ 다양한 업무 경험



[질문21] 참여기술인 평가 중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량을 평가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학력 사항 ② 자격증
③ 근무 기간 ④ 다양한 업무 경험



[질문22] 참여기술인 평가 중 기술지원기술인의 역량을 평가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학력 사항 ② 자격증
③ 근무 기간 ④ 다양한 업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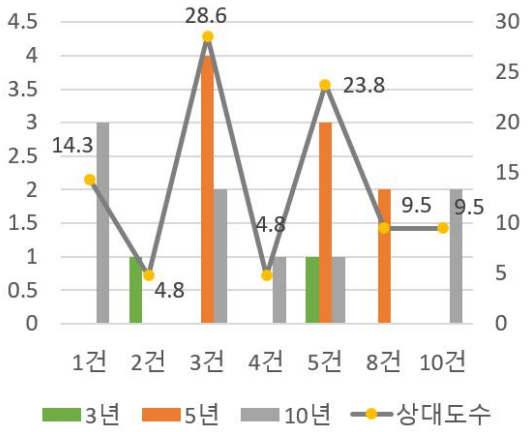


- 참여기술인의 역량 평가에 있어 다수의 답변으로 다양한 업무경험을 중시하는 것을 선호함

○ 회사 유사실적 적정 건수(건설사업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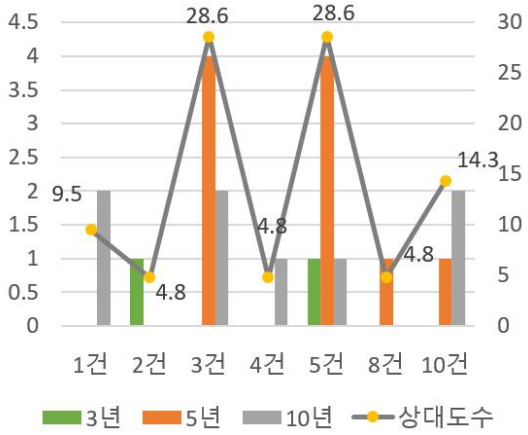
[질문23] 참여업체의 유사실적을 정성평가하는 경우 기간 및 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까?

최근_____년,
_____건



[질문24] 참여업체의 유사실적을 정량평가하는 경우 기간 및 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까?

최근_____년,
_____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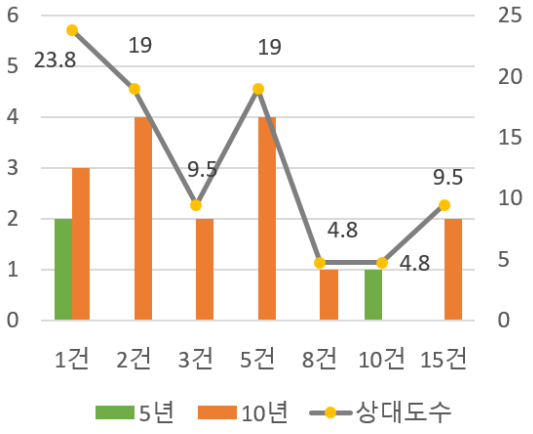


- 회사 유사실적의 경우 정성평가는 5년 3건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정량평가는 5년 3건과 5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술자 유사실적 적정 건수(건설사업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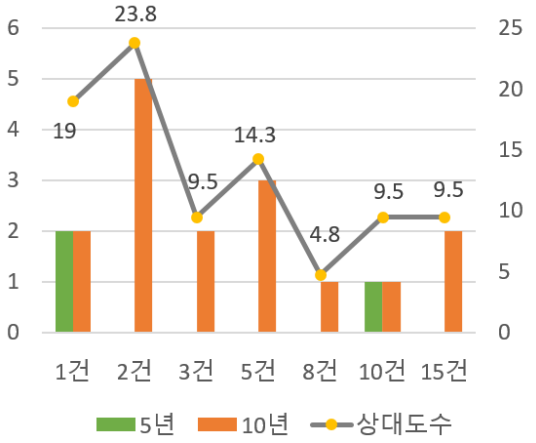
[질문25] 기술인의 참여실적을 정성평가하는 경우 기간 및 건수는 어느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까?

최근_____년,
_____건



[질문26] 기술인의 참여실적을 정량평가하는 경우 기간 및 건수는 어느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까?

최근_____년,
_____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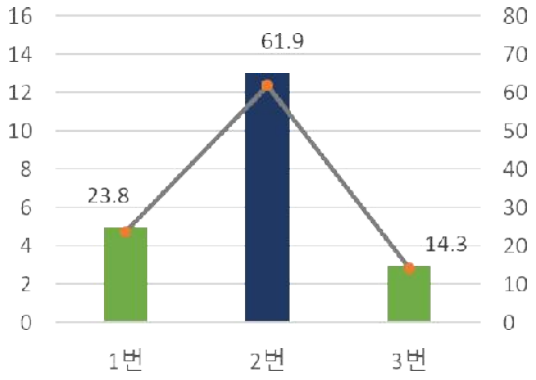


- 기술자의 유사실적의 경우 정성평가는 10년 5건과 2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량평가는 10년 2건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관리/기술역량 평가에서의 중요 항목(건설사업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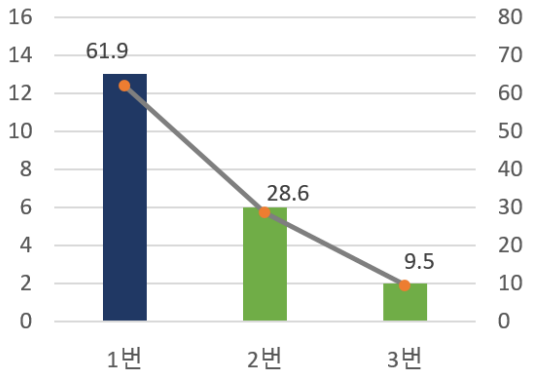
[질문27] 관리역량 평가 중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② 사업관리 운영체계
③ 신용도(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등)



[질문28] 기술역량 평가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과업에 대한 전문성
②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③ 용역평가결과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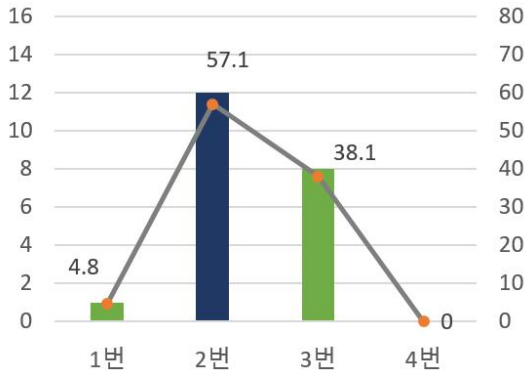


- 관리 및 기술역량 평가 항목의 경우 관리역량에서는 사업관리 운영체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역량에서는 과업에 대한 전문성이 강조 됨

○ 제안사 품질보증체계 및 사업관리 운영체계 신뢰도(건설사업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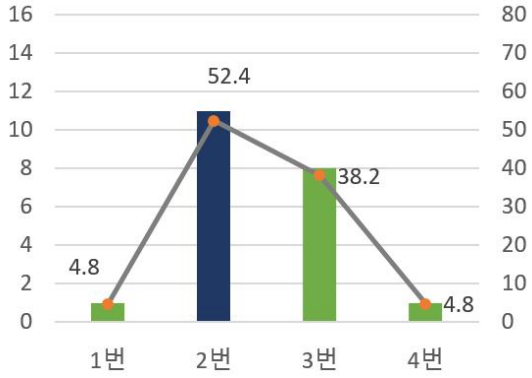
[질문29] 관리역량 평가 중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에 관한 제안서 작성 시 이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정도라 생각합니까?

① 아주 신뢰함
② 일부 신뢰함
③ 일부 불신함
④ 아주 불신함



[질문30] 기술제안서 중 사업관리 운영체계에 관한 제안서 작성 시 이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정도라 생각합니까?

① 아주 신뢰함
② 일부 신뢰함
③ 일부 불신함
④ 아주 불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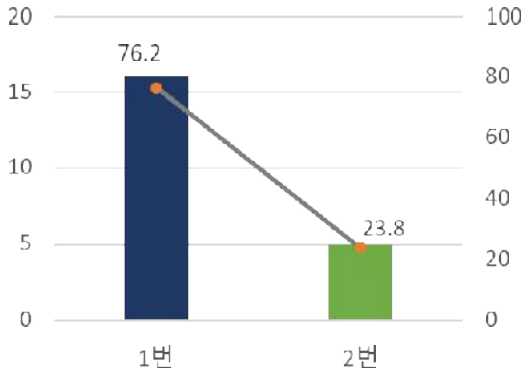


- 제안사의 품질보증체계 및 사업관리 운영체계 신뢰도 모두 일부 신뢰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조달청 평가기준 중 유사평가 항목의 채용(건설사업관리)

[질문31] 향후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심제의 정량평가항목 구성 시 조달청 설계 등(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유사평가 항목을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긍정적으로 생각함
② 부정적으로 생각함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유사평가항목의 채용의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2) 평가자 설문조사

○ 평가위원의 활동기간을 보면, 1~2년이며 조달청 외 평가 활동이 77.8%로 평가항목의 중요도에 따른 기준 개정에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평가자의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 수집을 위해 무작위로 평가자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기술자의 역량평가 중요도에 있어, 다양한 업무 경험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 자격증, 근무기간은 개인의 노력과 시간투자로 가능한 항목이나, 당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업무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업무 경험이 중요하다고 평가자의 경우 판단함

○ 따라서, 업무 경험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높게 배점하며, 전문가역량 평가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개인 인적사항 중심이 아닌 업무경험이 중심이 되도록 작성지침에 반영하였음

○ 관리 및 기술역량 중요도는 사업관리 운영체계, 과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게 나타났음. 기존의 평가 사례를 보면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신용도 등은 회사의 규모에 의해 결정된나 중소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 운영체계, 과업에 대한 전문성을 위한 차별화 된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 시 중요항목으로 선정하였음. 따라서, 이는 평가 배점에 고려되어야 하며, 제안서 작성 세부평가기준에 반영을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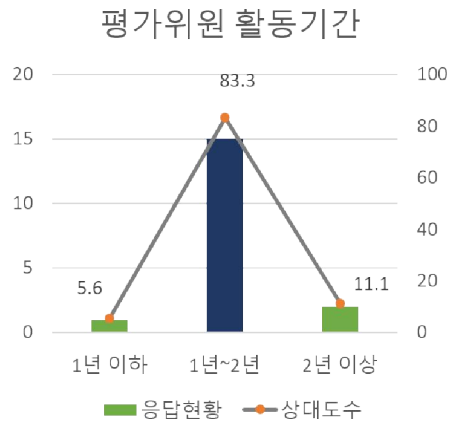
○ 질문방식에 있어서는 공통+개별질문을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용역업체가 작성한 제안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되지만, 공통 질문 적용 시 개별적인 질문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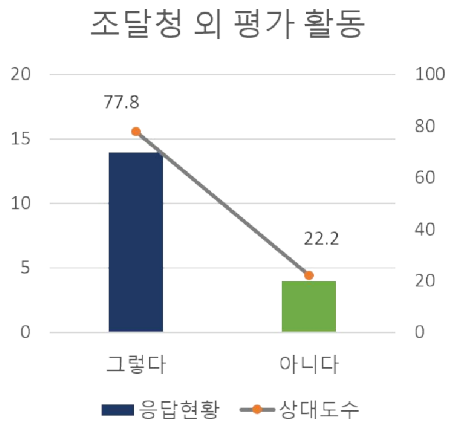
○ 그러나 용역업체의 경우 개별질문의 난이도에 따라 평가 점수가 달라지는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어 질문 방식 선정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됨

○ 현재 시행중인 조달청의 평가기준은 발표시간이 질의응답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기존과 다르게 참여업체들의 발표수준이 상향평준화 되어 변별력이 없어져, 질의응답의 비중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그러나 이는 언변이 좋은 기술자 위주로의 평가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기존의 조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에 대한 비율을 유지하되, 자기소개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평가 시에 반영하도록 함.

○ 평가자 설문 응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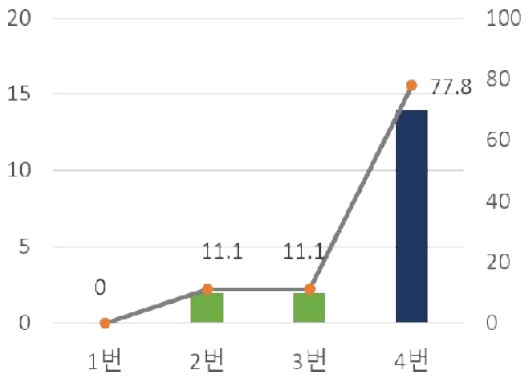
– 평가자 설문 응답자의 경우 평가위원 활동기간은 1~2년이 가장 높으며, 조달청 이외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평가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기술자 역량평가 중요도

[질문1] 참여기술인 평가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역량을 평가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학력 사항 ② 자격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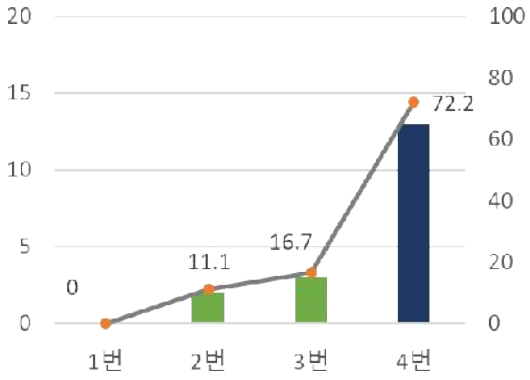
③ 근무 기간 ④ 다양한 업무 경험



[질문2] 참여기술인 평가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역량을 평가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학력 사항 ② 자격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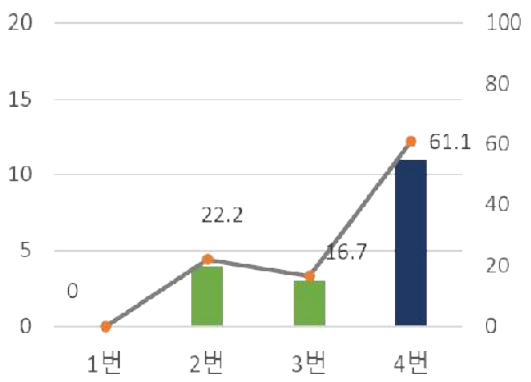
③ 근무 기간 ④ 다양한 업무 경험



[질문3] 참여기술인 평가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역량을 평가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학력 사항 ② 자격증

③ 근무 기간 ④ 다양한 업무 경험



– 기술인의 역량평가 중요도에 있어 평가자의 답변으로 다양한 업무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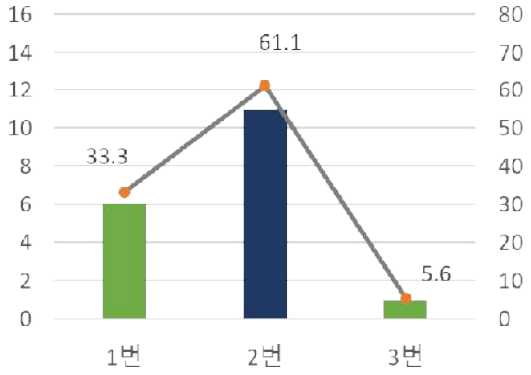
○ 관리 및 기술역량 중요도

[질문4] 관리역량 평가 중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② 사업관리 운영체계

③ 신용도(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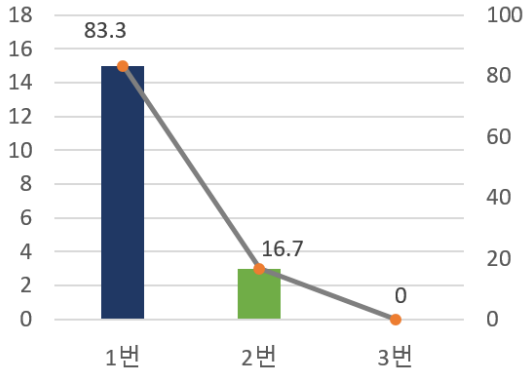


[질문5] 기술역량 평가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과업에 대한 전문성

②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③ 용역평가결과 심사



– 관리역량 평가항목의 경우 사업관리 운영체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역량 평가항목은 과업에 대한 전문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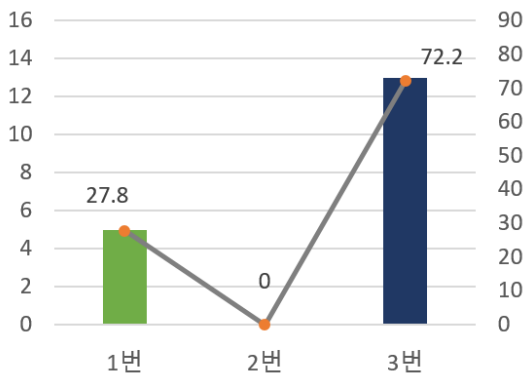
○ 질문 방식 및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의 적정 비율

[질문6] 용역사 평가 시 평가위원 질의응답에 있어 적정한 질문 선정 방식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① 공통질문

② 개별질문

③ 공통+개별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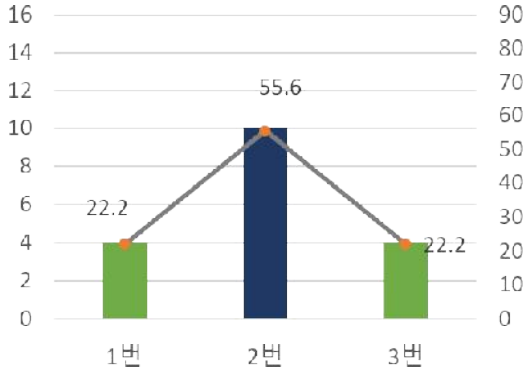


[질문7] 기술제안서 발표시간 중 발표시간과 질의응답의 시간 소요 비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발표시간 : 70%, 질의응답 : 30%

② 발표시간 : 50%, 질의응답 : 50%

③ 발표시간 : 30%, 질의응답 : 70%



- 질문 방식의 경우 공통 및 개별질문을 선호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의 적정 비율은 발표50% 질의응답5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 세부절차 규정 및 조달청 평가방법 마련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

표 3-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비교

평가항목		국토부기준지침		조달청 (SOQ)		조달청 (TP)	
대분류	중분류	평가방법	배점	평가방법	배점	평가방법	배점
기술 보유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점수 환산점수	정량평가	10점	정량평가	70점	정량평가	40점
사업수행 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정성평가	25점	신설항목		신설항목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정성평가		신설항목		신설항목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정성평가		신설항목		신설항목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정성평가	10점	신설항목		정성평가	5점
	직원 투입 계획	정량평가		신설항목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 역량	정량+정성 평가	55점	정량평가 부문 1단계 평가		정량평가 부문 1단계 평가	
사회적 책임	가점(인력고용)	정량평가	최대 +2	1단계 평가		1단계 평가	
	감점(공정거래)	정량평가	최대 -2	미적용		미적용	
평가 관련 신뢰도	감점(제안서 작성위반)	정량평가	최대 -10				
	감점(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대체평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정성평가	5점	정성평가	5점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 계획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정성평가	10점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정성평가	5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실시			정성평가	10점	정성평가	10점
	시공 전단계의 사업관리					정성평가	15점
	시공 이후단계의 사업관리					정성평가	20점
	기술활용					정성평가	5점
합 계			100점		100점		100점

○ 종심제 세부평가 기준은 「국토교통부 예규 제265호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의해 발주청은 세부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내용, 세부 평가배점 등을 적용하였음.

○ 평가형식에 대한 비율조정은 '건설기술용역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적용하였음.

○ 정량적 평가의 세부항목은 국토부 예규와 조달청 건설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와 유사항목을 비교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 정성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분석을 통해 반영하였으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조달청의견과 설문조사 내용을 고려하여 적용하였음.

표 3-2. 국토부 지침과 조달청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기준 비교

평가항목			국토부기준지침		조달청 (SOQ)		조달청 (TP)	
대분류		중분류	평가방법	배점	평가방법	배점	평가방법	배점
기술능력평가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정성평가	20점	신설항목		신설항목	
		사업관리 운영체계	정성평가		신설항목		신설항목	
		신용도(영업,벌점,재정건실도)	정량평가		정량평가	15점	정량평가	15점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정량+정성평가	50점	신설항목		신설항목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정량+정성평가		신설항목		신설항목	
		용역평가결과 심사	정량평가		신설항목		신설항목	
	유사용역수행실적	주관사의 유사 실적	정량+정성평가	30점	정량평가	10점	정량평가	10점
		공동참여사의 유사 실적						
계약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작성위반 등	정량평가	최대-5	신설항목		신설항목	
대체평가		참여기술인	2단계 기술제안서 전문가 역량 정량평가 적용		정량평가	60점	정량평가	6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범사업 과업에 대한 전문성 정량평가 적용		정량평가	10점	정량평가	10점
		교체빈도			정량평가	5점	정량평가	5점
		가점(신규고용)	2단계기술제안서 사회적 책임 인력고용 가점 적용		정량평가	0.4점	정량평가	0.4점
		가점(공사비절감기여 참여기술인)			정량평가	0.2점	정량평가	0.2점
		감점(부패행위관련자)			정량평가	-5점	정량평가	-5점
		감점 (기술인중복배치 통보의무 위반)			정량평가	-5점	정량평가	-5점
합 계				100점		100점		100점

※ **'정량+정성 평가' 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량평가 대 정성평가의 비중을 50:50으로 하되, 필요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중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 종류와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평가 또는 정성평가 중 하나만을 적용할 수 있다.**

표 3-3. 국토부 지침 및 조달청 건설사업관리 통합평가방식 비교

평가영역	평가항목		국토부	조달청	비고
	대분류	중분류		CM	
수행능력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2	0.5	정성
		사업관리 운영체계		1	정성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등)		0.5	정량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5	1	정량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3	정성
		용역평가결과 심사		1	정량
	유사용역 수행실적	주관사의 유사 실적	3	3	정량
		공동참여사의 유사 실적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25	10	정성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10	정성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5	정성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10	5	정성
		직원 투입 계획		5	정량/정성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 역량	55	20	정량
				35	정성
사회적 책임		인력고용 (가점)	최대 +2	+2	정량
		공정거래 (감점)	최대 −2	−2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제안서 작성위반	최대 −10	−10	정량
합계			100	100	

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

○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 지침에서는 대분류에 대한 배점은 있으나,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배점에 대한 구분이 없어 시범사업에서의 배점배분을 고려하였음

○ 타 기관의 경우 기술능력평가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도입하여 참여업체의 편의성을 주었으나 정성평가는 정량평가와 달리 용역업체의 정량화 된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평가요소에 대해 제안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종심제 세부평가요소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표 3-4. 건설사업관리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 (1단계)

평가역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5	정성평가
		사업관리 운영체계	10	정성평가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5	정량평가
	【소계】		【20점】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10	정량평가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30	정성평가
		용역평가결과 심사	10	정량평가
	【소계】		【5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주관사의 유사 실적	30	정량평가
		공동참여사의 유사 실적		
	【소계】		【30점】	
계약신뢰도	평가의 공정성 · 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작성위반 등		최대 -5	정량평가
[합계]			[100점]	

① 관리역량 평가기준

○ 한국수자원공사의 시범사업에서는 총 배점 30점을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10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체계 10점, 신용도 10점으로 동일한 비율로 고르게 배분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5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체계 10점, 신용도 10점으로 배분하였음. 하지만, 종심제 설문조사 결과 용역업체, 평가자 모두 사업관리 운영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해당 항목의 배점을 상향조정 하였음.

○ 또한, 종심제 시범사업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체계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나, 국토부 운영지침에 맞게 사업관리 운영체계로 규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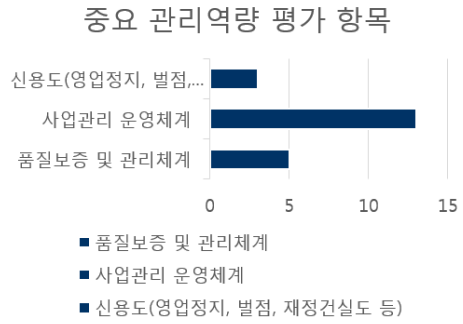
표 3-5. 한국수자원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관리역량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 점	비 고
관리역량 (30점)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10점	정성적 평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체계		10점	정성적 평가
	신용도 (10점)	신용평가등급	5점	정량적 평가
		부실벌점	5점	

표 3-6. 한국토지주택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관리역량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 점	비 고
관리역량 (30점)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5점	정성적 평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체계		10점	정성적 평가
	신용도 (10점)	입찰참가제한 및 부실벌점	7점	정량적 평가
		재정상태 견실도	3점	
	기술자 교체빈도		5점	정량적 평가

표 3-7. 중요 관리역량 평가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관리역량 평가 항목의 중요도에 있어 사업관리 운영체계가 60%이상으로 월등히 높게나왔으며,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와 신용도는 비슷한 수치로 나왔다.

표 3-8. 관리역량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평가
항목</th><th colspan="2">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평가방법 및 평가내용</th></tr>
<tr><td rowspan="4">관리
역량</td><td colspan="2">품질보증 및
관리체계</td><td>5
<0.5></td><td>-정성평가
·용역성과의 확보 및 향상 방안
·성공적 용역수행 보증방안</td></tr>
<tr><td colspan="2">사업관리
운영체계</td><td>10
<1.0></td><td>-정성평가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및 관리방안
·참여기술인 보유 현황 및 보유 참여기술인의 강점, 회사 지원시스템
·세부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 계획</td></tr>
<tr><td rowspan="3">신용
도</td><td>입찰
참가
제한
,
영업
정지</td><td rowspan="2">3.5
<0.35></td><td>-참여업체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td></tr>
<tr><td>벌점</td><td>-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table>
<tr><th>누계
평균
벌점</th><td>1점
이상
2점
미만</td><td>2점
이상
5점
미만</td><td>5점
이상
10점
미만</td><td>10점
이상
15점
미만</td><td>15점
이상
20점
미만</td><td>20점
이상</td></tr>
<tr><th>점수
(감점)</th><td>0.1</td><td>0.25</td><td>0.5</td><td>1</td><td>1.5</td><td>2.5</td></tr>
</table></td></tr>
<tr><td>재정
상태
건실
도</td><td>1.5
<0.15></td><td>-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table>
<tr><th>회사채</th><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
이하</td><td>미제출</td></tr>
<tr><th>기업어음</th><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
<tr><th>기업신용</th><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
<tr><th>점수</th><td>1.5</td><td>1.4</td><td>1.05</td><td>0</td></tr>
</table></td></tr>
</table>

② 기술역량 평가기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시범사업에서 기술역량에 대해 총 배점 50점을 과업에 대한 전문성 10점, 과업 내용에 대한 경험 35점, 용역평가결과 5점을 평가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기술역량에 대해 총 배점 40점을 기술자 교체빈도 10점, 과업 내용에 대한 경험 25점, 용역평가결과 심사에 5점을 평가하였음.

○ 과업 내용에 대한 경험, 과업에 대한 전문성, 용역평가결과는 발주자와의 협력 및 상호간의 신뢰성 업무수행과정의 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용역평가심사의 배점을 상향조정 하였음.

○ 과업에 대한 전문성 평가의 정량평가는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보유기술(특허, 실용실안, 신기술, S/W 등)의 개발 및 활용실적에 대한 새로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참여업체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조달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인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을 적용하였음.

○ 용역평가결과에 대한 평가는 신규항목으로써 타기관 시범사업에 적용된 기준 중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음. 이는 신규항목 적용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 용역금액 가중치 적용방법을 반영하였음.

○ 다만, 용역평가에 있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1건 이상의 용역평가결과 실적이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여 실적이 없는 업체를 고려하여 실적이 없는 경우 중간점수 8점을 반영하였음.

표 3-9. 한국토지주택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기술역량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 점	비 고
기술역량 (50점)	과업에 대한 전문성 (10점)	기술개발 활용실적	5점	정량 평가
		기술개발 투자실적	5점	
	과업 내용에 대한경험 (35점)	대표실적의 문제 해결사례	15점	정성 평가
		당해용역의 핵심 고려사항, 문제 해결방안	20점	
	용역평가결과 심사		5점	정량 평가

표 3-10. 한국수자원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기술역량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 점	비 고
기술역량 (40점)	기술자 교체빈도		10점	정량 평가
	과업 내용에 대한 경험 (25점)	대표실적의 문제 해결사례	10점	정성 평가
		당해용역의 핵심 고려사항, 문제 해결방안	15점	
	용역평가결과 심사		5점	정량 평가

표 3-11. 기술역량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기술 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개발·활용 실적	3 <0.3>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 기준점수**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1.0점/건당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활용실적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table>
<tr><th>평가
항목</th><th colspan="2">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평가방법 및 평가내용</th></tr>
<tr><td rowspan="3"></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5">가 중 치</th></tr>
<tr><th>1.0</th><th>0.9</th><th>0.8</th><th>0.7</th><th>0.6</th></tr>
<tr><td>실적건수
(건)</td><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r>
<tr><td>실적금액
(억원)</td><td>20이상</td><td>20미만
18이상</td><td>18미만
16이상</td><td>16미만
14이상</td><td>14미만
12이상</td></tr>
</table>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table>
<tr><th>구 분</th><td>5년미만</td><td>5년이상
10년미만</td><td>10년이상
20년미만</td></tr>
<tr><th>인정률</th><td>100%</td><td>80%</td><td>60%</td></tr>
</table>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td></tr>
<tr><td>투자
실적</td><td>7
<0.7></td><td>-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table>
<tr><th>구분</th><td>1.50%
이상</td><td>1.50%
미만
1.25%
이상</td><td>1.25%
미만
1.00%
이상</td><td>1.00%
미만
0.75%
이상</td><td>0.75%
미만
0.50%
이상</td><td>0.5%
미만</td></tr>
<tr><th>점수</th><td>7</td><td>6.8</td><td>6.6</td><td>6.4</td><td>6.2</td><td>6.0</td></tr>
</table></td></tr>
<tr><td colspan="2">과업내용에
대한 경험</td><td>30
<3.0></td><td>-정성평가
·과업과 관련된 대표실적의 문제 해결사례
·과업과 유사한 실적경험에 근거한 해당용역의 핵심 고려사항, 문제 해결방안</td></tr>
<tr><td colspan="2">용역평가결과
심사</td><td>10
<1.0></td><td>-「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용역평가결과로 평가
· 용역평가점수=∑(용역실적금액×해당용역 평가점수)/
∑용역실적금액
<table>
<tr><th>구분</th><td>89점
이상</td><td>89점
미만
87점
이상</td><td>87점
미만
85점
이상</td><td>85점
미만
83점
이상</td><td>83
점
미만</td></tr>
<tr><th>점수</th><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
</table></td></tr>
</table>

③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기준

○ 국토부 지침의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이란 기술제안에 앞서 당해 용역과업의 특성과 '과업내용서(TOR)' 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업 성공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 분석된 사안들에 대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험을 말하며, 해당 업체의 TOR 분석과 핵심 이슈 도출이 적합한지, 그와 관련된 경험과 문제해결 능력이 충분하며 유효한지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국토부 지침에서는 정량+정성평가로 되어 있으나, 기술역량의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항목(정성평가)의 성격이 매우 유사하여, 정량적 평가만 적용하였으며, 배점은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표 3-12. 국토부 입찰참가업체의 유사실적 평가

평가항목		배점		비고
대분류	중분류	2단계 평가방식	통합 평가방식	
유사 실적	주관사의 유사 실적	30	3	정량+정성 평가
	공동참여사의 유사 실적			정량+정성 평가

표 3-13. 유사용역실적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평가방법 및 평가내용</th></tr>
<tr><td>유사 용역 수행 실적</td><td>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 실적</td><td>30
<3.0></td><td>-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으로 평가
<table>
<tr><th>해당 공사규모</th><th colspan="5">건축공사 관련 건설기술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th></tr>
<tr><td>1,000억원 이상</td><td>250 이상</td><td>250미만 210이상</td><td>210미만 170이상</td><td>170미만 130이상</td><td>130 미만 90이상</td></tr>
<tr><td>1,000억원 미만 500억원이상</td><td>190 이상</td><td>190미만 160이상</td><td>160미만 130이상</td><td>130미만 100이상</td><td>100 미만 70이상</td></tr>
<tr><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td>130 이상</td><td>130미만 110이상</td><td>110미만 90이상</td><td>90미만 70이상</td><td>70미만 50이상</td></tr>
<tr><td>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td><td>80이상</td><td>80미만 65이상</td><td>65미만 50이상</td><td>50미만 35이상</td><td>35미만 20이상</td></tr>
<tr><td>100억원미만</td><td>30이상</td><td>30미만 20이상</td><td>20미만 10이상</td><td>-</td><td>-</td></tr>
<tr><td>점수</td><td>3</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
</td></tr>
</table>

나) 건설사업관리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2단계)

○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서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은 기존 조달청 평가기준에 없는 요소로 조달참여업체가 제안서 작성을 위한 세부기준이 요구된다. 그리고, 세부평가요소를 반영한 평가자 양식의 신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또한, 종심제에서 핵심항목인 전문가 역량에 대한 세부평가기준과 방법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함

○ 특정 발주청의 경우 6명의 면접 대상자가 1분 또는 2분에 면접을 실시하는데 심층면접을 하기에 부족한 시간으로써 상대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용역을 총괄하는 사업책임기술자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공종 1인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면접 대상자는 2인으로 한정되지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서면에 의해 전문가 역량 평가가 되도록 함

표 3-14. 건설사업관리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2단계)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형식
수행능력	기술보유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점수	10	정량 평가
	【소계】		【10점】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	정성 평가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10	정성 평가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5	정성 평가
	【소계】		【25점】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5	정성 평가
		직원 투입 계획	5	정성 평가
	【소계】		【10점】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20 35	정량 평가 정성 평가
	【소계】		【55점】	
사회적 책임		인력고용(가점)	최대 +2	정량 평가
		공정거래 (감점)	최대 −2	정량 평가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 · 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제안서 작성위반 등	최대 −10	
[합계]			[100점]	

① 사업수행방법 평가기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수행방법에 대한 배점을 총 배점 250점에서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0점, 용역수행조직의 운영 방법 100점,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50점을 적용하였음. 시범사업 점수 배분을 고려하여, 사업수행방법 배점 25점 중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점, 용역수행조직의 운영 방법 10점,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5점을 적용하였음

○ 과업 수행에 있어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용역 수행 조직 운영 방법은 상당히 중요한 항목으로 각각 10점을 배점하였고,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은 유사실적 경험에 의한 제시가 많으므로, 다른 평가항목과의 중복되는 성격을 고려하여 5점을 배점하였음

○ 또한,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의 효율적 평가를 위해, 공사비, 공사기간, 친환경, 클레임을 중요항목으로 지정하였으며, 유사실적 유효기간은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으로 지정하였음.

○ 시범사업에서 적용된 세부 평가 항목 명칭에 있어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의 품질과 TOR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지침을 반영하여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의 명칭을 적용하였음.

표 3-15. 한국토지주택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기술제안서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비고
사업수행을 위한 접근법, 방법론 (250점)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의 품질	100점	정성적 평가
	용역수행조직의 운영 방법	100점	
	TOR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50점	

표 3-16. 사업수행방법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사업수행 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	-정성평가 ·해당용역 사업 특성 등의 이해 ·해당용역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효율적 건설사업관리 추진 방안 ·기본 및 실시설계 검토 내용 ·해당용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대효과 검토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10	-정성평가 ·해당용역을 수행하는 조직 운영방안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5	-정성평가 ·해당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내용서 개선사항

표 3-17.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예시

구분	과업내용서	개선사항
용역금액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대가 조정은 실비정액가산방식 기준에 따라 산정	년도별(상, 하반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변동시 물가변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줄 것을 제안
용역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730일간,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발주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해야 함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의 경우 정부정책 및 주5일 근무제 보편화에 편승하여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과업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
제공시설	계약상대자는 성과물 제작을 위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며.....(중략)	합동사무실 위치선정시 투입인력의 의견수렴과 과정을 거쳐 합동사무실 위치를 선정하여 줄 것을 제안

② 작업 및 직원투입계획 평가기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시범사업에서 작업 및 직원투입 계획 등에 대해 총 배점 150점 중 작업계획 75점, 직원투입계획 75점을 배점하였다. 시범사업을 고려하여 작업 및 직원 투입계획에서 배점 10점 중 작업계획 5점, 직원투입 계획 5점을 적용하였음

○ 작업계획과 직원 투입계획은 업무수행계획, 인력투입계획을 평가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상호 비슷하여 동일한 비율로 배점을 적용하였음.

표 3-18. 한국토지주택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기술제안서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비고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등 (150점)	작업계획	75점	정성적 평가
	직원투입계획	75점	

표 3-19. 작업 및 직원투입계획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5	-정성평가 ·해당용역 수행을 위한 업무의 구성, 각 활동 및 업무의 내용과 기간 ·용역기간 변경 사유 발생시 작업계획 조정방안
	직원 투입 계획	5	-정성평가 ·해당용역 수행 인력편성(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등) ·조직 구성원의 장점과 활용방안

③ 전문가역량평가 평가기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시범사업 전문가 평가 550점 배점에서 정량적 평가 200점, 정성적평가 350점 배점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 시범사업에서 전문가 평가 550점 배점에서 정량적 평가 200점, 정성적평가 350점 배점을 적용하였음.

○ 종심제 도입취지의 핵심사항인 전문가의 역량 평가는 투입 핵심전문가의 경험과 역량 수준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핵심전문가에 대한 정성평가는 조달청에서 정한 양식의 이력서에 근거하며 과거 참여했던 사업과 당해 용업과업과의 유사성, 경험과 문제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예시로, 비상주인력으로서 핵심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 예는 아래와 같음.

- 공정관리 전문가
- 사업비관리 전문가
- LCC/VE 전문가
- BIM 전문가
- 설계관리 전문가
- 계약 및 클레임관리 전문가
- 구조 · 기계 · 전기 등 엔지니어링 전문가
- 기타 사업의 특수성으로 요구되는 타 관련분야 전문가

○ 시범사업에서는 전문가 평가의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국토부 지침을 반영하여 핵심전문가 명칭을 적용하였음

○ 조달청이 기존에 운영해오던 건설사업관리 기술심사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에 대해서 발표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나, 분야별 기술자 중 핵심공종에 대해서 1인을 추가적으로 인터뷰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나 핵심공종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처가 정할 수 있음.

○ 발표 및 면접평가 시간에 대한 선정에 있어 시범사업을 분석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의 시범사업은 사업책임기술자 발표 5분, 질의응답시간은 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가 각각 1분 이내로 적용되었는데, 답변시간이 비교적 부족하여 기술자에 대해 심층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조달청이 기존에 운영해오던 건설사업관리 기술심사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과 분야별 기술자 중 핵심공종에 대해서 1인을 추가적으로 인터뷰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며 핵심공종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처가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함

○ 발표시간과 질의응답시간은 기존에 조달청 지침을 반영한 발표 7분, 질의응답 8분 이내로 적용하여 심층면접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확보하였음.

표 3-20. 한국토지주택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기술제안서, 전문가 평가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비고
전문가 평가 (550점)	핵심전문가 (Key Expert)	유사용역 수행실적	200점	정량적 평가
		업무수행의 적합성	200점	정성적 평가
		업무수행의 창의성	150점	

표 3-21. 한국수자원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기술제안서, 전문가 평가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비고
전문가 평가 (550점)	핵심전문가 (Key Expert)	유사실적 양적 평가	200점	정량적 평가
		유사실적 질적 평가	200점	정성적 평가
		업무수행의 창의성	150점	

표 3-22. 한국토지주택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발표 및 면접평가 기준

(나) 면 접 (질의응답)
- 답변시간 : 1분 이내 (참여업체수 및 심사여건에 따라 심사부서장이 조정)
- 참 석 자 : 책임/분야별(건·토·기·전 각 1인)/청년(중급 또는 초급)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방 법 : 각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표 3-23. 건설관리용역 전문가 역량 세부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참여 기술인 수행 능력	20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등을 평가
		핵심 기술인 업무 수행의 적합성	15	-정성평가 ·유사용역 수행 경험의 성과 및 해당용역과 유사성
		핵심 기술인 업무 수행의 창의성	10	-정성평가 ·전문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시 문제해결 사례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 사례 ·해당용역 수행시 최신 설계기법 및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방안
		인터뷰	10	-정성평가 ·용역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리더십, 능력 등

표 3-24.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평가 세부 기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배점</th><th>평가방법</th></tr>
<tr><td rowspan="3">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td><td>해당분야경력</td><td>5</td><td>
<table>
<tr><th>해당공사규모</th><th colspan="5">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단위 : 년)</th></tr>
<tr><td>1,000억원이상</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
<tr><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td>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td></tr>
<tr><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td>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td></tr>
<tr><td>300억원미만</td><td>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td></tr>
<tr><td>점수</td><td>5</td><td>4.5</td><td>4</td><td>3.5</td><td>3</td></tr>
</table>
</td></tr>
<tr><td>직무분야실적</td><td>3</td><td>
<table>
<tr><th>해당공사규모</th><th colspan="5">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단위 : 년)</th></tr>
<tr><td>300억원이상</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
<tr><td>300억원미만</td><td>12이상</td><td>12미만 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td></tr>
<tr><td>점수</td><td>3</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
</td></tr>
<tr><td>교육훈련 및 기술자격</td><td>0.5</td><td>-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3점), 1주이상 2주미만(0.2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3점), 기사(0.2점), 산업기사(0.1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td></tr>
<tr><td rowspan="2">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td><td>해당분야경력</td><td>5</td><td>
<table>
<tr><th>해당공사규모</th><th colspan="5">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단위 : 월)</th></tr>
<tr><td>300억원 이상</td><td>48이상</td><td>48미만 42이상</td><td>42미만 36이상</td><td>36미만 30이상</td><td>30미만</td></tr>
<tr><td>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td><td>36이상</td><td>36미만 28이상</td><td>28미만 20이상</td><td>20미만 12이상</td><td>12미만</td></tr>
<tr><td>100억원 미만</td><td>24이상</td><td>24미만 18이상</td><td>18미만 12이상</td><td>12미만 6이상</td><td>6미만</td></tr>
<tr><td>점수</td><td>5</td><td>4.5</td><td>4</td><td>3.5</td><td>3</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배점</th><th>평가방법</th></tr>
<tr><td rowspan="2"></td><td>직무
분야
실적</td><td>3</td><td>
<table>
<tr><th>해당공사규모</th><th colspan="5">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단위 : 년)</th></tr>
<tr><td>300억원 이상</td><td>12이상</td><td>12미만
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td></tr>
<tr><td>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td><td>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td></tr>
<tr><td>100억원 미만</td><td>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
2이상</td><td>2미만</td></tr>
<tr><td>점수</td><td>3</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
</td></tr>
<tr><td>교육
훈련</td><td>0.5</td><td>-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td></tr>
<tr><td rowspan="3">기술
지원
기술
인</td><td>해당
분야
경력</td><td>1.5</td><td>
<table>
<tr><th>해당공사규모</th><th colspan="5">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단위 : 년)</th></tr>
<tr><td>1,000억원이상</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
<tr><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td>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td></tr>
<tr><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td>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td></tr>
<tr><td>300억원미만</td><td>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td></tr>
<tr><td>점수</td><td>1.5</td><td>1.2</td><td>0.9</td><td>0.6</td><td>0.3</td></tr>
</table>
</td></tr>
<tr><td>직무
분야
실적</td><td>1</td><td>
<table>
<tr><th>직무
분야</th><th colspan="5">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년)</th></tr>
<tr><td>구분</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
<tr><td>점수</td><td>1</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td></tr>
<tr><td>교육
훈련
및
기술
자격</td><td>0.5</td><td>-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명에 한정하여 적용</td></tr>
</table>

④ 사회적 책임

○ 한국토지주택공사 시범사업에서 (가점)인력고용을 최대 +1.6점, (감점) 공정거래 최대 -2점을 적용하였음.

○ 건설시장에서의 꾸준한 신규 고용창출을 고려하여, 인력고용의 가점을 국토부 지침의 최대치인 +2점을 적용하였음.

표 3-25. 한국토지주택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table>
<tr><th colspan="2">(가점)인력고용 계</th><th>+1.6</th></tr>
<tr><td>인력
고용</td><td>□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최대 1.6점)
· 1% 이상 : 1.2점 · 2% 이상 : 1.4점 · 3% 이상 : 1.6점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td><td>+1.6</td></tr>
<tr><th colspan="2">(감점)공정거래 계</th><th>-2.0</th></tr>
<tr><td>공정
거래</td><td>□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라 아래 해당점수 감점 (최대 2점)
<table>
<tr><th>행위 유형</th><th>조치정도</th></tr>
<tr><td>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td><td>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td></tr>
<tr><td>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td><td>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td></tr>
</table></td><td>-2.0</td></tr>
</table>

표 3-25. 사회적 책임 세부평가기준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평가방법</th></tr>
<tr><td rowspan="2">사회적
책임</td><td>인력고용</td><td>+2</td><td>-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에 따른 가점
<table>
<tr><th>비율(%)</th><td>1%이상
2%미만</td><td>2%이상
3%미만</td><td>3%이상</td></tr>
<tr><th>가산점수</th><td>1.0</td><td>1.5</td><td>2.0</td></tr>
</table></td></tr>
<tr><td>공정거래</td><td>-2</td><td>-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른 감점
<table>
<tr><th>행위 유형</th><th>조치정도</th></tr>
<tr><td>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td><td>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td></tr>
<tr><td>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td><td>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td></tr>
</table></td></tr>
</table>

2) 설계 등 용역업자 종합심사낙찰제 세부평가기준

가) 종심제 세부평가 기준 수립 핵심내용

○ 종심제 세부평가 기준은 「국토교통부 예규 제265호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에 의해 발주청은 세부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내용, 세부 평가배점 등을 적용하였음.

○ 평가형식에 대한 비율조정은 '건설기술용역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 을 참고하여 적용하였음.

표 3-26. 종합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평가형식 예시 (통합 평가방식 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수행능력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0.5	정성 평가
		사업관리 운영체계	1	정성 평가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0.5	정량 평가
	【소계】		【2점】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1	정량 평가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3	정성 평가
		용역평가결과 심사	1	정량 평가
	【소계】		【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 실적	3	정량 평가
	【소계】		【3점】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	정성 평가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10	정성 평가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5	정성 평가
	【소계】		【25점】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5	정성 평가
		직원 투입 계획	5	정량 평가
	【소계】		【10점】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10	정량 평가
		참여기술인 역량	45	정성 평가
	【소계】		【55점】	
사회적 책임		인력고용(가점)	최대 +2	정량 평가
		공정거래(감점)	최대 −2	정량 평가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 · 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제안서 작성위반 등	최대 −10	정량 평가
[합계]			[100점]	

※ '정량+정성 평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량평가 대 정성평가의 비중을 50:50으로 하되, 필요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중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 종류와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평가 또는 정성평가 중 하나만을 적용할 수 있다.

○ 정량적 평가항목의 세부평항목은 국토부 예규와 조달청 건설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와 유사항목을 비교·검토하여 반영하였음.

○ 정성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분석을 통해 반영하였으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내용을 고려하여 적용하였음.

표 3-27. 국토부 지침과 조달청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기준 비교

평가항목			국토부기준지침		조달청 (SOQ)		조달청 (TP)	
대분류		중분류	평가방법	배점	평가방법	배점	평가방법	배점
기술능력평가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정성평가	20점	신설항목		신설항목	
		사업관리 운영체계	정성평가		신설항목		신설항목	
		신용도(영업,벌점,재정건실도)	정량평가		정량평가	10	정량평가	10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정량+정성평가	50점	신설항목		신설항목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정량+정성평가		신설항목		신설항목	
		용역평가결과 심사	정량평가		신설항목		신설항목	
	유사용역수행실적	주관사의 유사 실적	정량+정성평가	30점	정량평가	15	정량평가	15
		공동참여사의 유사 실적						
계약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작성위반 등	정량평가	최대-5	신설항목		신설항목	
대체평가		참여기술인	2단계 기술제안서 전문가 역량 정량평가 적용		정량평가	50	정량평가	5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범사업 과업에 대한 전문성 정량평가 적용		정량평가	15	정량평가	15
		업무중첩도			정량평가	10	정량평가	10
		가점(신규고용)	2단계기술제안서 사회적 책임 인력고용 가점 적용		정량평가	0.4	정량평가	0.4
합 계				100점		100점		100점

표 3-28.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비교

평가항목		국토부기준지침		조달청 (SOQ)		조달청 (TP)	
대분류	중분류	평가방법	배점	평가방법	배점	평가방법	배점
기술보유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점수 환산점수	정량평가	10점	정량평가	70	정량평가	30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정성평가	25점	신설항목		신설항목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정성평가		신설항목		신설항목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정성평가		신설항목		신설항목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정성평가	10점	신설항목		신설항목	
	직원 투입 계획	정량평가		신설항목		신설항목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 역량	정량+정성 평가	55점	정량평가 부문 1단계 평가		정량평가 부문 1단계 평가	
사회적 책임	가점(인력고용)	정량평가	최대 +2	1단계 평가		1단계 평가	
	감점(공정거래)	정량평가	최대 -2	미적용		미적용	
평가관련 신뢰도	감점(제안서 작성위반)	정량평가	최대 -10				
	감점(평가의 공정성 · 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대체평가	수행계획			정성평가	15	정성평가	20
	수행방법			정성평가	15	정성평가	35
	기술향상					정성평가	15
합 계			100점		100점		100점

나) 2단계 평가방식에 의한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

표 3-29. 설계용역 기술이행능력 평가서(2단계평가방식)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형식
기술능력 평가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5	정성 평가
		사업관리 운영체계	10	정성 평가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5	정량 평가
	【소계】		【20점】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10	정량평가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30	정성평가
		용역평가결과 심사	10	정량평가
	【소계】		【5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주관사의 유사 실적	30	정량평가
		공동참여사의 유사 실적		
	【소계】		【30점】	
[합계]			[100점]	

① 관리역량 평가기준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시범사업에서는 총 배점 20점을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5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체계 5점, 신용도 10점 배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5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체계 5점, 신용도 10점으로 배분하였음.

○ 하지만, 종심제 설문조사 결과 용역업체, 평가자 모두 사업관리 운영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해당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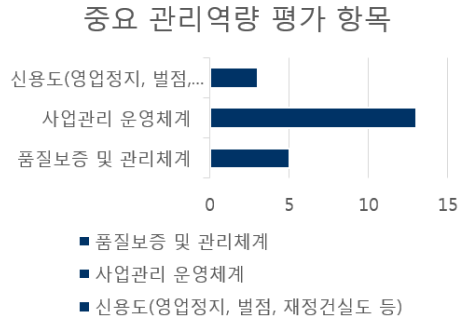
표 3-30. 한국철도시설공단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관리역량 배점표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관리역량 (20점)	품질관리 및 보증		5점	정성적 평가
	과업수행 관리체계		5점	정성적 평가
	신용도	신용등급평가	5점	정량적 평가
		부실벌점	5점	정량적 평가

표 3-31. 한국도로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관리역량 배점표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관리역량 (20점)	품질관리 및 보증	5점	정성적 평가
	과업수행 관리체계	5점	정성적 평가
	신용도	10점	정량적 평가

표 3-32. 중요 관리역량 평가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관리역량 평가 항목의 중요도에 있어 사업관리 운영체계가 60%이상으로 월등히 높게나왔으며,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와 신용도는 비슷한 수치로 나왔다.

표 3-33. 관리역량 평가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table>
<tr><th>평가
항목</th><th colspan="2">세부평가
항목</th><th>배점</th><th>평가방법</th></tr>
<tr><td rowspan="4">관리역량</td><td colspan="2">품질보증
및
관리체계</td><td>5
<0.5></td><td>-정성평가
·용역성과의 확보 및 향상 방안
·유고시 성공적 용역성과 납품 보증방안
·보유중인 품질관련 방침, 절차, 방법 등 품질보증시스템</td></tr>
<tr><td colspan="2">사업관리
운영체계</td><td>10
<1.0></td><td>-정성평가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및 관리방안
·참여기술인 보유 현황 및 보유 참여기술인의 강점, 회사 지원시스템</td></tr>
<tr><td rowspan="3">신용도</td><td>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td><td rowspan="2">3.5
<0.35></td><td>-참여업체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td></tr>
<tr><td>벌점</td><td>-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table>
<tr><th>누계평균
벌점</th><th>1점
이상
2점
미만</th><th>2점
이상
5점
미만</th><th>5점
이상
10점
미만</th><th>10점
이상
15점
미만</th><th>15점
이상
20점
미만</th><th>20점
이상</th></tr>
<tr><td>점수
(감점)</td><td>0.1</td><td>0.3</td><td>0.5</td><td>1</td><td>1.5</td><td>2.5</td></tr>
</table></td></tr>
<tr><td>재정상태건실도</td><td>1.5
<0.15></td><td>-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table>
<tr><th>회사채</th><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
이하</td><td>미제출</td></tr>
<tr><th>기업어음</th><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
<tr><th>기업신용</th><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
<tr><th>점수</th><td>1.5</td><td>1.4</td><td>1.1</td><td>0</td></tr>
</table></td></tr>
</table>

※ < >는 통합평가방식 용역에 적용하는 배점으로, 우선 평가방법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후 10%로 환산(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반영

② 기술역량 평가기준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범사업에서 기술역량에 대해 총 배점 40점을 과업에 대한 전문성 10점,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20점, 용역평가결과 10점을 평가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기술역량에 대해 총 배점 40점을 과업에 대한 전문성 10점, 과업내용에 대한경험 20점, 용역평가결과 심사에 10점을 평가하였음.

○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과업에 대한 전문성, 용역평가결과는 발주자와의 협력 및 상호간의 신뢰성 업무수행과정의 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용역평가심사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였음.

○ 과업에 대한 전문성 평가의 정량평가는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보유기술(특허, 실용실안, 신기술, S/W 등)의 개발 및 활용실적에 대한 새로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참여업체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조달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인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을 적용하였음.

○ 용역평가결과에 대한 평가는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 용역금액 가중치 적용방법을 반영하였음.

○ 용역평가결과에 대한 평가는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 용역금액 가중치 적용방법을 반영하였음. 다만, 용역평가에 있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1건 이상의 용역평가결과 실적이 있어야 평가가 가능함으로 실적이 없는 업체를 고려하여 실적이 없는 경우 중간점수 8점을 반영하였음.

표 3-34. 한국철도시설공단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기술역량 배점표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기술역량 (40점)	과업에 대한 전문성	10점	정성적 평가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20점	정성적 평가
	용역평가결과 심사	10점	정량적 평가

표 3-35. 한국도로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기술역량 배점표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기술역량 (40점)	과업에 대한 전문성	10점	정성적 평가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20점	정성적 평가
	용역평가결과 심사	10점	정량적 평가

표 3-36. 기술역량 평가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table>
<tr><th>평가
항목</th><th colspan="2">세부평가
항목</th><th>배점</th><th>평가방법</th></tr>
<tr><td rowspan="4">기술역량</td><td rowspan="3">과업에대한전문성</td><td>개발실적</td><td>1
<0.1></td><td>-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1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table>
<tr><th>경과기간</th><th>5년 미만</th><th>5년 이상
10년 미만</th><th>10년 이상
20년 미만</th></tr>
<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
<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
</table>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td></tr>
<tr><td>활용실적</td><td>2
<0.2></td><td>-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건설신기술 : 1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가중치</th></tr>
<tr><th>1.0</th><th>0.9</th><th>0.8</th><th>0.7</th><th>0.6</th></tr>
<tr><th>활용건수
(건)</th><td>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
1 이상</td></tr>
<tr><th>활용금액
(억원)</th><td>20
이상</td><td>20 미만
18 이상</td><td>18 미만
16 이상</td><td>16 미만
14 이상</td><td>14 미만
12 이상</td></tr>
</table>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td></tr>
<tr><td>투자실적</td><td>7
<0.7></td><td>-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로 평가
<table>
<tr><th>구분</th><td>1.50%
이상</td><td>1.50%
미만
1.25%
이상</td><td>1.25%
미만
1.00%
이상</td><td>1.00%
미만
0.75%
이상</td><td>0.75%
미만
0.50%
이상</td><td>0.5%
미만</td></tr>
<tr><th>점수</th><td>7</td><td>6.8</td><td>6.6</td><td>6.4</td><td>6.2</td><td>6</td></tr>
</table></td></tr>
<tr><td colspan="2">과업내용에 대한 경험</td><td>30
<3.0></td><td>-정성평가
·해당용역과 유사한 대표실적의 문제 해결사례
·해당용역과 유사한 실적경험에 근거한 해당용역의 핵심 고려사항, 문제 해결방안</td></tr>
<tr><td colspan="2">용역평가결과심사</td><td>10
<1.0></td><td>-「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용역평가결과로 평가
· 용역평가점수=∑(용역실적금액×해당용역 평가점수)/∑용역실적금액
<table>
<tr><th>구분</th><td>89점
이상</td><td>89점 미만
87점 이상</td><td>87점 미만
85점 이상</td><td>85점 미만
83점 이상</td><td>83점
미만</td></tr>
<tr><th>점수</th><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
</table></td></tr>
</table>

③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기준

○ 국토부 지침의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이란 기술제안에 앞서 당해 용역과업의 특성과 ‘과업내용서(TOR)’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업 성공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 분석된 사안들에 대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험을 말하며, 해당 업체의 TOR 분석과 핵심 이슈 도출이 적합한지, 그와 관련된 경험과 문제해결 능력이 충분하며 유효한지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국토부 지침에서는 정량+정성평가로 되어 있으나, 기술역량의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항목(정성평가)의 성격이 매우 유사하여, 정량적 평가만 적용하였으며, 배점은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표 3-37. 국토부 입찰참가업체의 유사실적 평가

평가항목		배점		비고
대분류	중분류	2단계 평가방식	통합 평가방식	
유사 실적	주관사의 유사 실적	30	3	정량+정성 평가
	공동참여사의 유사 실적			정량+정성 평가

표 3-38.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평가방법</th></tr>
<tr><td>유사용역 수행실적</td><td>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실적</td><td>30
<3.0></td><td>-최근 5년간 참여업체의 설계실적규모의 해당용역 발주규모에 대한 비율로 평가(규모는 부가세 포함 금액)
<table>
<tr><th>등급</th><th>수</th><th>우</th><th>미</th><th>양</th><th>가</th><th>-</th></tr>
<tr><th>기준비율</th><td>500% 이상</td><td>400% 이상</td><td>300% 이상</td><td>200% 이상</td><td>30% 이상</td><td>30% 미만</td></tr>
<tr><th>점수</th><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d>0</td></tr>
</table></td></tr>
</table>

다)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표 3-39. 설계 등 용역업자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형식
수행능력	기술보유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점수	10	정량 평가
	【소계】		**【10점】**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	정성 평가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10	정성 평가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5	정성 평가
	【소계】		**【25점】**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5	정성 평가
		직원 투입 계획	5	정량 평가
	【소계】		**【10점】**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10	정량 평가
			45	정성 평가
	【소계】		**【55점】**	
사회적 책임		인력고용(가점)	최대 +2	정량 평가
		공정거래 (감점)	최대 -2	정량 평가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제안서 작성위반 등	최대 -10	
[합계]			**[100점]**	

① 사업수행방법 평가기준

○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수행방법에 대한 배점을 총 배점 250점에서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0점, 용역수행조직의 운영 방법 100점,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50점을 적용하였다. 시범사업 점수 배분을 고려하여, 사업수행방법 배점 25점 중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점, 용역수행조직의 운영 방법 10점,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5점을 적용하였음.

○ 과업 수행에 있어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용역 수행 조직 운영 방법은 상당히 중요한 항목으로 각각 10점을 배점하였고,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은 유사실적 경험에 의한 제시가 많으므로, 다른 평가항목과의 중복되는 성격을 고려하여 5점을 배점하였음.

○ 또한,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의 효율적 평가를 위해, 공사비, 공사기간, 친환경, 클레임을 중요항목으로 지정하였으며, 유사실적 유효기간은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으로 지정하였음.

○ 시범사업에서 적용된 세부 평가 항목 명칭에 있어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의 품질과 TOR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토부 지침을 반영하여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의 명칭을 적용하였음.

표 3-40. 한국철도시설공단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기술제안서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비 고
사업수행을 위한 접근법, 방법론 (250점)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의 품질	100점	정성적 평가
	용역수행조직의 운영 방법	100점	
	TOR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50점	

표 3-41. 사업수행방법 평가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	-정성평가 ·해당용역 사업 특성 등의 이해 ·해당용역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설계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전단계사업 해결과제 및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내용 및 기대효과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10	-정성평가 ·해당용역 수행조직 운영방안의 적정성 ·해당용역 수행조직 및 인력편성의 적정성 ·조직 구성원의 장점과 활용방안 적정성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5	-정성평가 ·최종 결과물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적정성 ·해당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의 적정성

② 작업 및 직원투입계획 평가기준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범사업에서 작업 및 직원투입 계획 등에 대해 총 배점 200점 중 작업계획 100점, 직원투입계획 100점을 배점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 시범사업에서는 작업계획 20점, 집중참여도 100점을 배점하였음.

○ 작업계획과 직원 투입계획은 업무수행계획, 인력투입계획을 평가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상호 비슷하여 동일한 비율로 배점을 적용하였음.

○ 건설기술용역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에서 직원투입계획에 대해 정성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설계용역 특성상 중복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빈도수가 많아, 성과품에 대한 품질 저하가 우려됨으로 타용역에 대한 중복건수에 따른 감점을 부여하는 정량평가를 적용하였음.

표 3-42. 한국철도시설공단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기술제안서 배점표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등 (200점)	작업계획	100점	정성적 평가
	직원투입계획	100점	정량적 평가

표 3-43. 한국도로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기술제안서 배점표

작업계획 및 집중참여도 (120점)	작업계획	20점	정성적 평가
	집중참여도	100점	정량적 평가

표 3-44. 작업 및 직원투입계획 평가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5	-정성평가 ·해당용역 수행을 위한 업무의 구성, 각 활동 및 업무의 내용과 기간의 적정성 ·설계용역기간 변경 사유 발생시 작업계획 조정방안 ·시급한 인허가변경사항 등의 발생으로 인한 작업계획 조정방안
	직원 투입 계획 (업무중복도)	사업책임 기술인	1.5	-해당용역에 투입되는 기술인이 다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중복건수 1건당 0.15점 감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2	-해당용역에 투입되는 기술인이 다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중복건수 1건당 0.2점 감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1	-해당용역에 투입되는 기술인이 다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중복건수 1건당 0.1점 감점
		실무기술인	0.5	-해당용역에 투입되는 기술인이 다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중복건수 1건당 0.05점 감점

③ 전문가역량평가 평가기준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도로공사 시범사업에서 전문가 평가 500점에서 정량적 평가를 100점, 정성적 평가를 400점을 적용하였음.

○ 종심제 도입취지인 전문가 역량평가를 고려하여, 참여기술인의 정성적 평가 점수를 정량적 평가보다 높게 책정하였으며, 기술제안 발표 및 인터뷰 상항 등을 종합적으로 상대평가로 함.

표 3-45. 한국철도시설공단 종심제 시범사업 기술제안서, 전문가 평가 배점표

전문가 평가 (500점)	핵심전문가 (Key Expert)	유사용역 수행실적	100점	정량적 평가
		업무수행의 적합성	200점	정성적 평가
		업무수행의 창의성	200점	정성적 평가

표 3-46. 한국도로공사 종심제 시범사업 기술제안서, 전문가 평가 배점표

전문가 평가 (500점)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양적평가	100점	정량적 평가
	핵심전문가 유사실적 질적평가	200점	정성적 평가
	핵심전문가 업무수행의 창의성	200점	정성적 평가

표 3-47. 전문가 역량 평가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참여 기술인 수행능력	10	-참여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핵심 기술인 업무 수행의 적합성	25	-정성평가 ·유사용역 수행 경험의 성과 및 해당용역과 유사성
		핵심 기술인 업무 수행의 창의성	10	-정성평가 ·전문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시 문제해결 사례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 사례 ·해당용역 수행시 최신 설계기법 및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방안
		인터뷰	10	-정성평가 ·용역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능력 등

표 3-48.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배점</th><th>평가방법</th></tr>
<tr><td rowspan="3">사업책임기술인</td><td>등급</td><td>0.8</td><td><table><tr><th>특급</th><th>고급</th><th>중급</th><th>초급</th></tr><tr><td>0.8</td><td>0.7</td><td>0.6</td><td>0.5</td></tr></table></td></tr>
<tr><td>경력</td><td>1</td><td><table><tr><th>15년이상</th><th>10년이상</th><th>6년이상</th><th>3년이상</th><th>3년미만</th></tr><tr><td>1</td><td>0.9</td><td>0.8</td><td>0.7</td><td>0.6</td></tr></table></td></tr>
<tr><td>유사용역실적</td><td>1.2</td><td><table><tr><th>15년이상</th><th>10년이상</th><th>6년이상</th><th>3년이상</th><th>3년미만</th></tr><tr><td>1.2</td><td>1.1</td><td>1</td><td>0.9</td><td>0.8</td></tr></table></td></tr>
<tr><td rowspan="2">분야별책임기술인</td><td>등급</td><td>0.8</td><td><table><tr><th>고급</th><th>중급</th><th>초급</th></tr><tr><td>0.8</td><td>0.7</td><td>0.6</td></tr></table></td></tr>
<tr><td>경력</td><td>1.5</td><td><table><tr><th>10년이상</th><th>8년이상</th><th>6년이상</th><th>4년이상</th><th>4년미만</th></tr><tr><td>1.5</td><td>1.3</td><td>1.1</td><td>0.9</td><td>0.7</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유사용역실적</td><td>1.5</td><td>
<table>
<tr><th>10년이상</th><th>8년이상</th><th>6년이상</th><th>4년이상</th><th>4년미만</th></tr>
<tr><td>1.5</td><td>1.3</td><td>1.1</td><td>0.9</td><td>0.7</td></tr>
</table>
</td></tr>
<tr><td rowspan="3">분야별참여기술인</td><td>등급</td><td>0.8</td><td>
<table>
<tr><th>중급</th><th>초급</th></tr>
<tr><td>0.8</td><td>0.7</td></tr>
</table>
</td></tr>
<tr><td>경력</td><td>1</td><td>
<table>
<tr><th>5년이상</th><th>4년이상</th><th>3년이상</th><th>2년이상</th><th>2년미만</th></tr>
<tr><td>1</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td></tr>
<tr><td>유사용역실적</td><td>1</td><td>
<table>
<tr><th>5년이상</th><th>4년이상</th><th>3년이상</th><th>2년이상</th><th>2년미만</th></tr>
<tr><td>1</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td></tr>
<tr><td rowspan="2">참여기술인의교육훈련및전차용역수행실적</td><td>교육훈련</td><td>0.2</td><td>-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1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td></tr>
<tr><td>전차용역</td><td>0.2</td><td>-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0.1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1명당: 0.1점
<table>
<tr><td rowspan="3">사업책임기술인</td><td rowspan="3">0.1</td><td>용역완료후 3년이내</td><td>용역완료후3~5년이내</td><td>용역완료후 5~10년이내</td><td>용역완료후 10년이상</td></tr>
<tr><td>0.1</td><td>0.06</td><td>0.02</td><td>0</td></tr>
<tr><td colspan="4">조사 또는 기본계획60%, 기본설계100%를 적용 후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 50%적용</td></tr>
<tr><td rowspan="3">분야별책임기술인</td><td rowspan="3">0.1</td><td>용역완료후 3년이내</td><td>용역완료후 3~5년이내</td><td>용역완료후 5~10년이내</td><td>용역완료후 10년이상</td></tr>
<tr><td>0.1</td><td>0.06</td><td>0.02</td><td>0</td></tr>
<tr><td colspan="4">조사 또는 기본계획60%, 기본설계100%를 적용 후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 50%적용</td></tr>
</table>
</td></tr>
</table>

다.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 산식

1)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방법 개선

○ 국토부 종심제 발주자 운영지침에서는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차등폭 범위를 5~15%로 주었으며 최대 차등폭인 15% 적용 시, 일부 평가위원에 의해 과도한 점수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10% 차등폭을 적용하였으며 참여업체수에 따른 등급배분은 국토부 지침을 반영하였음.

국토부 종심제 발주자 운영지침, 정성평가의 판정기준 및 등급 배분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항목별 차등평가'와 '평가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차등폭은 5~15%로 한다.

표 3-49. 세부 평가항목별 상대평가 기준

참여업체수	S	A	B	C	D
2	1	1	-	-	-
3	1	1	1	-	-
4	1	1	1	1	-
5	1	1	1	1	1
6	1	1	1	2	1
7	1	1	2	2	1
8	1	1	2	2	2
9	1	1	2	3	2
10	1	1	3	3	2

* 참여업체수가 10개 초과시 평가위원회에서 초과업체에 대한 등급 배분 결정

(1) 세부 평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에는 S 등급을 부여하고, 차순위 업체는 등급별 배분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

(2) S 등급에는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의 만점을 부여하고, A, B, C, D 등급에는 차례로 차등폭 10%만큼 차감된 점수를 부여

(3) 평가항목별 부여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별로 업체 순위를 정한 후, 업체 순위에 따라 등급별 배분표에 따른 등급을 부여

(4) S등급에는 해당업체가 획득한 점수를 그 업체의 기술점수로 하고, A, B, C, D 등급에는 차례로 차등폭 만큼 차감된 점수를 부여(예: 차등폭이 10%인 경우 A 등급은 S등급 점수×0.1, B등급은 S등급 점수 - 배점×0.2, C등급은 S등급 점수 - 배점×0.3, D등급은 S등급 점수 - 배점×0.4)

○ 기존 조달청의 경우 TP/SOQ에서의 그룹핑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정성평가 점수를 산출한 후, 총점에 대해 1% 차등 적용 중
 * 상, 중, 하 그룹핑 후 그룹별 배점범위 내에서 점수 부여
ex) 7개사 입찰 시 그룹핑(상3개사, 중3개사, 하1개사)을 우선 실시 → 그룹별 배점범위(상58.5~60점, 중57~58.5점, 하55.5~57점) 내에서 점수 부여

○ 조달청 종심제의 경우 정성평가시 평가항목별, 평가위원별 차등평가(10%)를 적용하고, 총점에 대해 차등 1% 적용 방식으로 개선

○ 또한 평가항목별 차등을 적용하여 평가항목별 업체 순위 및 등급을 결정한 후, S등급 업체는 평가항목 배점의 만점을 부여하고, A~D등급 업체에게는 10%씩 차등된 점수 부여

○ 평가위원별 차등은 각 위원별로 업체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업체의 순위 및 등급을 결정한 후 S등급 업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A~D등급 업체에 정성평가 배점의 10%씩 차등된 점수를 부여

<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 예시 >

① 평가항목별 차등(10%)

위원	정성평가 항목 및 배점	A사	B사
가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10점)	1순위	2순위
	용역수행 조직의 운영방법(10점)	2순위	1순위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5점)	1순위	2순위
	…		
	정성평가 총점(79.5점)		

→ 평가항목별 1순위는 배점만점, 2순위는 10%씩 차감

A사	B사
10	9
9	10
5	4.5
…	
78.5	72.55

② 평가위원별 차등(10%)

위원	정성평가 총점	A사	B사
가	79.5	78.5	72.55
나	79.5	73.4	77.65
…			
평균			

→ 위원별 1순위 점수를 기준으로 2순위에 정성평가 배점의 10%(7.95점) 차감

A사	B사
78.5	70.55
69.7	77.65
…	
74.1	75.1

③ 총점 차등(1%)

정량+정성평가 총점	A사	B사
100*	94.6	95.6

→ 총점 1순위 점수를 기준으로 2순위에 1% 차감

A사	B사
94.64	95.6

* 가감점 반영으로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산정

○ 총점 차등은 정량, 정성평가 항목 및 가·감점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후 1위 업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차순위 업체에 1%씩 차등된 점수를 부여

○ ‘19년 조달청이 발주한 종심제 8건은 총점 차등(1%)을 적용하였으며, 평균낙찰률은 80.5% 수준. 한편, 대법원, 인천국제공항에서 총점 차등 없이 공고한 건은 낙찰률이 60% 미만에서 형성

2)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 산식 세부사항

○ 종합심사낙찰제의 목적은 기술중심의 경쟁을 유도하여 용역업체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기술력을 기반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국토부 예규 가격평가 문제점은 해당입찰가격을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했을 경우 60%로 투찰하면 가격점수가 더욱 높아지므로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강제차등 없이 종합기술제안서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문제가 없으나,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 간 점수차가 좁게 배점을 받을 것을 대비하여 낮은 가격을 투찰하는 가격경쟁 문제가 발생함. (a값 분석 참고)

○ 종합기술제안서 1점을 강제 차등 할 경우 기술점수 가중치 80% 적용하면 기술점수 차이는 0.8씩 차등되는데, 2순위 업체가 가격입찰을 60%까지 낮게 투찰하여도 1순위 업체가 80%정도 가격투찰을 하면 종합심사 점수가 바뀌지 않으므로 최종 낙찰업체가 합리적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됨. (a값 분석 참고)

○ 기술력과 합리적 수준에 가격이 결정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행하고 있는 종합기술제안서 1순위 업체를 기준으로 1점씩 강제차등하고, 해당가격입찰을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에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함으로써, 합리적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러한 방안은 향후 저가입찰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활용하며, 현재는 국토부 지침을 원칙으로 하여 가격제안서 평가 및 최종 심사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함

○ 또한, 낙찰자 선정은 기존방식과 달리 기술점수가 가장 높은 참여자가 최종 산정되는 방식으로 참여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이 우려됨. 조달청 종심제 기준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조달업체 관계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기술능력 평가 고득점을 위한 경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1등이 수주를 가져가는 제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였음

○ 2020년 본격적인 종심제 시행이후 업체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이는 종심제 시행 이후 문제점 발생 시 활용할 수 있음

1. 입찰적격대상 선정
가) 기술점수를 평가 후 상위업체를 입찰참가적격대상으로 선정
나) 상위업체 적격대상 업체는 기술점수 1등한 점수를 기준 동일한 점수로 적용.
다) 입찰적격대상 업체수
-업체수 5개 이하: 입찰적격업체 수 2개사
-업체수 6개 이상 10개 이하: 입찰적격업체 수 3개사
-업체수가 11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입찰적격대상 업체를 4개사만 선정

2. 낙찰자 선정
가) 제3항에 따라 입찰적격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심사점수(기술점수+가격점수)의 총 합이 적격점수 87점 이상인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 균형가격율(예정가격대비 80%)에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다.

[참고 1] 종합심사낙찰제 낙찰결과

※기술점수 강제차등 없이 용역 공고된 사례, a=3값 적용

○ 기술점수 강제차등 없이 공고된 용역의 개찰 결과를 보면 60%으로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음. 기술점수 극복을 위해 낮은 투찰로 높은 가격점수를 획득하기 위함이며 기술력 중심의 평가를 목적으로 한 종심제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 또한, 용역업체는 이윤창출이 목적이므로 수주 이후에 기술력이 낮은 저가의 기술자를 배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용역 수행의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가격중심의 평가가 아닌 기술중심의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강제차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 2019년 11월 기준 조달청이 계약체결한 종심제 용역 8건은 모두 총점차등 1%를 적요하였으며, 평균낙찰률은 80.5% 수준임. 이는 기존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79.995%)과 유사한 수준임.

용역명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청사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입찰공고번호: 20190718032-00
기초금액: 2,349,000,000원
낙찰금액: 1,260,587,000원

구분	업체명	입찰금액(원)	투찰율(%)	비 고
1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1,260,587,000	53.491%	
2	㈜건축사사무소광장	1,185,775,000	50.317%	
3	㈜이가씨엠건축사사무소	1,320,000,000	56.012%	
4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1,399,500,000	59.386%	
5	㈜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	1,589,000,000	67.427%	
6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385,910,000	58.809%	
7	㈜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	1,404,000,000	59.577%	
8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1,385,910,000	58.809%	
9	㈜다인그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388,400,000	58.915%	
10	㈜한국건설관리공사	1,808,730,000	76.751%	
11	㈜단에이앤씨 종합건축사사무소	1,961,736,000	83.244%	

용역명 : 인천공항 화물터미널E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 인천국제공항
입찰공고번호: 2019-0281-00
기초금액: 4,236,809,137원
낙찰금액: 2,454,000,000원

구분	업체명	입찰금액(원)	투찰율(%)	비 고
1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2,454,000,000	58.974%	
2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2,441,100,000	58.664%	
3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2,454,000,000	58.974%	
4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3,093,294,400	74.337%	
5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3,114,054,000	74.836%	

용역명 :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 부산항만공사
입찰공고번호: 20190816123-03
기초금액: 3,786,200,000원
낙찰금액: 3,144,405,000원

구분	업체명	입찰금액(원)	투찰율(%)	비 고
1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3,144,405,000	83.043%	
2	㈜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927,000,000	50.892%	
3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1,893,100,000	49.996%	
4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2,698,528,000	71.268%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개찰결과
-기술점수 1순위를 기준으로 1등의 1% 강제차등, a=3 적용

용역명 :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 조달청
입찰공고번호: 20190418540
기초금액: 27,369,100,000원
낙찰금액: 21,467,718,800원

구분	업체명	입찰금액(원)	투찰율(%)	비 고
1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21,467,718,800	79.227%	
2	㈜휴먼텍코리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1,547,000,000	79.520%	
3	벽산엔지니어링(주)	19,931,386,440	73.557%	
4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21,563,600,000	79.581%	

[참고 2] 종합심사낙찰제 낙찰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종합심사낙찰제

-기술점수 1순위를 기준으로 1점 강제차등, a=3적용

-해당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용역명 : 과천지식정보타운 S-9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647호)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공고번호: 1901869
기초금액: 5,942,376,611원
낙찰금액: 4,753,000,000원

구분	업체명	입찰금액(원)	투찰율(%)	비 고
1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4,753,000,000	80.016%	
2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4,724,189,000	79.531%	
3	㈜케이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4,739,630,000	79.791%	
4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4,745,000,000	79.881%	
5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	4,783,613,000	80.531%	

용역명 : 고양지축 A-1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750호)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공고번호: 1902542
기초금액: 8,251,070,653원
낙찰금액: 6,600,000,000원

구분	업체명	입찰금액(원)	투찰율(%)	비 고
1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6,600,000,000	80.519%	
2	㈜케이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6,581,050,000	80.288%	
3	㈜선엔지니어링종합 건축사사무소	6,601,000,000	80.532%	
4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6,576,103,000	80.228%	
5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6,534,850,000	79.725%	
6	㈜한국건설관리공사	6,559,000,000	80.019%	

3)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 산식 기준

○ 종합심사 점수 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 산식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10조 2항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 1항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 선정 “을 근거로 하였다.

Ⅰ. 종합심사점수 산정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가중치
계			100(%)
기술능력 평가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100	80(%)
입찰가격 평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적용 : 아래 2호	100	20(%)

※ 종합심사 점수=기술능력 평가점수×가중치 + 입찰가격 평가점수×가중치
※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술능력 80~95%, 입찰가격 20~5% 범위에서 조정 가능

Ⅱ. 입찰가격 평가점수

1.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해당입찰가격}}\right)$$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right) + 3 \times \left(\frac{\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해당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추정가격의60\%상당가격}}\right)$$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4) 합리적 수준의 가격 결정을 위한 a값 산정 분석

① a = 2인 경우

1. 최저입찰가격이 60%인 경우

투찰률	100%	95%	90%	85%	80%	75%	70%	65%	60%
평점	60	63.158	66.667	70.588	75	75.5	76	76.5	77
환산점수	12	12.632	13.333	14.118	15	15.1	15.2	15.3	15.4
최고점대비	-3.4	-2.768	-2.067	-1.282	-0.4	-0.3	-0.2	-0.1	0

2. 최저입찰가격이 65%인 경우

투찰률	100%	95%	90%	85%	80%	75%	70%	65%	
평점	65	68.421	72.222	76.471	81.25	81.75	82.25	82.75	
환산점수	13	13.684	14.444	15.294	16.25	16.35	16.45	16.55	
최고점대비	-3.55	-2.866	-2.106	-1.256	-0.3	-0.2	-0.1	0	

3. 최저입찰가격이 70%인 경우

투찰률	100%	95%	90%	85%	80%	75%	70%		
평점	70	73.684	77.778	82.353	87.5	88	88.5		
환산점수	14	14.737	15.556	16.471	17.5	17.6	17.7		
최고점대비	-3.7	-2.963	-2.144	-1.229	-0.2	-0.1	0		

4. 최저입찰가격이 75%인 경우

투찰률	100%	95%	90%	85%	80%	75%			
평점	75	78.947	83.333	88.235	93.75	94.25			
환산점수	15	15.789	16.667	17.647	18.75	18.85			
최고점대비	-3.85	-3.061	-2.183	-1.203	-0.1	0			

5. 최저입찰가격이 80%인 경우

투찰률	100%	95%	90%	85%	80%				
평점	80	84.211	88.889	94.118	100				
환산점수	16	16.842	17.778	18.824	20				
최고점대비	-4	-3.158	-2.222	-1.176	0				

② a = 3인 경우

1. 최저입찰가격이 60%인 경우

투찰률	100%	95%	90%	85%	80%	75%	70%	65%	60%
평점	60	63.158	66.667	70.588	75	75.75	76.5	77.25	78
환산점수	12	12.632	13.333	14.118	15	15.15	15.3	15.45	15.6
최고점대비	-3.6	-2.968	-2.267	-1.482	-0.6	-0.45	-0.3	-0.15	0

2. 최저입찰가격이 65%인 경우

투찰률	100%	95%	90%	85%	80%	75%	70%	65%	
평점	65	68.421	72.222	76.471	81.25	82	82.75	83.5	
환산점수	13	13.684	14.444	15.294	16.25	16.4	16.55	16.7	
최고점대비	-3.7	-3.016	-2.256	-1.406	-0.45	-0.3	-0.15	0	

3. 최저입찰가격이 70%인 경우

투찰률	100%	95%	90%	85%	80%	75%	70%		
평점	70	73.684	77.778	82.353	87.5	88.25	89		
환산점수	14	14.737	15.556	16.471	17.5	17.65	17.8		
최고점대비	-3.8	-3.063	-2.244	-1.329	-0.3	-0.15	0		

4. 최저입찰가격이 75%인 경우

투찰률	100%	95%	90%	85%	80%	75%			
평점	75	78.947	83.333	88.235	93.75	94.5			
환산점수	15	15.789	16.667	17.647	18.75	18.9			
최고점대비	-3.9	-3.111	-2.233	-1.253	-0.15	0			

5. 최저입찰가격이 80%인 경우

투찰률	100%	95%	90%	85%	80%				
평점	80	84.211	88.889	94.118	100				
환산점수	16	16.842	17.778	18.824	20				
최고점대비	-4	-3.158	-2.222	-1.176	0				

③ a = 4인 경우

1. 최저입찰가격이 60%인 경우

투찰률	100%	95%	90%	85%	80%	75%	70%	65%	60%
평점	60	63.158	66.667	70.588	75	76	77	78	79
환산점수	12	12.632	13.333	14.118	15	15.2	15.4	15.6	15.8
최고점대비	-3.8	-3.168	-2.467	-1.682	-0.8	-0.6	-0.4	-0.2	0

2. 최저입찰가격이 65%인 경우

투찰률	100%	95%	90%	85%	80%	75%	70%	65%	
평점	65	68.421	72.222	76.471	81.25	82.25	83.25	84.25	
환산점수	13	13.684	14.444	15.294	16.25	16.45	16.65	16.85	
최고점대비	-3.85	-3.166	-2.406	-1.556	-0.6	-0.4	-0.2	0	

3. 최저입찰가격이 70%인 경우

투찰률	100%	95%	90%	85%	80%	75%	70%		
평점	70	73.684	77.778	82.353	87.5	88.5	89.5		
환산점수	14	14.737	15.556	16.471	17.5	17.7	17.9		
최고점대비	-3.9	-3.163	-2.344	-1.429	-0.4	-0.2	0		

4. 최저입찰가격이 75%인 경우

투찰률	100%	95%	90%	85%	80%	75%			
평점	75	78.947	83.333	88.235	93.75	94.75			
환산점수	15	15.789	16.667	17.647	18.75	18.95			
최고점대비	-3.95	-3.161	-2.283	-1.303	-0.2	0			

5. 최저입찰가격이 80%인 경우

투찰률	100%	95%	90%	85%	80%				
평점	80	84.211	88.889	94.118	100				
환산점수	16	16.842	17.778	18.824	20				
최고점대비	-4	-3.158	-2.222	-1.176	0				

④ a = 5인 경우

1. 최저입찰가격이 60%인 경우

투찰률	100%	95%	90%	85%	80%	75%	70%	65%	60%
평점	60	63.158	66.667	70.588	75	76.25	77.5	78.75	80
환산점수	12	12.632	13.333	14.118	15	15.25	15.5	15.75	16
최고점대비	−4	−3.368	−2.667	−1.882	−1	−0.75	−0.5	−0.25	0

2. 최저입찰가격이 65%인 경우

투찰률	100%	95%	90%	85%	80%	75%	70%	65%	
평점	65	68.421	72.222	76.471	81.25	82.5	83.75	85	
환산점수	13	13.684	14.444	15.294	16.25	16.5	16.75	17	
최고점대비	−4	−3.316	−2.556	−1.706	−0.75	−0.5	−0.25	0	

3. 최저입찰가격이 70%인 경우

투찰률	100%	95%	90%	85%	80%	75%	70%		
평점	70	73.684	77.778	82.353	87.5	88.75	90		
환산점수	14	14.737	15.556	16.471	17.5	17.75	18		
최고점대비	−4	−3.263	−2.444	−1.529	−0.5	−0.25	0		

4. 최저입찰가격이 75%인 경우

투찰률	100%	95%	90%	85%	80%	75%			
평점	75	78.947	83.333	88.235	93.75	95			
환산점수	15	15.789	16.667	17.647	18.75	19			
최고점대비	−4	−3.211	−2.333	−1.353	−0.25	0			

5. 최저입찰가격이 80%인 경우

투찰률	100%	95%	90%	85%	80%				
평점	80	84.211	88.889	94.118	100				
환산점수	16	16.842	17.778	18.824	20				
최고점대비	−4	−3.158	−2.222	−1.176	0				

○ 종합심사낙찰제의 목적은 기술중심의 경쟁률 유도하여 용역업체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기술력을 기반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현재 조달청 건설기술용역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의 경우 10억 이상 용역 낙찰방법은 적격점수를 넘고 낙찰율 79.995%를 적용하여 최저가격인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되는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10억이상 30억이하 용역의 낙찰율은 77.995%, 30억 이상의 용역은 낙찰율 72.995%를 적용하므로 종합심사낙찰제에서 합리적 수준의 가격을 79.995%~72.995% 기준으로 산정

○ 타기관에서 과거 시행한 a값에 따른 종심제 낙찰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a값을 2로 적용했을 경우 S등급 업체가 80%를 투찰하면 A등급은 50%이하 투찰하여야 A등급업체가 낙찰이 가능함
- 업체에서 수주하기 위해 50%이하로 투찰하는 일이 발생하면 너무 낮은 가격에 수주가 되어 용역업체의 투입하는 인원 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체에 부담을 초래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업체의 부도가 발생할 수 있고 발주청에도 건물을 준공함에 있어 관리가 미흡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50%이하로 투찰하는 하지 않고 참여업체가 기술점수에서 1등을 하면 최종 낙찰이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할 수있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참여업체에서 투찰할 때 80%정도로 투찰하여 기술점수로만 낙찰을 하게되고 그러면 기술점수차 이내만큼 투찰을 높여 투찰하여 높은 투찰율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값을 3으로 적용했을 경우 S등급 업체가 80%를 투찰하면 A등급은 60%이하 투찰하여야 A등급업체가 낙찰가능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법원에서 a=3값으로 종합심사낙찰제를 발주한 용역에서 60%이하 50%이상으로 투찰한 업체가 11개 업체중 8개업체, 5개업체중 3개업체가 투찰하는 결과가 나왔고 60%이하 투찰한 업체서 낙찰을 하였음. 기술력보다 저가로 투찰하여 저가투찰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업체부담 초래하는 문제 발생
- a값을 4로 적용했을 때 S등급 업체가 80%를 투찰하면 A등급은 64%이하 60%이상 투찰하여야 A등급업체가 낙찰이 가능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법원에서 발주한 결과를 봐도 60%이하 투찰을 하는 업체가 많으므로 S등급 업체는 가격점수를 높이기 위해 투찰을 낮게 함. S등급업체가 70%투찰을 하면 A등급 업체는 54%이하 투찰하여야 낙찰이 가능하므로 S등급 업체는 70%이상 80%이하 투찰예상
- a=5의 경우 S등급 업체가 80%를 투찰하면 A등급은 68%이하 63%이상 투찰하여야 A등급업체가 낙찰
- a=5값을 하면 A등급업체는 68%이하 63%이상으로 투찰하여도 수주가 가능하므로 S등급업체는 수주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 낮은 가격을 투찰하게되어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낙찰율이 점점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

○ 2019년 11월 기준 조달청이 계약체결한 종심제 8건은 a=3, 총점차등 1%를 적용하였으며, 평균낙찰률은 80.5% 수준이며, 이는 기존 적격심사의 낙찰률이 79.995%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5) 적정 평가시간 및 제안서 작성 분량

○ 실질적 평가시간을 고려하여 제안서 작성 분량을 선정해야 함

○ 적정 페이지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 수행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페이지별, 전체 소요시간에 대해 측정함

○ 시뮬레이션 기준은 제안서 40페이지, 5개 업체 참여로 설정함

○ 페이지 당 소요시간은 1분 이내였으나, 심사위원별 개인적 성향, 전문분야, 기술심사 경험 유/무, 난이도 등에 의해 정량화에는 다소 문제가 있음

표 3-50. 심사위원별 제안서 평가 소요시간

구 분	심사위원		소요시간	평가시간(페이지)
심사위원	기술심사 경험(유)	A 심사위원(건축)	1시간 30분	27초/1페이지
		B 심사위원(토목)	2시간 10분	39초/1페이지
	기술심사 경험(무)	C 심사위원(건축)	3시간 10분	57초/1페이지
		D 심사위원(토목)	2시간 40분	48초/1페이지

○ 2단계 평가방식의 경우는 참여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자가 5개 이내로 명시되어 있지만, 기술적이행능력평가와 통합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대상자 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5개사(2019년 11월 기준 조달청 발주 종심제 용역 8건의 건당 평균입찰자는 3개사)로 가정함.

○ 페이지 산정에 있어, 심사위원의 평가시간과 함께 참여 용역사의 제안서 작성을 위한 적정한 시간의 부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1) “2단계평가방식” 의 기술적 이행능력평가서 제출(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종합기술제안서 제출(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2) 통합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공고일로부터 40일 이내)

○ 종심제 세부기준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조달업체 90% 이상이 페이지 축소조정을 요구한 결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실질적인 평가시간인 4시간, 심사위원 평가시간(페이지당 1분 이내), 발표 등 전문가 인터뷰를 고려하여, 제안서 작성분량을 2단계 평가방식과 통합평가방식으로 구분하여 산정함.

표 3-51. 제안서 작성 분량

평가	페이지	비고
기술적이행능력	10	소요시간 100분 이내 (10페이지, 10개사 참여, 평가시간 1분/장)
종합기술제안서	30	소요시간 150분 이내 (5개사 참여, 평가시간 1분/장) ※ 30억원 미만
	40	소요시간 200분 이내 (5개사 참여, 평가시간 1분/장) ※ 30억원 이상

- 기존 TP, SOQ의 경우 30억원 미만은 30페이지, 30~50억원은 40페이지, 50억원 이상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토록 한 것과 비교하여 소폭 축소 조정하였음
- 전문가 역량 평가를 위한 핵심기술인 2인의 자기소개서(1인당 3페이지 이내)를 제안서 분량에 포함토록 함.
- 기존의 TP, SOQ가 이미지, 도표 등 위주로 작성된 것과 대비하여 종심제 제안서는 서술식으로 작성토록 하여 제안서의 내용은 충실하되, 업체들의 제안서 구성 등을 위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측됨.

- 위에 제시된 제안서 작성 분량은 일반용역의 페이지 산정을 위한 기준점으로 용역의 특성 및 예상되는 참여업체수를 고려하여 조정하여 발주하는 것이 가능함.
- 예를 들어, 통합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의 경우 참여 업체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용역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참가등록을 실시하여, 참여 업체수를 확인하여 페이지 수를 축소/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라. 입·낙찰 관련 업무절차

1) 종합심사낙찰제 입찰평가 절차

○ 용역 종심제의 평가 방식은 '통합 평가방식' 과 '2단계 평가방식' 으로 구분되어 있어, 사업의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업무절차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함.

○ 국토부 지침을 보면 2단계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통합 평가방식을 적용 할 수 있음.

1) 용역입찰자의 수가 10개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어 2차 심사 자격자를 선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2) 당해 용역의 시급성 때문에 입·낙찰 절차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그밖에 발주청이 용역의 특성 또는 원활한 심사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현재 조달청에서는 2단계 평가방식으로 운영중이며, 1단계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평가는 PQ(정량평가)이며, 2단계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는 TP/SOQ(정성평가)로 대체평가 시행중임

○ 국토부 지침에 따른 종심제의 2단계 평가 중 1단계에는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정성평가도 포함하고 있어, 평가자들의 평가를 위한 시간 배분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음. 또한 외부 평가자들의 1단계 평가 후 2단계 평가까지 시간적 여유가 발생하여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여 최종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조달청 종심제에서는 2단계 평가방식을 국토부 지침과 같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함(단, 입찰자가 10인 미만으로 예상되거나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통합평가방식을 허용). 단, 이는 통합평가방식을 운영하는 것보다 부정적 요소가 존재할 수 있으나, 2018년도부터 2019년 11월까지 시행된 종심제 대상 규모 용역건수가 14건에서 평균입찰자수는 4.1개사 수준으로, 10개사 이상 참여한 경우는 없어 2단계 평가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 따라서 종심제 평균입찰자수 및 평가의 효율성을 감안할 경우 대부분 수요기관이 통합평가방식 발주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2) 동점자 발생시 처리방안

○ 현재 조달청 지침의 경우 기술점수는 동점자 발생을 허용하고 있고,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점이 재발생 시 추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토부 예규는 기술점수와 관련 별도의 처리기준이 없으나, 발주자 운영지침에서는 입찰자간 기술점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종합심사 점수가 동점인 자가 발생하는 경우 기술능력 점수가 높은 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되, 동점이 재발생 시 발주청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조달청도 기술점수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기관의 사례와 공사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 지침) 등을 참고하여 ①기술점수 단순 합산이 높은 자, ②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 ③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

3) 결격사유 및 허위서류 제출자 처리방안

○ 국토부는 결격사유, 허위서류 제출자의 처리방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함

○ 다만, 기재부 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결격사유와, 허위서류 제출자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기재부 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조달청의 기존 PQ 기준에서도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적격자 선정 결격)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낙찰예정자는 낙찰자선정을 위한 확인서류와 온라인 평가(또는 제8조제2항)의 경우 재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서류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평가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되어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인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 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하는 경우

○ 이에 조달청 종심제 기준에도 기재부 예규에 더하여 조달청 기존 지침의 결격사유, 허위서류 제출자 처리방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제안

1) 평가위원회 구성

○ 국토교통부 예규, 발주자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의 정성 평가항목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음.

○ 조달청은 기존 TP, SOQ 평가를 위해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에, 해당 위원회의 풀을 활용할 수 있음.

○ 2019년 9월 기준 조달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는 8개 전문분야 50명으로, 대학교수 29명(58%), 공무원 17명(34%), 공공기관 임직원 4명(8%)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54. 2019년 9월 기준 조달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 전문분야 구성

구분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CM	기계설비	토목구조	상하수도	토목CM	토질기초	합계
평가위원	5	5	18	5	3	3	8	3	50

○ 평가위원의 직종과 관련하여 대학교수의 경우 이론 위주의 평가가 가능하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실무 위주의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특정 직종의 평가위원이 전체 정원의 70%를 초과할 경우 편중된 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2017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조달청에서 발주한 TP, SOQ, 종심제 20건의 경우 도로, 철도공사 관련 용역이 다수 발주되었음에도 정확히 일치하는 전문분야가 없어 유사한 토목구조, 토목CM, 토질기초의 평가위원이 투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평가용역과 일치하지 않는 전문분야가 없는 점은 조달청 평가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지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한편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초기 발주 경험이 없는 수요기관은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용역의 유형은 규모가 큰 도로, 공항, 철도, 항만, 해안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조달청은 대규모 용역의 평가를 위해 해당 전문분야를 신설하여 조달요청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종심제 시범사업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심사 전날 17시에 선정이 완료되면서 참여업체의 제안서를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평가가 이루어지게 하고, 심사위원을 공개하고 있음

○ 심사 당일 참여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기에 부족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이는 반대적으로 평가 전 사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부여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

○ 따라서, 평가위원 선정을 전날 하는 경우 현재 조달청 방법과 같이 심사위원 공개는 비공개로 하거나, 심사 당일 새벽에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심사위원 접촉을 최소화하여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조달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위원회 풀 확대는 늘어나는 평가에 대응하기 위함도 있지만, 로비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

○ 조달청은 현재 평가위원회 50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업체는 평가위원들에게 사전접촉을 하거나 부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게 된다면 암암리에 로비가 성행하게 될 수 있어 이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평가위원 명단 공개는 유지하되, 풀을 확대하여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저하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50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전문분야의 다양성이 요구됨. 특히 현재까지 부정행위 등의 의혹이 제기된 적은 없으나 향후 공정성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 발주청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어 평가위원 풀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3-55. 종심제 조달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 전문분야 구성(예시)

구분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 시공	기계 설비	토목 구조	상하 수도	토목 시공	토질 기초	도로 공항	항만 해안	철도	조경	합계
평가 위원	7	7	20	7	7	7	10	7	7	7	7	7	100

2)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 한편, 국토교통부 발주가 운영지침은 종심제 평가 시 공통질문이나 개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개별 질문의 경우 업체별 제안서의 특성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이나. 일부 위원들이 특정 업체를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평가하는데 이용할 수 있어 가급적 공통질문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공통질문는 참여업체 간 질문을 공유하여 순번이 늦은 업체가 유리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존방식인 발표+면접이 아닌 발표를 선 진행하여 상대평가를 한 뒤 면접을 일괄적으로 진행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표 3-56. 발표 및 면접방안

구분	기 존	신 규	비고
평가 방법	업체별 발표+면접 진행 후 평가	업체별 발표 및 평가 ▶업체별 면접 및 평가	

○ 또한, 평가위원간 토론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 위원들이 평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토론방식이 아닌 개인의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조달청 기술제안서 등 운영기준에서는 평가 전 업체로부터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은 위원이 있는 경우 평가에서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낙찰 이후 평가위원에게 자문, 연구 등을 의뢰한 업체에게는 평가점수 감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부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 평가위원이나 업체가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이 확인할 수 없음. 다시 말해 조달청은 비위행위 관련 회피 제도, 감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적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조달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전후 업체가 자문, 연구 등을 평가위원에게 의뢰하였는지 평가위원으로부터 확인서를 청구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들이 평가위원에 대해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 성실

성을 사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피평가자(업체)가 평가자의 공정성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이에 대해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평가의 결과가 사후평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결과 발표 이전에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별첨 1.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 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단계 평가방식'이라 함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를 통해 업체의 역량을 1차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뒤,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 '통합 평가방식'이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는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용역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자가 1차 심사를 위해 업체의 역량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4.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는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1차 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5. ‘종합기술제안서’는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과 투입 핵심기술인의 자격 및 역량,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7. ‘평가위원회’는 개별 건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종합기술제안서의 정성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의 집합체를 말한다.
8. ‘평가위원’은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국토부예규”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역의 입찰에 적용한다.

1. 추정가격 15억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2. 추정가격 25억 이상의 실시설계용역
3.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용역

제4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용역기간, 가격 및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용역 여부 등 용역 개요
2. 평가방식(통합 평가방식 또는 2단계 평가방식)
3.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등 입찰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격

5. 그 밖의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5조(입찰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2단계 평가방식 적용 용역에 한함)

3. 종합기술제안서

4.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제6조(평가기준일 등) ①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착수예정일로 한다.

③ 각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구성 및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이행방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② 공동수급체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기술역량”의 과업에 대한 전문성 및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역량”의 용역평가결과 심사, “관리역량”의 재정상태건실도, “사회적책임”의 인력고용, 공정거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자격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
2.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구성원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8조(입찰평가방식) 평가방식은 2단계 평가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용역입찰자의 수가 10개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어 2차 심사 자격자를 선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
2. 해당 용역의 시급성 때문에 입·낙찰 절차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수요기관이 용역의 특성 또는 원활한 심사의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평가기준) 용역유형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건설공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용역 : [별표1], [별표2]
2.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별표3], [별표4]
3.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별표5], [별표6]

제10조(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① 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정성평가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평가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평가위원별 배점에 대해 각각 10퍼센트로 한다.

③ 제1항의 평가를 통해 2~5인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로 인하여 평가적격자 대상이 5인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평가적격자로 한다.

제11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기술제안서 제출) 2단계 평가방식의 평가적격자 또는 통합평가방식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일시까지 종합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종합기술제안서 평가)① 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제11조의 평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

② 통합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

③ 정성평가의 경우 평가항목별·평가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평가위원별 배점에 대해 각각 10퍼센트로 한다.

④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점수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총점의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종합심사점수 산정 방법) ① 종합심사점수는 [별표7]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 각각에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점수에 소수점이 있을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5조(낙찰자 결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14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
2. 종합기술제안서의 정성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자
3. 종합기술제안서의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 점수가 높은 자
4. 추첨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이후 서류가 접수된 경우
3. 제출서류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자료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함.
5. 입찰공고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6.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기준 또는 입찰공고 등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19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이하 이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국토부예규,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수요기관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보완·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Ⅰ. 통합평가방식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수행능력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0.5	정성평가
		사업관리 운영체계	1	정성평가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0.5	정량평가
	【소계】		【2점】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1	정량평가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3	정성평가
		용역평가결과 심사	1	정량평가
	【소계】		【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3	정량평가
	【소계】		【3점】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	정성평가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10	정성평가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5	정성평가
	【소계】		【25점】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5	정성평가
		직원 투입 계획	5	정량평가
	【소계】		【10점】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10	정량평가
			45	정성평가
	【소계】		【55점】	
사회적 책임		인력고용(가점)	최대 +2	정량평가
		공정거래(감점)	최대 −2	정량평가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제안서 작성위반 등	최대 −10	정량평가
[합계]			[100점]	

Ⅱ. 2단계 평가방식

1.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5	정성평가
		사업관리 운영체계	10	정성평가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5	정량평가
	【소계】		【20점】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10	정량평가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30	정성평가
		용역평가결과 심사	10	정량평가
	【소계】		【5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30	정량평가
	【소계】		【30점】	
계약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작성위반 등		최대 -5	정량평가
[합계]			[100점]	

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수행능력	기술보유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점수	10	
	【소계】		【10점】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	정성평가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10	정성평가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5	정성평가
	【소계】		【25점】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5	정성평가
		직원 투입 계획	5	정량평가
	【소계】		【10점】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10	정량평가
			45	정성평가
	【소계】		【55점】	
사회적 책임		인력고용(가점)	최대 +2	정량평가
		공정거래(감점)	최대 -2	정량평가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제안서 작성위반 등	최대 -10	정량평가
[합계]			[100점]	

[별표2]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Ⅰ.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table>
<tr><th>평가항목</th><th colspan="2">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평가방법</th></tr>
<tr><td rowspan="5">관리역량</td><td colspan="2">품질보증 및 관리체계</td><td>5
<0.5></td><td>-정성평가
·해당용역 품질의 확보 및 향상 방안
·품질 관련 사고발생시 해결방안
·보유중인 품질 관련 방침, 절차, 방법 등 품질보증시스템</td></tr>
<tr><td colspan="2">사업관리 운영체계</td><td>10
<1></td><td>-정성평가
·해당용역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관리방안
·해당용역 수행 관련 대응 또는 지원시스템</td></tr>
<tr><td rowspan="3">신용도</td><td>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td><td rowspan="2">3.5
<0.35></td><td>-참여업체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td></tr>
<tr><td>벌점</td><td>-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table>
<tr><th>누계평균 벌점</th><th>1점 이상 2점 미만</th><th>2점 이상 5점 미만</th><th>5점 이상 10점 미만</th><th>10점 이상 15점 미만</th><th>15점 이상 20점 미만</th><th>20점 이상</th></tr>
<tr><td>점수 (감점)</td><td>0.1</td><td>0.3</td><td>0.5</td><td>1</td><td>1.5</td><td>2.5</td></tr>
</table></td></tr>
<tr><td colspan="2">재정상태 건실도</td><td>1.5
<0.15></td><td>-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table>
<tr><th>회사채</th><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 이하</td><td>미제출</td></tr>
<tr><th>기업어음</th><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
<tr><th>기업신용</th><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
<tr><th>점수</th><td>1.5</td><td>1.4</td><td>1.1</td><td>0</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 colspan="2">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평가방법</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기술
역량</td><td rowspan="3">과업에
대한
전문성</td><td>개발
실적</td><td>1
<0.1></td><td>-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1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table>
<tr><th>경과기간</th><th>5년 미만</th><th>5년 이상
10년 미만</th><th>10년 이상
20년 미만</th></tr>
<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
<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
</table>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td></tr>
<tr><td>투자
실적</td><td>7
<0.7></td><td>-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로 평가
<table>
<tr><th>구분</th><th>1.50%
이상</th><th>1.50%
미만
1.25%
이상</th><th>1.25%
미만
1.00%
이상</th><th>1.00%
미만
0.75%
이상</th><th>0.75%
미만
0.50%
이상</th></tr>
<tr><td>점수</td><td>7</td><td>6</td><td>5</td><td>4</td><td>3</td></tr>
</table></td></tr>
<tr><td>활용
실적</td><td>2
<0.2></td><td>-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건설신기술 : 1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가중치</th></tr>
<tr><th>1.0</th><th>0.9</th><th>0.8</th><th>0.7</th><th>0.6</th></tr>
<tr><td>활용건수
(건)</td><td>5 이상</td><td>5 미만
4 이상</td><td>4 미만
3 이상</td><td>3 미만
2 이상</td><td>2 미만
1 이상</td></tr>
<tr><td>활용금액
(억원)</td><td>20 이상</td><td>20 미만
18 이상</td><td>18 미만
16 이상</td><td>16 미만
14 이상</td><td>14 미만
12 이상</td></tr>
</table>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평가방법</th></tr>
<tr><td rowspan="2"></td><td>과업내용에
대한 경험</td><td>30
<3></td><td>-정성평가
·해당용역과 유사한 대표실적의 문제 해결사례
·해당용역과 유사한 실적경험에 근거한 해당용역의 핵심 고려사항</td></tr>
<tr><td>용역평가
결과 심사</td><td>10
<1></td><td>-「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용역평가결과로 평가
· 용역평가점수=∑(용역실적금액×해당용역 평가점수)/
∑용역실적금액
<table>
<tr><th>구분</th><td>89점
이상</td><td>89점
미만
87점
이상</td><td>87점
미만
85점
이상</td><td>85점
미만
83점
이상</td><td>83점
미만</td></tr>
<tr><th>점수</th><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able></td></tr>
<tr><td>유사
용역
수행
실적</td><td>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td><td>30
<3></td><td>-최근 5년간 참여업체의 설계실적규모의 해당용역 발주규모에 대한 비율로 평가(규모는 부가세 포함 금액)
<table>
<tr><th>등급</th><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d>-</td></tr>
<tr><th>기준
비율</th><td>500%
이상</td><td>400%
이상</td><td>300%
이상</td><td>200%
이상</td><td>30%
이상</td><td>30%
미만</td></tr>
<tr><th>점수</th><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d>0</td></tr>
</table></td></tr>
<tr><td>평가
관련
신뢰
도</td><td>기술능력
평가서
작성위반</td><td>-5</td><td>
<table>
<tr><th>감점사유</th><th>감점</th></tr>
<tr><td>제한규격 위반</td><td>1쪽당 0.1점</td></tr>
<tr><td>기준쪽수 초과</td><td>1쪽당 0.1점</td></tr>
<tr><td>칼라 사용</td><td>1쪽당 0.1점</td></tr>
<tr><td>애니메이션 및 음향효과 사용(PPT)</td><td>1슬라이드당
0.1점</td></tr>
</table></td></tr>
</table>

※ < >는 통합평가방식 용역에 적용하는 배점으로, 우선 평가방법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후 10%로 환산(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반영

Ⅱ. 통합평가방식 및 2단계 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보유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점수		10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점수를 10점으로 환산 적용
사업수행 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	-정성평가 ·해당용역 사업 특성, 발주청의 요구조건 등에 대한 이해수준 ·해당용역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추진방안 ·해당용역 수행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10	-정성평가 ·해당용역 수행조직 운영방안 ·해당용역 수행조직 구성 및 인력편성 ·공동도급시 참여업체간 업무협조 체계 ·전문가 활용 계획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5	-정성평가 ·해당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내용서 개선사항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5	-정성평가 ·해당용역 수행을 위한 작업계획 및 체계 ·인허가 변경, 용역기간 변경 사유 발생시 작업계획 조정방안
	직원 투입 계획		5	-해당용역에 투입되는 기술인이 다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감점 ·사업책임기술인 0.15점/1건 ·분야별책임기술인 0.2점/1건 ·분야별참여기술인 0.1점/1건 ·실무기술인 0.05점/1건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10	-참여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핵심기술인 업무수행의 적합성	25	-정성평가 ·유사용역 수행 경험의 성과 및 해당용역과 유사성
		핵심기술인 업무수행의	10	-정성평가 ·전문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시 문제해결 사례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 사례 ·해당용역 수행시 최신 설계기법 및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방

<table>
<tr><th>평가항목</th><th colspan="2">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평가방법</th></tr>
<tr><td rowspan="2"></td><td rowspan="2"></td><td>창의성</td><td></td><td>안</td></tr>
<tr><td>인터뷰</td><td>10</td><td>-정성평가
·용역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능력 등</td></tr>
<tr><td rowspan="2">사회적 책임</td><td colspan="2">인력고용</td><td>+2</td><td>-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에 따른 가점
<table>
<tr><th>비율(%)</th><td>1%이상
2%미만</td><td>2%이상
3%미만</td><td>3%이상</td></tr>
<tr><th>가산점수</th><td>1</td><td>1.5</td><td>2</td></tr>
</table></td></tr>
<tr><td colspan="2">공정거래</td><td>-2</td><td>-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른 감점
<table>
<tr><th>행위 유형</th><th>조치정도</th></tr>
<tr><td>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td><td>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td></tr>
<tr><td>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td><td>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td></tr>
</table></td></tr>
<tr><td rowspan="2">평가 관련 신뢰도</td><td colspan="2">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 우려 사항</td><td rowspan="2">-10</td><td>
<table>
<tr><th>감점사유</th><th>감점</th><th>감점기간</th></tr>
<tr><td>입찰공고 이후 평가위원 사전접촉</td><td>1</td><td>해당평가</td></tr>
<tr><td>입찰공고 이후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사전설명</td><td>2</td><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td></tr>
<tr><td>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1년 이내에 평가 참여 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td><td>2</td><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td></tr>
<tr><td>평가 관련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래행위 또는 부정행위 사실이 있는 경우</td><td>10</td><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td></tr>
</table></td></tr>
<tr><td colspan="2">제안서 작성위반</td><td>
<table>
<tr><th>감점사유</th><th>감점</th></tr>
<tr><td>제한규격 위반</td><td>1쪽당 0.2점</td></tr>
<tr><td>기준쪽수 초과</td><td>1쪽당 0.2점</td></tr>
<tr><td>칼라 사용</td><td>1쪽당 0.2점</td></tr>
<tr><td>애니메이션 및 음향효과 사용(PPT)</td><td>1슬라이드당 0.2점</td></tr>
</table></td></tr>
</table>

[부표] 종합기술제안서 등 평가 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투자·활용실적, 업무중복도, 해외 설계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 참여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Ⅱ. 정량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업무정지)

1)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대해 적용하며 각 관련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벌점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 평균벌점에 따라 감점되는 점수를 합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 과업에 대한 전문성

가. 개발실적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

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최근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합계/최근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로 평가한다.
2)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4)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인정한다.

다. 활용실적

1) 용역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만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만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

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용역평가결과 심사

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등재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용역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text{용역평가점수} = \frac{\sum_{i=1}^{n}(\text{용역실적금액}i \times \text{해당용역평가점수}i)}{\sum_{i=1}^{n}\text{용역실적금액}i}$$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참여사별 점수에 참여사별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 점수로 기입한다.

다.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값(8점, 통합평가방식의 경우 0.8점)을 부여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의 준공된 설계실적(금액)에 따른 평가로서 주공종별로 구분한다.

나.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라.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인정한다.

마.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해당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사.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시 실적규모별 등급 및 등급별 업체수 배분은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평가방법 이외의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평가기준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1) 실적규모

○ 등급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간 설계실적 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 급	수	우	미	양	가	–
기준비율	500% 이상	400% 이상	300% 이상	200% 이상	30% 이상	30%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0

2) 위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최상위등급(“수”)을 획득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참여업체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산출식을 적용하여 최상위등급 “수”업체수로부터 차례대로 하위등급 업체수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수”, “우”, “미”, “양”, “가” 순서로 등급을 배분한다. 다만, 배분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업체수는 아래의 산출식과 관계없이 잔여업체수로 한다.

○ 참여업체수 3개사 이하: 참여업체수 ×75%

○ 참여업체수 4개사 이상 7개사 미만: 참여업체수 ×40%

○ 참여업체수 7개사 이상: 참여업체수 ×30%

※ 산출값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3) 유사실적이 해당규모(금액)의 30/100 미만인 경우는 “0”점 처리하며, 업체 배분수 산정 시에는 해당업체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참고) 최상위등급 획득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평가등급 배분 예시

신청 자수	등 급					신청 자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2	(1)				22	7	7	7	1	
4	2	2				23	7	7	7	2	
5	2	2	1			24	7	7	7	3	
6	2	2	2			25	8	8	8	1	
7	2	2	2	1		26	8	8	8	2	
8	2	2	2	2		27	8	8	8	3	
9	3	3	3			28	8	8	8	4	
10	3	3	3	1		29	9	9	9	2	
11	3	3	3	2		30	9	9	9	3	
12	4	4	4			31	9	9	9	4	
13	4	4	4	1		32	10	10	10	2	
14	4	4	4	2		33	10	10	10	3	
15	5	5	5			34	10	10	10	4	
16	5	5	5	1		35	11	11	11	2	
17	5	5	5	2		36	11	11	11	3	
18	5	5	5	3		37	11	11	11	4	
19	6	6	6	1		38	11	11	11	5	
20	6	6	6	2		39	12	12	12	3	
21	6	6	6	3		40	12	12	12	4	

5. 직원 투입 계획

가. 직원 투입 계획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수행중인 용역 중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제외)이 해당발주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참여기술인의 비중(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또는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복건수를 1건당 0.2건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다. 해당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단, 평가대상자가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건수 1건을 0.5건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의 확인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조달청 계약자료로 평가한다.

마. 입찰공고서에 별도로 평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6.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배점</th><th>평가방법</th></tr>
<tr><td rowspan="3">사업책임
기술인</td><td>등급</td><td>0.8</td><td>
<table>
<tr><th>특급</th><th>고급</th><th>중급</th><th>초급</th></tr>
<tr><td>0.8</td><td>0.7</td><td>0.6</td><td>0.5</td></tr>
</table>
</td></tr>
<tr><td>경력</td><td>1</td><td>
<table>
<tr><th>15년이상</th><th>10년이상</th><th>6년이상</th><th>3년이상</th><th>3년미만</th></tr>
<tr><td>1</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td></tr>
<tr><td>유사용역
실적</td><td>1.2</td><td>
<table>
<tr><th>15년이상</th><th>10년이상</th><th>6년이상</th><th>3년이상</th><th>3년미만</th></tr>
<tr><td>1.2</td><td>1.1</td><td>1</td><td>0.9</td><td>0.8</td></tr>
</table>
</td></tr>
<tr><td rowspan="3">분야별책
임기술인</td><td>등급</td><td>0.8</td><td>
<table>
<tr><th>고급</th><th>중급</th><th>초급</th></tr>
<tr><td>0.8</td><td>0.7</td><td>0.6</td></tr>
</table>
</td></tr>
<tr><td>경력</td><td>1.5</td><td>
<table>
<tr><th>10년이상</th><th>8년이상</th><th>6년이상</th><th>4년이상</th><th>4년미만</th></tr>
<tr><td>1.5</td><td>1.3</td><td>1.1</td><td>0.9</td><td>0.7</td></tr>
</table>
</td></tr>
<tr><td>유사용역
실적</td><td>1.5</td><td>
<table>
<tr><th>10년이상</th><th>8년이상</th><th>6년이상</th><th>4년이상</th><th>4년미만</th></tr>
<tr><td>1.5</td><td>1.3</td><td>1.1</td><td>0.9</td><td>0.7</td></tr>
</table>
</td></tr>
<tr><td rowspan="3">분야별참
여기술인</td><td>등급</td><td>0.8</td><td>
<table>
<tr><th>중급</th><th>초급</th></tr>
<tr><td>0.8</td><td>0.7</td></tr>
</table>
</td></tr>
<tr><td>경력</td><td>1</td><td>
<table>
<tr><th>5년이상</th><th>4년이상</th><th>3년이상</th><th>2년이상</th><th>2년미만</th></tr>
<tr><td>1</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td></tr>
<tr><td>유사용역
실적</td><td>1</td><td>
<table>
<tr><th>5년이상</th><th>4년이상</th><th>3년이상</th><th>2년이상</th><th>2년미만</th></tr>
<tr><td>1</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td></tr>
<tr><td rowspan="2">참여기술
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td><td>교육훈련</td><td>0.2</td><td>-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1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td></tr>
<tr><td>전차용역</td><td>0.2</td><td>-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0.1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1명당: 0.1점
<table>
<tr><td rowspan="3">사업책임
기술인</td><td rowspan="3">0.1</td><td>용역완료
후3년이내</td><td>용역완료
후3~5년
이내</td><td>용역완료
후
5~10년이
내</td><td>용역완료
후
10년이상</td></tr>
<tr><td>0.1</td><td>0.06</td><td>0.02</td><td>0</td></tr>
<tr><td colspan="4">조사 또는 기본계획60%, 기본설계100%를 적용 후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 50%적용</td></tr>
<tr><td rowspan="3">분야별책
임기술인</td><td rowspan="3">0.1</td><td>용역완료
후
3년이내</td><td>용역완료
후
3~5년이
내</td><td>용역완료
후
5~10년이
내</td><td>용역완료
후
10년이상</td></tr>
<tr><td>0.1</td><td>0.06</td><td>0.02</td><td>0</td></tr>
<tr><td colspan="4">조사 또는 기본계획60%, 기본설계100%를 적용 후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 50%적용</td></tr>
</table>
</td></tr>
</table>

가. 등급평가

1)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부 고시)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력평가

1) 참여기술 분야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서 복무한 경력을 통칭한다.
2)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 발주자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예:'사업명'이 본사근무인 경우는 제외)하고 참여기간이 '월'단위로 기재된 경우 용역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로 평가한다.

※ 참여기간이 2018.1~2019.12인 경우 2018.1.31~2019.12.1로 평가한다.

다.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주공종분야 설계실적)

1)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주공종에 대한 설계용역(입찰공고서에 제시한 용역)을 수행한 기간으로 평가한다. 다만,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의 주공종분야가 해당용역의 주공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인정할 수 있다.(입찰공고 시 별도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발주처의 증명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설계의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한다.

※ 예 : aaa project, 000기지(이전)시설공사 등

4) 수탁기관 및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예: '사업명'이 본사근무인 경우

는 제외)하고 참여기간이 '월'단위로 기재된 경우 용역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로 평가한다.

※ 참여기간이 2018.1~2019.12인 경우 2018.1.31~2019.12.1로 평가한다.

라. 전차용역

1) 전차용역사업 참여기술인이 해당 설계용역의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용역의 수행정도(용역의 경과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따라 평가한다.
2) 전차용역이란 해당 설계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 즉,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계획, 기본설계용역 등을 말한다.
3) 해당 설계용역의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책임 기술인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사회적책임

가. 인력고용

1)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3)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4)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예시) '2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1년간 평균고용인원>

'18. 6월	'18. 7월	'18. 8월	'18. 9월	'18. 10월	'18. 11월	'18. 12월	'19. 1월	'19. 2월	'19. 3월	'19. 4월	'19. 5월
100	100	101	102	100	10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

'19. 6월	'19. 7월	'19. 8월	'19. 9월	'19. 10월	'19. 11월	'19. 12월	'20. 1월	'20. 2월	'20. 3월	'20. 4월	'20. 5월
0	0	2	1	0	1	1	0	1	1	1	0

* 직전년도 1년간 평균 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1+102+100+101+100+100+100+100+102+101)/12 = 100.5833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
  = 0+0+2+1+0+1+1+0+1+1+1+0 = 8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 고용율
  = 8/101 = 0.0792079..... = 7.9208%

나. 공정거래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 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3) 2019년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점을 적용한다.
4)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ㅇ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사실
   ㅇ 입찰참가자가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

하는 자료

ㅇ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조치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5)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2점을 넘지 않는다.

8. 평가 관련 신뢰도

가.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1) 사전접촉, 사전설명의 경우 평가위원 확인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2) 참여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 감점을 부여한다.
3) 공동입찰으로 입찰하여 구성원이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사에게도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5)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한다.

Ⅲ. 인터뷰 평가방법

1. 발표, 질의응답은 제안서 등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후 실시한다.
2.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따라 정하며, 발표는 사업책임기술인이 수행하고, 면접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별표3]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Ⅰ. 통합평가방식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수행능력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0.5	정성평가
		사업관리 운영체계	1	정성평가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0.5	정량평가
	【소계】		【2점】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1	정량평가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3	정성평가
		용역평가결과 심사	1	정량평가
	【소계】		【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3	정량평가
	【소계】		【3점】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	정성평가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10	정성평가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5	정성평가
	【소계】		【25점】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5	정성평가
		직원 투입 계획	5	정성평가
	【소계】		【10점】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20	정량평가
			35	정성평가
	【소계】		【55점】	
사회적 책임		인력고용(가점)	최대 +2	정량평가
		공정거래(감점)	최대 −2	정량평가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제안서 작성위반 등	최대 −10	정량평가
[합계]			[100점]	

Ⅱ. 2단계 평가방식

1.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관리역량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5	정성평가
		사업관리 운영체계	10	정성평가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5	정량평가
	【소계】		【20점】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10	정량평가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30	정성평가
		용역평가결과 심사	10	정량평가
	【소계】		【5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30	정량평가
	【소계】		【30점】	
계약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작성위반 등		최대 -5	정량평가
[합계]			[100점]	

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수행능력	기술보유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점수	10	
	【소계】		【10점】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	정성평가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10	정성평가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5	정성평가
	【소계】		【25점】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5	정성평가
		직원 투입 계획	5	정성평가
	【소계】		【10점】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20	정량평가
			35	정성평가
	【소계】		【55점】	
사회적 책임		인력고용(가점)	최대 +2	정량평가
		공정거래(감점)	최대 -2	정량평가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제안서 작성위반 등	최대 -10	정량평가
[합계]			[100점]	

[별표4]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Ⅰ.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table>
<tr><th>평가항목</th><th colspan="2">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평가방법 및 평가내용</th></tr>
<tr><td rowspan="5">관리역량</td><td colspan="2">품질보증 및 관리체계</td><td>5
<0.5></td><td>-정성평가
·해당용역 품질의 확보 및 향상 방안
·품질 관련 사고발생시 해결방안
·보유중인 품질 관련 방침, 절차, 방법 등 품질보증시스템</td></tr>
<tr><td colspan="2">사업관리 운영체계</td><td>10
<1></td><td>-정성평가
·해당용역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관리방안
·해당용역 수행 관련 대응 또는 지원시스템</td></tr>
<tr><td rowspan="3">신용도</td><td>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td><td rowspan="2">3.5
<0.35>
</td><td>-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td></tr>
<tr><td>벌점</td><td>-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table>
<tr><th>누계평균 벌점</th><th>1점 이상 2점 미만</th><th>2점 이상 5점 미만</th><th>5점 이상 10점 미만</th><th>10점 이상 15점 미만</th><th>15점 이상 20점 미만</th><th>20점 이상</th></tr>
<tr><td>점수 (감점)</td><td>0.1</td><td>0.3</td><td>0.5</td><td>1</td><td>1.5</td><td>2.5</td></tr>
</table></td></tr>
<tr><td colspan="2">재정상태 건실도</td><td>1.5
<0.15>
</td><td>-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table>
<tr><td>회사채</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 이하</td><td>미제출</td></tr>
<tr><td>기업어음</td><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
<tr><td>기업신용</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
<tr><td>점수</td><td>1.5</td><td>1.4</td><td>1.1</td><td>0</td></tr>
</table></td></tr>
<tr><td>기술역량</td><td>과업에 대한 전문성</td><td>개발·활용 실적</td><td>3
<0.3></td><td>-「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 colspan="2">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평가방법 및 평가내용</th></tr>
<tr><td></td><td colspan="2"></td><td></td><td>
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기준점수</th></tr>
<tr><td>개발실적</td><td>건설신기술</td><td>1점/건당</td></tr>
<tr><td rowspan="2">활용실적</td><td>건설신기술</td><td>0.5점/건당</td></tr>
<tr><td>건설기술에 관한 특허</td><td>0.3점/건당</td></tr>
</table>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5">가 중 치</th></tr>
<tr><th>1.0</th><th>0.9</th><th>0.8</th><th>0.7</th><th>0.6</th></tr>
<tr><td>실적건수
(건)</td><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r>
<tr><td>실적금액
(억원)</td><td>20이상</td><td>20미만
18이상</td><td>18미만
16이상</td><td>16미만
14이상</td><td>14미만
12이상</td></tr>
</table>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table>
<tr><th>구 분</th><th>5년미만</th><th>5년이상
10년미만</th><th>10년이상
20년미만</th></tr>
<tr><td>인정률</td><td>100%</td><td>80%</td><td>60%</td></tr>
</table>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산정한 점수를 합산
</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 colspan="2">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평가방법 및 평가내용</th></tr>
<tr><td rowspan="3"></td><td></td><td>투자
실적</td><td>7
<0.7></td><td>-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로 평가
<table><tr><td>구분</td><td>1.50% 이상</td><td>1.50% 미만 1.25% 이상</td><td>1.25% 미만 1.00% 이상</td><td>1.00% 미만 0.75% 이상</td><td>0.75% 미만 0.50% 이상</td><td>0.5% 미만</td></tr><tr><td>점수</td><td>7</td><td>6.8</td><td>6.6</td><td>6.4</td><td>6.2</td><td>6</td></tr></table></td></tr>
<tr><td colspan="2">과업내용에 대한 경험</td><td>30
<3></td><td>-정성평가
·해당용역과 유사한 대표실적의 문제 해결사례
·해당용역과 유사한 실적경험에 근거한 해당용역의 핵심 고려사항</td></tr>
<tr><td colspan="2">용역평가결과 심사</td><td>10
<1></td><td>-「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용역평가결과로 평가
· 용역평가점수=∑(용역실적금액×해당용역 평가점수)/∑용역실적금액
<table><tr><td>구분</td><td>89점 이상</td><td>89점 미만 87점 이상</td><td>87점 미만 85점 이상</td><td>85점 미만 83점 이상</td><td>83점 미만</td></tr><tr><td>점수</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table></td></tr>
<tr><td>유사용역 수행실적</td><td colspan="2">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 실적</td><td>30
<3></td><td>-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으로 평가</td></tr>
<tr><td>평가 관련 신뢰도</td><td colspan="2">제안서 작성위반</td><td>-5</td><td><table><tr><td>감점사유</td><td>감점</td></tr><tr><td>제한규격 위반</td><td>1쪽당 0.1점</td></tr><tr><td>기준쪽수 초과</td><td>1쪽당 0.1점</td></tr><tr><td>칼라 사용</td><td>1쪽당 0.1점</td></tr><tr><td>애니메이션 및 음향효과 사용(PPT)</td><td>1슬라이드당 0.1점</td></tr></table></td></tr>
</table>

※ < >는 통합평가방식 용역에 적용하는 배점으로, 우선 평가방법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후 10%로 환산(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반영.

Ⅱ. 통합평가방식 및 2단계 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보유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점수		10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점수를 10점으로 환산 적용
사업수행 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	-정성평가 ·해당용역 사업 특성, 발주청의 요구조건 등에 대한 이해수준 ·해당용역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추진방안 ·해당용역 수행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10	-정성평가 ·해당용역 수행조직 운영방안 ·해당용역 수행조직 구성 및 인력편성 ·공동도급시 참여업체간 업무협조 체계 ·전문가 활용 계획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5	-정성평가 ·해당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내용서 개선사항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5	-정성평가 ·해당용역 수행을 위한 공정관리계획 ·용역기간 변경 사유 발생시 조정방안
	직원 투입 계획		5	-정성평가 ·해당용역 수행 인력편성 ·조직 구성원의 장점과 활용방안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참여 기술인 수행 능력	20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등을 평가
		핵심 기술인 업무 수행의 적합성	15	-정성평가 ·유사용역 수행 경험의 성과 및 해당용역과 유사성
		핵심 기술인 업무 수행의 창의성	10	-정성평가 ·전문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시 문제해결 사례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 사례 ·해당용역 수행시 최신 설계기법 및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방안
		인터뷰	10	-정성평가 ·용역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리더십, 능력 등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평가방법</th></tr>
<tr><td rowspan="2">사회적
책임</td><td>인력고용</td><td>+2</td><td>-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에 따른 가점
<table>
<tr><td>비율(%)</td><td>1%이상
2%미만</td><td>2%이상
3%미만</td><td>3%이상</td></tr>
<tr><td>가산점수</td><td>1</td><td>1.5</td><td>2</td></tr>
</table></td></tr>
<tr><td>공정거래</td><td>-2</td><td>-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른 감점
<table>
<tr><th>행위 유형</th><th>조치정도</th></tr>
<tr><td>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td><td>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td></tr>
<tr><td>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td><td>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td></tr>
</table></td></tr>
<tr><td rowspan="2">평가 관련
신뢰도</td><td>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 우려 사항</td><td rowspan="2">-10</td><td>
<table>
<tr><th>감점사유</th><th>감점</th><th>감점기간</th></tr>
<tr><td>입찰공고 이후 평가위원 사전접촉</td><td>1</td><td>해당평가</td></tr>
<tr><td>입찰공고 이후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사전설명</td><td>2</td><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td></tr>
<tr><td>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1년 이내에 평가 참여 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td><td>2</td><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td></tr>
<tr><td>평가 관련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래행위 또는 부정행위 사실이 있는 경우</td><td>10</td><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td></tr>
</table></td></tr>
<tr><td>제안서
작성위반</td><td>
<table>
<tr><th>감점사유</th><th>감점</th></tr>
<tr><td>제한규격 위반</td><td>1쪽당 0.2점</td></tr>
<tr><td>기준쪽수 초과</td><td>1쪽당 0.2점</td></tr>
<tr><td>칼라 사용</td><td>1쪽당 0.2점</td></tr>
<tr><td>애니메이션 및 음향효과 사용(PPT)</td><td>1슬라이드당
0.2점</td></tr>
</table></td></tr>
</table>

[부표] 종합기술제안서 등 평가 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명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 설계용역의 업무중복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의 확인서,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자료, 조달청 계약자료 평가함(단, 건축설계용역의 중복참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또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된 조달청 계약자료로만 평가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평가 시 해당공사규모는 입찰공고서의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Ⅱ. 정량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1)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대해 적용하며 각 관련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벌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 평균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 과업에 대한 전문성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7조 및「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5)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

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용역평가결과 심사

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등재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용역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text{용역평가점수} = \frac{\sum_{i=1}^{n}(\text{용역실적금액}i \times \text{해당용역평가점수}i)}{\sum_{i=1}^{n}\text{용역실적금액}i}$$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참여사별 점수에 참여사별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 점수로 기입한다.

다.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값(8점, 통합평가방식의 경우 0.8점)을 부여한다.

4.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포함)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건설사업관리비×{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일수)/전체 건설사업관리기간(일수)}]

· 수행중인 경우 :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3.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5.1이면, 공고일 기준 최종확인 또는 관리된 기성실적을 인정하며, 적용 기성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2.3.2 부터 2014.5.1 범위에서 인정 금액계상[전체 기성 건설사업관리비×{적용 기성 건설사업관리기간(일수)/전체 기성 건설사업관리기간(일수)}]

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각 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최종 확인 된 실적만 인정한다.

라.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마. 유사용역수행실적 산정방법 및 점수는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평가방법 이외의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평가기준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1) 산정방법

○ 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 단, 설계용역실적 인정한도는 해당공사규모별로 만점(10점) 실적의 70%까지로 한다.

※ 예시) 해당공사규모가 100억원인 건축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시 평가대상자의 설계실적이 300억원인 경우 설계용역의 인정실적은 147억원(300억원×0.7×0.7)과 인정한도인 105억원(100억원공사규모의 만점실

적,150억원×0.7) 중 작은 값인105억원 적용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1.0

2) 해당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실적별 점수

해당공사규모	건설기술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1,000억원이상	250이상	250미만 210이상	210미만 170이상	170미만 130이상	130미만 90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90이상	190미만 160이상	160미만 130이상	130미만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30이상	130미만 110이상	110미만 90이상	9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65이상	65미만 50이상	50미만 35이상	35미만 20이상
100억원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	-
점수	30	27	24	21	18

3) 해당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 이외의 공사(토목, 설비 등)인 경우 실적별 점수

해당공사규모	건설기술용역 수행실적 (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이상 100미만	100이상 90이상	90미만 45이상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5이상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15이상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7이상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
점 수	30	27	24	21	18

4) 해당공사규모별 유사용역수행실적이 최저규모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

5.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배점</th><th>평가방법</th></tr>
<tr><td rowspan="3">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td><td>해당분야 경력</td><td>5</td><td>
<table>
<tr><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5">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단위 : 년)</td></tr>
<tr><td>1,000억원이상</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
<tr><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td>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td></tr>
<tr><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td>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td></tr>
<tr><td>300억원미만</td><td>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td></tr>
<tr><td>점수</td><td>5</td><td>4.5</td><td>4</td><td>3.5</td><td>3</td></tr>
</table>
</td></tr>
<tr><td>직무분야 실적</td><td>3</td><td>
<table>
<tr><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5">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단위 : 년)</td></tr>
<tr><td>300억원이상</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
<tr><td>300억원미만</td><td>12이상</td><td>12미만 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td></tr>
<tr><td>점수</td><td>3</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
</td></tr>
<tr><td>교육훈련 및 기술자격</td><td>0.5</td><td>-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3점), 1주이상 2주미만(0.2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3점), 기사(0.2점), 산업기사(0.1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td></tr>
<tr><td>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td><td>해당분야 경력</td><td>5</td><td>
<table>
<tr><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5">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단위 : 월)</td></tr>
<tr><td>300억원 이상</td><td>48이상</td><td>48미만 42이상</td><td>42미만 36이상</td><td>36미만 30이상</td><td>30미만</td></tr>
<tr><td>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td><td>36이상</td><td>36미만 28이상</td><td>28미만 20이상</td><td>20미만 12이상</td><td>12미만</td></tr>
<tr><td>100억원 미만</td><td>24이상</td><td>24미만 18이상</td><td>18미만 12이상</td><td>12미만 6이상</td><td>6미만</td></tr>
<tr><td>점수</td><td>5</td><td>4.5</td><td>4</td><td>3.5</td><td>3</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td><td>직무분야
실적</td><td>3</td><td>
<table>
<tr><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5">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단위 : 년)</td></tr>
<tr><td>300억원 이상</td><td>12이상</td><td>12미만
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td></tr>
<tr><td>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td><td>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td></tr>
<tr><td>100억원 미만</td><td>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
2이상</td><td>2미만</td></tr>
<tr><td>점수</td><td>3</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
</td></tr>
<tr><td>교육훈련</td><td>0.5</td><td>-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td></tr>
<tr><td rowspan="3">기술지원
기술인</td><td>해당분야
경력</td><td>1.5</td><td>
<table>
<tr><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5">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단위 : 년)</td></tr>
<tr><td>1,000억원이상</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
<tr><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td>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td></tr>
<tr><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td>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td></tr>
<tr><td>300억원미만</td><td>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td></tr>
<tr><td>점수</td><td>1.5</td><td>1.2</td><td>0.9</td><td>0.6</td><td>0.3</td></tr>
</table>
</td></tr>
<tr><td>직무분야
실적</td><td>1</td><td>
<table>
<tr><td>직무
분야</td><td colspan="5">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년)</td></tr>
<tr><td>구분</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
<tr><td>점수</td><td>1</td><td>0.9</td><td>0.8</td><td>0.7</td><td>0.6</td></tr>
</table>
</td></tr>
<tr><td>교육훈련
및
기술자격</td><td>0.5</td><td>-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명에 한정하여 적용</td></tr>
</table>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시공단계에 참여하는 상주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

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2)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수(입찰공고시 명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이상 및 기술지원기술인 1명 등 총 5명 이내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한다. 단, 다음의 경우 평가대상 기술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ㅇ 수요기관에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수를 조정 요청하는 경우
- ㅇ 대형 또는 특수사업으로서 타법령에 따라 배치된 기술인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ㅇ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1)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시험,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도시·교통, 환경 등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공사감독,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세부기준

1)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공사의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 예시) aaa project, 000 기지(이전)시설공사 등
2) 군경력인 경우 직무분야(건축, 토목 등)가 명확하게 적혀 있고,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 주요경력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3) 주택공사 근무경력 중 00지사는 경력인정에서 제외되며, 00사업단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4) 공장 건설업무는 건축 및 토목기술인인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며, 전기 및 기계기술인은 건축물공사로 명확히 표시 되지 않은 경우 공장시설물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5) 담당업무가 2개 이상 명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예시) ①계획, 조사설계, 견적 ②견적, 현장대리인 ③감리 및 현장대리인 ④설계, 감독 ⑤설계, 견적 ⑥시공, 공무 ⑦ 설계, 감리
6) 공항공사인 경우 청사 또는 신축 등 건축공사가 명확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7) 사업명이 다수로 표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8)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분야의 건설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한 경우에는 이

를 직무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9)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한다.

※ 예시) 김사장, 이사장주택 외 7건 : 감리기간 '05.2.1-'05.12,31 등은 평가제외

사.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6. 사회적책임

가. 인력고용

1)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3)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4)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예시) '2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1년간 평균고용인원>

'18. 6월	'18. 7월	'18. 8월	'18. 9월	'18. 10월	'18. 11월	'18. 12월	'19. 1월	'19. 2월	'19. 3월	'19. 4월	'19. 5월
100	100	101	102	100	10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

'19. 6월	'19. 7월	'19. 8월	'19. 9월	'19. 10월	'19. 11월	'19. 12월	'20. 1월	'20. 2월	'20. 3월	'20. 4월	'20. 5월
0	0	2	1	0	1	1	0	1	1	1	0

* 직전년도 1년간 평균 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1+102+100+101+100+100+100+100+102+101)/12 = 100.5833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
  = 0+0+2+1+0+1+1+0+1+1+1+0 = 8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 고용율
  = 8/101 = 0.0792079..... = 7.9208%

나. 공정거래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 진행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3) 2019년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점을 적용한다.
4)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ㅇ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사실
   ㅇ 입찰참가자가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ㅇ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조치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5)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

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2점을 넘지 않는다.

7. 평가 관련 신뢰도

가.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1) 사전접촉, 사전설명의 경우 평가위원 확인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2) 참여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 감점을 부여한다.
3) 공동입찰으로 입찰하여 구성원이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사에게도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5)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한다.

Ⅲ. 인터뷰 평가방법

1. 발표, 질의응답은 제안서 등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후 실시한다.

2.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따라 정하며, 발표는 책임기술인이 수행하고, 면접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별표5]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Ⅰ. 통합평가방식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수행능력	관리역량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2	정량평가
	【소계】		【2점】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1	정량평가
		용역평가결과 심사	1	정량평가
	【소계】		【2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6	정량평가
	【소계】		【6점】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	정성평가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10	정성평가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5	정성평가
	【소계】		【25점】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5	정성평가
		직원 투입 계획	5	정성평가
	【소계】		【10점】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40	정량평가
			15	정성평가
	【소계】		【55점】	
사회적 책임		인력고용(가점)	최대 +2	정량평가
		공정거래(감점)	최대 −2	정량평가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제안서 작성위반 등	최대 −10	정량평가
[합계]			[100점]	

Ⅱ. 2단계 평가방식

1.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관리역량	신용도 (영업정지, 벌점, 재정건실도)	20	정량평가
	【소계】		【20점】	
	기술역량	과업에 대한 전문성	10	정량평가
		용역평가결과 심사	10	정량평가
	【소계】		【2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60	정량평가
	【소계】		【60점】	
계약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작성위반 등		최대 -5	정량평가
[합계]			[100점]	

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수행능력	기술보유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점수	10	
	【소계】		【10점】	
	사업수행방법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	정성평가
		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10	정성평가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5	정성평가
	【소계】		【25점】	
	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	작업계획	5	정성평가
		직원 투입 계획	5	정성평가
	【소계】		【10점】	
	전문가 역량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40	정량평가
			15	정성평가
	【소계】		【55점】	
사회적 책임		인력고용(가점)	최대 +2	정량평가
		공정거래(감점)	최대 -2	정량평가
평가 관련 신뢰도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우려 사항, 제안서 작성위반 등	최대 -10	정량평가
[합계]			[100점]	

[별표6]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Ⅰ.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table>
<tr><th>평가항목</th><th colspan="2">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평가방법 및 평가내용</th></tr>
<tr><td rowspan="3">관리역량</td><td rowspan="3">신용도</td><td>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td><td rowspan="2">16
<1.6></td><td>-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td></tr>
<tr><td>벌점</td><td>-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table>
<tr><td>누계평균 벌점</td><td>1점 이상 2점 미만</td><td>2점 이상 5점 미만</td><td>5점 이상 10점 미만</td><td>10점 이상 15점 미만</td><td>15점 이상 20점 미만</td><td>20점 이상</td></tr>
<tr><td>점수 (감점)</td><td>0.2</td><td>0.5</td><td>1</td><td>2</td><td>3</td><td>5</td></tr>
</table></td></tr>
<tr><td>재정상태 건실도</td><td>4
<0.4></td><td>-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table>
<tr><td>회사채</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 이하</td><td>미제출</td></tr>
<tr><td>기업어음</td><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d>미제출</td></tr>
<tr><td>기업신용</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미제출</td></tr>
<tr><td>점수</td><td>4</td><td>3.5</td><td>3</td><td>0</td></tr>
</table></td></tr>
<tr><td>기술역량</td><td>과업에 대한 전문성</td><td>개발·활용 실적</td><td>3
<0.3></td><td>-「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 colspan="2">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평가방법 및 평가내용</th></tr>
<tr><td rowspan="3"></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기준점수</th></tr>
<tr><td>개발실적</td><td>건설신기술</td><td>1점/건당</td></tr>
<tr><td rowspan="2">활용실적</td><td>건설신기술</td><td>0.5점/건당</td></tr>
<tr><td>건설기술에 관한 특허</td><td>0.3점/건당</td></tr>
</table>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5">가 중 치</th></tr>
<tr><th>1.0</th><th>0.9</th><th>0.8</th><th>0.7</th><th>0.6</th></tr>
<tr><td>실적건수
(건)</td><td>5이상</td><td>5미만
4이상</td><td>4미만
3이상</td><td>3미만
2이상</td><td>2미만
1이상</td></tr>
<tr><td>실적금액
(억원)</td><td>20이상</td><td>20미만
18이상</td><td>18미만
16이상</td><td>16미만
14이상</td><td>14미만
12이상</td></tr>
</table>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table>
<tr><th>구 분</th><th>5년미만</th><th>5년이상
10년미만</th><th>10년이상
20년미만</th></tr>
<tr><td>인정률</td><td>100%</td><td>80%</td><td>60%</td></tr>
</table>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산정한 점수를 합산</td></tr>
<tr><td>투자
실적</td><td>7
<0.7></td><td>-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로 평가
<table>
<tr><td>구분</td><td>1.50%
이상</td><td>1.50%
미만
1.25%
이상</td><td>1.25%
미만
1.00%
이상</td><td>1.00%
미만
0.75%
이상</td><td>0.75%
미만
0.50%
이상</td><td>0.5%
미만</td></tr>
<tr><td>점수</td><td>7</td><td>6.8</td><td>6.6</td><td>6.4</td><td>6.2</td><td>6</td></tr>
</table></td></tr>
<tr><td colspan="2">용역평가결과</td><td>10</td><td>-「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용역평가결과로 평가</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평가방법 및 평가내용</th></tr>
<tr><td></td><td>심사</td><td><1></td><td>· 용역평가점수=∑(용역실적금액×해당용역 평가점수)/∑용역실적금액
<table>
<tr><td>구분</td><td>89점 이상</td><td>89점 미만 87점 이상</td><td>87점 미만 85점 이상</td><td>85점 미만 83점 이상</td><td>83점 미만</td></tr>
<tr><td>점수</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able></td></tr>
<tr><td>유사용역 수행실적</td><td>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 실적</td><td>60 <6></td><td>-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으로 평가</td></tr>
<tr><td>평가 관련 신뢰도</td><td>제안서 작성위반</td><td>-5</td><td>
<table>
<tr><td>감점사유</td><td>감점</td></tr>
<tr><td>제한규격 위반</td><td>1쪽당 0.1점</td></tr>
<tr><td>기준쪽수 초과</td><td>1쪽당 0.1점</td></tr>
<tr><td>칼라 사용</td><td>1쪽당 0.1점</td></tr>
<tr><td>애니메이션 및 음향효과 사용(PPT)</td><td>1슬라이드당 0.1점</td></tr>
</table></td></tr>
</table>

※ < >는 통합평가방식 용역에 적용하는 배점으로, 우선 평가방법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후 10%로 환산(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반영.

Ⅱ. 통합평가방식 및 2단계 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table>
<tr><th>평가항목</th><th colspan="2">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평가방법</th></tr>
<tr><td>기술보유</td><td colspan="2">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점수</td><td>10</td><td>-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점수를 10점으로 환산 적용</td></tr>
<tr><td rowspan="3">사업수행 방법</td><td colspan="2">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td><td>10</td><td>-정성평가
·해당용역 사업 특성, 발주청의 요구조건 등에 대한 이해수준
·해당용역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추진방안
·해당용역 수행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td></tr>
<tr><td colspan="2">용역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td><td>10</td><td>-정성평가
·해당용역 수행조직 운영방안
·해당용역 수행조직 구성 및 인력편성
·공동도급시 참여업체간 업무협조 체계
·전문가 활용 계획</td></tr>
<tr><td colspan="2">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td><td>5</td><td>-정성평가
·해당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내용서 개선사항</td></tr>
<tr><td rowspan="2">작업 및 직원 투입 계획</td><td colspan="2">작업계획</td><td>5</td><td>-정성평가
·해당용역 수행을 위한 공정관리계획
·용역기간 변경 사유 발생시 조정방안</td></tr>
<tr><td colspan="2">직원 투입 계획</td><td>5</td><td>-정성평가
·해당용역 수행 인력편성
·조직 구성원의 장점과 활용방안</td></tr>
<tr><td rowspan="3">전문가 역량</td><td rowspan="3">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td><td>참여 기술인 수행 능력</td><td>40</td><td>-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등을 평가</td></tr>
<tr><td>핵심 기술인 업무 수행의 적합성 ·창의성</td><td>5</td><td>-정성평가
·유사용역 수행 경험의 성과 및 해당용역과 유사성
·전문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시 문제해결 사례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 사례
·해당용역 수행시 최신 설계기법 및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방안</td></tr>
<tr><td>인터뷰</td><td>10</td><td>-정성평가
·공사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리더십, 능력 등</td></tr>
<tr><td>사회적 책임</td><td colspan="2">인력고용</td><td>+2</td><td>-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에 따른 가점
<table>
<tr><td>비율(%)</td><td>1%이상 2%미만</td><td>2%이상 3%미만</td><td>3%이상</td></tr>
<tr><td>가산점수</td><td>1</td><td>1.5</td><td>2</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평가항목</th><th>배점</th><th>평가방법</th></tr>
<tr><td></td><td>공정거래</td><td>-2</td><td>-공정거래관련법 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른 감점
<table>
<tr><th>행위 유형</th><th>조치정도</th></tr>
<tr><td>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td><td>시정명령(0.2점), 과징금 10억미만(0.25점), 과징금 10억이상(0.3점), 법인고발(0.4점), 법인 및 개인고발(0.5점)</td></tr>
<tr><td>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td><td>시정명령(0.15점), 과징금(0.2점), 고발(0.3점)</td></tr>
</table></td></tr>
<tr><td rowspan="2">평가 관련 신뢰도</td><td>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 우려 사항</td><td rowspan="2">-10</td><td>
<table>
<tr><th>감점사유</th><th>감점</th><th>감점기간</th></tr>
<tr><td>입찰공고 이후 평가위원 사전접촉</td><td>1</td><td>해당평가</td></tr>
<tr><td>입찰공고 이후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사전설명</td><td>2</td><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td></tr>
<tr><td>낙찰자가 사전신고 없이 1년 이내에 평가 참여 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td><td>2</td><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td></tr>
<tr><td>평가 관련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래행위 또는 부정행위 사실이 있는 경우</td><td>10</td><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td></tr>
</table></td></tr>
<tr><td>제안서 작성위반</td><td>
<table>
<tr><th>감점사유</th><th>감점</th></tr>
<tr><td>제한규격 위반</td><td>1쪽당 0.2점</td></tr>
<tr><td>기준쪽수 초과</td><td>1쪽당 0.2점</td></tr>
<tr><td>칼라 사용</td><td>1쪽당 0.2점</td></tr>
<tr><td>애니메이션 및 음향효과 사용(PPT)</td><td>1슬라이드당 0.2점</td></tr>
</table></td></tr>
</table>

[부표] 종합기술제안서 등 평가 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별표4]의 일반사항과 동일하다.

Ⅱ. 정량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별표4]의 정량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과 동일하다.

2. 다만,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과 참여기술인 수행능력의 배점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배점

1) 해당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실적별 점수

해당공사규모	건설기술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1,000억원이상	250이상	250미만 210이상	210미만 170이상	170미만 130이상	130미만 90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90이상	190미만 160이상	160미만 130이상	130미만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30이상	130미만 110이상	110미만 90이상	9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65이상	65미만 50이상	50미만 35이상	35미만 20이상
100억원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	-
점수	60	54	48	42	36

2) 해당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 이외의 공사(토목, 설비 등)인 경우 실적별 점수

해당공사규모	건설기술용역 수행실적 (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이상 100미만	100이상 90이상	90미만 45이상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5이상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15이상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7이상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
점 수	60	54	48	42	36

나.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배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배점</th><th>평가방법</th></tr>
<tr><td rowspan="3">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td><td>해당분야 경력</td><td>10</td><td>
<table>
<tr><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5">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단위 : 년)</td></tr>
<tr><td>1,000억원이상</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
<tr><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td>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td></tr>
<tr><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td>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td></tr>
<tr><td>300억원미만</td><td>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td></tr>
<tr><td>점수</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able>
</td></tr>
<tr><td>직무분야 실적</td><td>6</td><td>
<table>
<tr><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5">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단위 : 년)</td></tr>
<tr><td>300억원이상</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
<tr><td>300억원미만</td><td>12이상</td><td>12미만
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td></tr>
<tr><td>점수</td><td>6</td><td>5.4</td><td>4.8</td><td>4.2</td><td>3.6</td></tr>
</table>
</td></tr>
<tr><td>교육훈련 및 기술자격</td><td>1</td><td>-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td></tr>
</table>

<table>
<tr><td rowspan="3">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td><td>해당분야 경력</td><td>10</td><td>
<table>
<tr><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5">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단위 : 월)</td></tr>
<tr><td>300억원 이상</td><td>48이상</td><td>48미만
42이상</td><td>42미만
36이상</td><td>36미만
30이상</td><td>30미만</td></tr>
<tr><td>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td><td>36이상</td><td>36미만
28이상</td><td>28미만
20이상</td><td>20미만
12이상</td><td>12미만</td></tr>
<tr><td>100억원 미만</td><td>24이상</td><td>24미만
18이상</td><td>18미만
12이상</td><td>12미만
6이상</td><td>6미만</td></tr>
<tr><td>점수</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
</table>
</td></tr>
<tr><td>직무분야 실적</td><td>6</td><td>
<table>
<tr><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5">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단위 : 년)</td></tr>
<tr><td>300억원 이상</td><td>12이상</td><td>12미만
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td></tr>
<tr><td>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td><td>10이상</td><td>10미만
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td></tr>
<tr><td>100억원 미만</td><td>8이상</td><td>8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
2이상</td><td>2미만</td></tr>
<tr><td>점수</td><td>6</td><td>5.4</td><td>4.8</td><td>4.2</td><td>3.6</td></tr>
</table>
</td></tr>
<tr><td>교육훈련</td><td>1</td><td>-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1.0점), 1주이상 2주미만(0.5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td></tr>
<tr><td rowspan="3">기술지원기술인</td><td>해당분야 경력</td><td>3</td><td>
<table>
<tr><td>해당공사규모</td><td colspan="5">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단위 : 년)</td></tr>
<tr><td>1,000억원이상</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
<tr><td>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td><td>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td></tr>
<tr><td>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td><td>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td></tr>
<tr><td>300억원미만</td><td>9이상</td><td>9미만
7이상</td><td>7미만
5이상</td><td>5미만
3이상</td><td>3미만</td></tr>
<tr><td>점수</td><td>3</td><td>2.7</td><td>2.4</td><td>2.1</td><td>1.8</td></tr>
</table>
</td></tr>
<tr><td>직무분야 실적</td><td>2</td><td>
<table>
<tr><td>직무분야</td><td colspan="5">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단위 : 년)</td></tr>
<tr><td>구분</td><td>15이상</td><td>15미만
13이상</td><td>13미만
11이상</td><td>11미만
9이상</td><td>9미만</td></tr>
<tr><td>점수</td><td>2</td><td>1.8</td><td>1.6</td><td>1.4</td><td>1.2</td></tr>
</table>
</td></tr>
<tr><td>교육훈련 및 기술자격</td><td>1</td><td>-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명에 한정하여 적용</td></tr>
</table>

Ⅲ. 인터뷰 평가방법

1. 발표, 질의응답은 제안서 등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후 실시한다.
2.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따라 정하며, 발표는 책임기술인이 수행하고, 면접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별표7] 종합심사점수 산정 및 입찰가격 평점 산식

Ⅰ. 종합심사점수 산정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가중치
계			100(%)
기술능력 평가	본문 제7조에 따른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적용	100	80(%)
입찰가격 평가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적용 : 아래 2호	100	20(%)

※ 종합심사 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중치 + 입찰가격 평가점수×가중치

※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술능력 80~95%, 입찰가격 20~5% 범위에서 조정 가능

Ⅱ. 입찰가격 평가점수

1.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해당입찰가격}}\right)$$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right) + 3 \times \left(\frac{\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해당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추정가격의60\%상당가격}}\right)$$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8] 기술적이행능력 평가,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시 평가등급 배분 및 평정방법

참여업체수	S	A	B	C	D
2	1	1	-	-	-
3	1	1	1	-	-
4	1	1	1	1	-
5	1	1	1	1	1
6	1	1	1	2	1
7	1	1	2	2	1
8	1	1	2	2	2
9	1	1	2	3	2
10	1	1	3	3	2

※ 참여업체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업체수에 대한 등급 배분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Ⅰ.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1. 평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에 S 등급을 부여하고, 차순위 업체는 등급별 배분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

2. S등급은 평가항목별 배점의 만점을 부여하고, A, B, C, D 등급에는 차례로 차등폭 만큼 차감된 점수를 부여(예: 차등폭이 10%인 경우 A등급은 배점×0.9, B등급은 배점×0.8, C등급은 배점×0.7, D등급은 배점×0.6)

Ⅱ. 위원별 차등평가

1. 평가항목별로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별로 업체별 순위를 정한 후, 업체의 순위에 따라 등급별 배분표에 따른 등급을 부여

2. S등급에는 해당업체가 획득한 점수를 그 업체의 기술점수로 하고, A, B, C, D 등급에는 차례로 차등폭 만큼 차감된 점수를 부여(예: 차등폭이 10%인 경우 A등급은 S등급 점수 - 배점×0.1, B등급은 S등급 점수 - 배점×0.2, C등급은 S등급 점수 - 배점×0.3, D등급은 S등급 점수 - 배점×0.4)

3. 총점 차등(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시 적용)

가. 정량평가 점수, 가·감점 점수(사회적 책임, 평가 관련 신뢰도) 및 평가항목별, 위원별 차등된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산정)하여 업체의 순위 결정

나. 총점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총점의 단순 합산이 높은 자(100점을 초과하는 점수 포함),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높은 순위 부여

다. 1위 업체 점수는 총점을 그대로 부여하고, 차순위 업체에게는 1위 업체 점수를 기준으로 1%씩 차감하여 최종 점수를 부여

라. 최종 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별지1]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요령(정성평가용)

Ⅰ. 분량

1.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는 10페이지 이내(2단계 평가방식에 한함)로 작성한다.

2. 종합기술제안서는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인 용역은 30페이지 이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용역은 4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3.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시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요약, 간지, 핵심기술인 이력서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Ⅱ. 구성 및 편집

1.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종합기술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요약(종합기술제안서만 해당되며,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나. 목차
   다. 본문
   라. 핵심기술인 이력서(종합기술제안서만 해당)

2. 본문의 구성은 평가항목에 따라 장으로 구분하고, 세부평가항목별로 절을 구분한다.

3.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4. 가급적 서술식으로 작성하고, 도표, 이미지 등은 서술 내용에 대한 근거 제시나 부연 설명 등 보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본문의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평가항목) : 제 1 장. 관리역량

※ 글씨크기 : 17~19,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나. 절(세부평가항목) : 1.1.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 글씨크기 : 13~15,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다. 세부 구성(작성자 자율 구성) : 1.1.1. 품질보증

※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라. 본문 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마.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 : 작성자 자율구성 (글씨크기 : 자율구성, 글씨 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바. 평가항목 중 전문가역량은 핵심기술인 이력서로 평가하므로 본문에서 제외한다.

6. 전문가역량 평가를 위한 핵심기술인 이력서는 양식(서식3)에 따라 1인당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설계 등 용역은 사업책임기술인 1인, 핵심공종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 등 총2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핵심공종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등 총2인이 작성)

7. 문서 편집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297mm

나.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매는 A4 규격 2매로 산정

다. 줄간격 : 160%

라. 글씨색상 : 흑색

마.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

바.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사.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8. 발표자료
가.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며 가로방향만 인정한다.
나. 핵심보고서를 발표자료 형식으로 단순 변환하여 작성하며, 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하지 않는다.

9. 제출도서의 목록
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종합기술제안서
나. 발표자료(파워포인트 형식)
다. 종합기술제안서 등이 저장된 CD
라. 청렴서약서
마. 그 밖에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Ⅲ. 인쇄 및 제본

1. 재질
가.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나. 본문 : 백상지 80g/㎡, 양면 인쇄
다.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 (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2.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3.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Ⅳ.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제안서 작성지침(참고용)

1.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가. 해당용역 품질의 확보 및 향상 방안

1) 세부추진단계별 성과의 품질확보 방안을 기술한다.
2) 품질확보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 활용방안을 기술한다.

나. 품질 관련 사고발생 시 해결방안

1) 의견수렴 불충분에 따른 민원 등 발생시 대책을 기술한다.
2) 측량, 토질조사 미흡 등에 따른 설계변경 필요시 대책을 기술한다.
3) 공동도급 참여시 공동도급사(분담이행사포함) 부도, 파산,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할 경우 대책을 기술한다.

다. 보유중인 품질관련, 방침, 절차, 방법 등 품질보증시스템

1) 설계 오류 최소화를 위한 내부 검증, 예방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한다.
2) 회사가 보유중인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사업관리 운영체계

가. 해당용역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관리방안

1) 해당용역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2) 발주청, 지반조사업체, 측량업체 등과 협업체계 운영방안을 기술한다.
3) 공동도급시 참여사별 역할, 업무조정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해당용역 수행 관련 대응 또는 지원시스템

1) 해당용역과 관련된 핵심전문가 보유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2) 해당용역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와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대응 또는 지원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한다.

3.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가. 해당용역과 유사한 대표실적의 문제 해결사례

1) 해당용역과 유사한 실적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문제와 해결한 사례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해당용역과 유사한 실적경험에 근거한 해당용역의 핵심 고려사항

1) 해당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을 유사 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한다.

4.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가. 해당용역 사업 특성, 발주청의 요구조건 등에 대한 이해수준

1) 해당용역의 사회적·환경적·경제적·기술적 특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해당용역의 주변환경 및 입지여건, 지형적 특성 등을 통해 용역 수행시 주안점, 유의사항 등을 기술한다.

3) 발주청의 요구조건과 해당용역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한다.

나. 해당용역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설계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1) 해당용역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전문분야별 세부 설계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5. 용역수행 조직의 운영방법

가. 해당용역 수행조직 운영방안

1) 해당용역 수행을 위한 전문분야별 팀 구성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설계용역기간 단축 또는 연장 시 인력운영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해당용역 인력편성

1)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등을 기술한다.

2) 내·외부 전문가 활용방안을 기술한다.

3) 조직구성원별 협업 추진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을 기술한다.

6. 과업내용에 대한 개선사항

가. 해당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내용서 개선사항

1) 용역금액, 용역기간, 제공자료 등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분야 외에 필요한 특수, 전문분야와 해당분야 전문가 활용방안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최종 결과물 작성을 위해 필요한 과업내용서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7. 작업계획

가. 해당용역 수행을 위한 작업계획

1) 해당용역의 세부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구체적 일정 및 업무내용을 기술한다.

2) 각 단계별, 업무별 소요기간을 바차트로 표시한다.

나. 인허가 변경, 용역기간 변경 사유 발생 시 작업계획 조정방안

1) 인허가변경사항 발생 시 적기 인허가 추진을 위한 작업계획 조정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그 밖에 예상되는 용역기간 변경 사유와 변경 사유 발생시 작업계획의 조정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8. 핵심기술인 사업수행의 적합성

가. 유사용역 수행 경험의 성과 및 해당용역과 유사성

1) 최근 10년 이내 유사용역 내역을 기술하고, 해당용역과의 유사성을 기술한다.

2) 유사용역을 통해 거둔 경험, 성과를 기술한다.

9. 핵심기술인 사업수행의 창의성

가. 전문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시 문제해결 사례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사례

1) 최근 10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시 문제해결 사례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사례를 기술한다.

2) 설계·공사·공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예측하고 해결한 사례를 기술한다.

3) 특별제안 등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실적을 기술한다.

나. 해당용역 수행 시 최신 설계기법 및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방안

1) 최신 설계기법, 절차 등 수행경험에 근거하여 해당용역 수행 시 최신 설계기법 및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방안을 기술한다.

Ⅴ. 건설사업관리용역 제안서 작성지침(참고용)

1.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가. 해당용역 품질의 확보 및 향상 방안

1) 세부단계별 과업 성과 향상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2) 품질확보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 활용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품질 관련 사고발생 시 해결방안

1) 의견수렴 불충분에 따른 민원발생시 대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용역착수 이후 설계오류, 현장불일치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3) 공동도급 참여시 공동도급사(분담이행사포함) 부도, 파산,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할 경우 대책을 기술한다.

다. 보유중인 품질관련, 방침, 절차, 방법 등 품질보증시스템

1) 품질확보를 위한 내부 검증, 예방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한다.

2) 회사가 보유중인 품질보증시스템(ISO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사업관리 운영체계

가. 해당용역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관리방안

1) 해당용역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장점을 기술한다.

2) 발주청 및 관련업체 등과 협업체계 운영방안을 기술한다.

3) 공동도급시 참여사별 역할, 업무조정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해당용역 수행 관련 대응 또는 지원시스템

1) 해당용역과 관련된 핵심전문가 보유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2) 해당용역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와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대응 또는 지원시스템

3.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가. 해당용역과 유사한 대표실적의 문제 해결사례

1) 해당용역과 유사한 실적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문제와 해결한 사례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해당용역과 유사한 실적경험에 근거한 해당용역의 핵심 고려사항

1) 해당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을 유사 실적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한다.

4.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가. 해당용역 사업 특성 등의 이해

1) 해당용역의 사회적·환경적·경제적·기술적 특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해당용역의 주변환경 및 입지여건, 지형적 특성, 대상사업의 보고서 등을 통해 용역 수행시 주안점, 유의사항 등을 기술한다.

3) 발주청의 요구조건과 해당용역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한다.

나. 해당용역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1) 해당용역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전문분야별 세부 건설사업관리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5. 용역수행 조직의 운영방법

가. 해당용역 수행조직 운영방안

1) 해당용역 수행을 위한 전문분야별 조직 구성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용역기간 단축 또는 연장 시 인력운영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해당용역 인력편성

1)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등을 기술한다.

2) 내·외부 전문가 활용방안을 기술한다.

3) 조직구성원별 협업 추진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을 기술한다.

6. 과업내용에 대한 개선사항

가. 해당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내용서 개선사항

1) 용역금액, 용역기간, 제공자료 등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분야 외에 필요한 특수, 전문분야와 해당분야 전문가 활용방안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3) 효과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과업내용서 개선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7. 작업계획

가. 해당용역 수행을 위한 작업계획

1) 해당용역의 세부 건설사업관리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로 구체적 일정 및 업무내용을 기술한다.
2) 각 단계별, 업무별 소요기간을 바차트로 표시한다.

나. 용역기간 변경 사유 발생시 작업계획 조정방안

1) 용역기간 변경 사유 발생시 작업계획의 조정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8. 직원투입계획

가. 해당용역 수행 인력편성

1)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전문분야별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등을 작성한다.
2) 용역 중지 기간 발생시 직원 투입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조직 구성원의 장점과 활용방안

1) 조직 구성원이 담당하는 주요업무를 기술한다.
2) 조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장점을 활용한 용역수행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9. 핵심기술인 사업수행의 적합성

가. 유사용역 수행 경험의 성과 및 해당용역과 유사성

1) 최근 10년 이내 유사용역 내역을 기술하고, 해당용역과의 유사성을 기술한다.
2) 유사용역을 통해 거둔 경험, 성과를 기술한다.

10. 핵심기술인 사업수행의 창의성

가. 전문분야별 유사용역 수행시 문제해결 사례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사례

1) 최근 10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시 문제해결 사례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사례를 기술한다.

2) 설계·공사·공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예측하고 해결한 사례를 기술한다.

3) 특별제안 등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실적을 기술한다.

나. 해당용역 수행 시 최신 기술 및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방안

1) 최신 기술, 절차 등 수행경험에 근거하여 해당용역 수행 시 최신 설계기법 및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방안을 기술한다.

서식1.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표지

<---------- 210 mm ----------> ^ 297 mm v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정성평가)

[00 건설사업관리용역]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0.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회사명

서식2. 종합기술제안서 표지

<---------- 210 mm ----------> 297 mm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00 건설사업관리용역]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0. .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회사명

서식3. 이력서 양식

핵심기술인 이력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직책 및 분야	
최종학력		연락처	

① 자격증

취득일자	자격명	비고

② 주요경력

기간	소속	직책/직위	수행업무 개요

③ 유사과업 수행경험 및 성과

최근 10년 이내 유사용역수행 경험과 해당용역과의 유사성, 문제해결 및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사례 등을 자유롭게 기술

[별지2] 청렴서약서

청렴 서약서

○ 용역명 :

당사는 위 용역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직인)

조달청장 귀 하